

# 영국·핀란드·스웨덴·일본의 청소년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 목 차

1. 영국의 청소년활동정책 .....	1
박선영(동서대학교 교수)	
2. 핀란드의 청소년활동정책 .....	31
민전순(핀란드교육전문가)	
3. 스웨덴의 청소년활동정책 .....	61
최연혁(남스톡홀름대학교 교수)	
4. 일본의 청소년활동정책 .....	87
최현주(히토츠바시대학교)	



1

영국의 청소년활동정책

박 선 영  
동서대학교 교수



# 영국의 청소년활동정책

박선영(동서대학교 교수)

## 1. 청소년 체험활동정책의 역사적·사회적 배경

### 1) 청소년활동정책의 역사적 배경

청소년활동의 역사적 배경은 용어 사용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활동이라는 영어단어는 activity에 해당되지만 한국의 청소년활동에 해당하는 내용은 Youth Work의 내용에 해당된다. 유럽연합의 EU Youth Strategy(EU 청소년전략)에서도 Youth Work를 상위개념으로 두고 다양한 종류의 활동(activity)이나 프로그램을 하위개념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에서도 청소년활동은 Youth Work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편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9). 다시 말해 영국을 비롯한 유럽연합에서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여가활동이나 문화 활동 같은 세부적인 활동의 일부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의 총체적 집합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청소년활동의 개념에서 다시 다루어지겠지만, 이번 장에서는 Youth Work의 역사적·사회적 배경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영국의 청소년활동의 역사는 근대 교육사와도 일치하며 사회복지 발달사와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영국의 청소년활동의 시초는 산업혁명 이후인 18세기에서 찾을 수 있으며 최초의 Youth Work의 모습은 교회의 주일학교(Sunday School)로 보거나 19세기 처음 등장한 빈민학교(ragged school)로 보고 있다(Jeff & Smith 1991). 이 두 가지 형태의 청소년활동의 주요 공통점은 주일학교나 빈민학교 모두 빈곤한 상황으로 인해 정규학교에 다닐 수 없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과, 지식위주의 학교교육이 아니라 실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체험을 주로 다루었다는 것이다. 영국 최초의 청소년 단체는 한국에도 널리 알려진 YMCA(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라는 단체로서 1844년에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Jeff, 1996).

청소년활동의 효시가 된 주일학교나 빈민학교, YMCA 같은 청소년단체들의 공통점은 초기에 모두 기독교 복음주의적 사상이 기반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기독교 사상이 영국의 교육과 사회복지에 많은 철학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급진적인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 개혁은 물론 사회발전에 큰 관심을 보여 왔다. 더 나아가 오랜 기간 동안 존재하던 계급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청소년활동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점이 고무적이다. 또 이 시기는 Stanley Hall에 의해 처음으로 청소년이라는 생애주기가 소개되기 시작하고 청소년에 대한 개념이 등장한 시기라는 점을 반영하여 Youth Work이 아동과 성인과는 다른 청소년의 개인적·사회적 필요에 주목하였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다(Jeff & Smith 1991).

영국 청소년활동의 역사는 청소년관련 연구의 시작에서도 짐작이 가능하다. Smith(1988)에 따르면 1863년 에든버러에 있는 사회과학협회(Social Science Association)의 연구가 청소년활동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의 서막을 열었다고 하였다. 사회과학협회(Social Science Association)는 청소년활동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는데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인 관점에서 성공하기 위해 저녁시간을 활용한 레크리에이션이나, 건전한 모임 등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시간활용과 경제에 있어 도움을 주어 궁극적으로는 사회적으로도 유익하다고 하였다 (Smith, 1988).

1880년대 이후의 Youth Work의 특징은 이때야 비로소 남자 청소년위주의 Youth Work에서 여자청소년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그 결과 여자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클럽이 생겨나기 시작했지만 이런 클럽들은 주로 영국의 성공회나 가톨릭에서 여자 청소년들의 신앙교육과 생활교육에 집중한 것이 특징으로 현대의 양성 평등적 청소년활동과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

1890년대에는 좀 더 급진적인 형태의 Youth Work이 등장하게 된다. 초기 Youth Work이 전반적인 사회의 부조리와 계급간의 불평등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었다면 이 시기에는 Youth Work이 본격적으로 사회·정치적 운동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아동과 여자 청소년들의 확대와 노동력 착취에 항거하기 위하여 YMCA를 비롯한 청소년단체와 청소년클럽들은 임금투쟁과 근로조건, 근무환경들을 개선하고자 크고 작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YMCA, 2013). 청소년 단체나 청소년 클럽에서 일하던 청소년지도자들도 점점 기독교 배경을 가진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유대교나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사회정의를 강조하는 사람들로 구성되기 시작하여 청소년지도자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 (Smith, 1999, 2002).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지도자들의 등장으로 인해 종교적 배경을 갖지 않은 청소년단체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대표하는 단체가 바로 스카우트이며 1908년에 설립된 이래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급속도로 영국 전역에 확산되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Scouts, 2013). 현재까지도 YMCA와 스카우트는 민간영역차원에서 영국의 청소년활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세계대전이 끝난 뒤 영국의 Youth Work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즉 전쟁에 노출되었던 청소년들에게 삶에 대한 동기부여와 회복을 주로 다루게 되었다는 것이다.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영국 청소년들은 전쟁으로 인해 허무주의와 우울함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청소년들의 문제를 청소년 클럽이나 청소년단체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1960년에 발표된 정부 보고서인 Albemarle Report는 Youth Work을 비롯한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가 청소년을 훈련시키고 도전정신을 고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지방정부가 청소년의 학교 밖 활동과 교과 외 활동을 지원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Smith, 1999). 그 결과 지방정부는 관련 활동에 재정지원의 책임을 갖게 되어 Youth Work이 재정적으로도 가장 풍요로운 시기를 누리게 하는데 기여하였다(Jeff & Smith 1991). 1970년대까지 청소년활동은 증가하는 청소년인구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인해 가히 황금기를 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Youth Work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청소년 인구의 감소이다. 더불어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면서 청소년들은 더 이상 학교 밖 교육에 기대지 않더라도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더욱이 산업의 발달과 경제성장으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은 청소년단체가 아니더라도 집에서 다양한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Cooper, 2012). 즉, 텔레비전과 비디오, 컴퓨터 게임의 확산으로 청소년들은 청소년센터에서의 활동보다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경제성장은 소비적 형태의 여가생활의 다양화를 초래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비롯한 성인들 역시 어떤 비용을 다소 지불하더라도 좀 더 높은 수준의 질이 보장된 여가나 활동을 원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청소년단체의 저렴한 활동 프로그램보다는 사기업에서의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경향이 생겨났다(Smith, 1999, 2002). 청소년단체의 활동은 무료이거나 가격이 저렴하고 예산이 한정되어 프로그램의 다양화나 프로그램의 질을 사기업의 수준으로 보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학교교육과 상급학교로의 진학에 대한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학교 밖 청소년활동에의 관심과 중요성이 낮아지기 시작하였다(Spence, 2004).

그 결과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Youth Work은 위에서 설명한 다양한 이유로 재정적인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때 활성화되기 시작한 사회복지나 사법제도, 학교, 평생교육, 상급학교와 같은 것들과 비교하여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시작하였다. 지역에 따라서는 청소년단체가 청소년활동 본연의 프로그램만으로는 운영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생겨나기도 하여 Youth Work의 위기가 도래하였다. 게다가 청소년활동에 매우 주요한 인력인 자원봉사자의 수도 이 시기에 줄어들기 시작하여 Youth Work은 재정난과 인력난 모두를 겪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

청소년의 특정한 요구에 반영하기 위한 청소년활동의 그룹화 전략이다. 초기 청소년활동에서부터 지향해 온 보편적 청소년활동에서 선택적 청소년활동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1990년대 이후 청소년활동과 Youth Work의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Jeff & Smith 1991).

선택적 청소년활동은 다른 말로 위기청소년을 목표 집단으로 하는 청소년활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1997년 노동당의 집권으로 가속화 되는 경향을 보였다. 노동당 정부는 특히 사회적 배제의 상태에 놓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청소년서비스와 청소년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Spence, 2004). 대표적인 것이 한국에도 잘 알려진 코넥션즈(connexions) 사업과 'Youth Matters' 라는 청소년정책 발표이다(DfES, 2005). 그러나 노동당 정부의 국가차원의 청소년서비스는 청소년활동이나 Youth Work의 역할을 축소시킨 바도 없지 않다는 비판도 거세다. 일례로 Spence는 코넥션즈같은 정부주도의 청소년활동은 청소년활동 본연의 특징인 자율성과 창의성을 축소시키고 청소년단체가 주도적이고 독창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보다는 정부사업의 전달자 역할로 전락시키며 청소년활동을 위축시켰다고 하였다(Spence, 2004). 또 정부가 주도하는 청소년활동은 양적인 계량화와 평가를 요구하여 양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청소년활동의 효과성이 간과되고 있다. 청소년단체들은 기관인증이나 평가를 위해 양적으로 계량화나 평가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찾고 있어, 청소년활동의 질적 수준에 대한 논의가 제외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청소년활동은 평가나 인증을 위한 활동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정량평가가 어려운 청소년의 질적인 삶의 질 개선과 복지 수준의 향상이라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영역에서의 활동도 포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청소년활동에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한국의 청소년계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2) 청소년활동정책의 사회적 배경

영국의 청소년활동정책의 사회적 배경은 다음의 몇 가지 특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영국의 청소년활동은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직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에서 출발한다. 다시 말해 영국의 청소년체험활동은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적 사회변화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식위주의 학교교육은 더 이상 급변하고 예측 불가한 사회를 대비하는 인재양성에 역부족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청소년활동에 관심을 갖게 한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 장기화되는 경기침체는 청소년에게 부모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직업역량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학교 밖의 청소년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직업역량 강화에의 필요성도 점점 강조되고 있다. 왜냐하면 학교 혼자 청소년의 직업역량을 강화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이다(European Commission(2001).

이와 같은 이유로 청소년활동은 미래사회를 주도적으로 대비하고 직업고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1990년대 중반이후 중요성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둘째, 영국의 청소년활동과 청소년교육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과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청소년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특징이 있다. 영국은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 of Europe)의 주요 회원국으로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 of Europe)의 정책결정 사항들은 개별 회원국의 정책결정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에 영국을 비롯한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청소년들은 자국의 청소년정책과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청소년정책의 영향을 모두 받게 된다. 특히 영국의 청소년활동은 유럽연합과 유럽평의회가 리스본조약 체결 이후 청소년활동과 학교 밖 교육을 강조하게 됨에 따라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유럽연합의 청소년전략(An EU Strategy for Youth : Investing and Empowering)이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non-formal education으로 분류되는 청소년활동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European Commission,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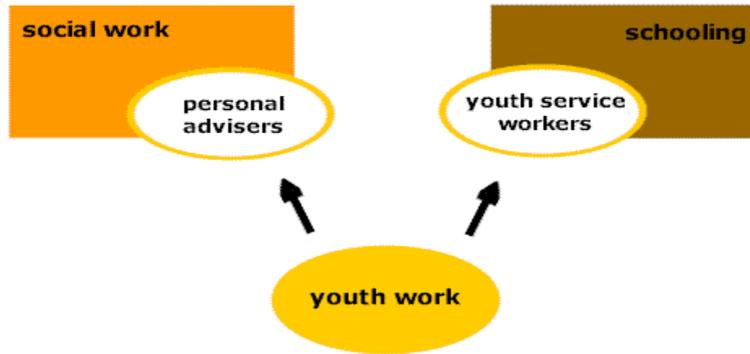
세 번째 영국의 청소년활동의 특징은 청소년활동이 사회통합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청소년이 개인이 가진 다양한 문제 상황들로 인해 학교교육에서 소외될 경우(학업중퇴나 학교부적응, 낮은 학업 성취도, 상급학교로의 진학포기) 성인기로의 안전한 전환이 보장될 수 없다. 또 이러한 성인기로의 불안정한 전환은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실업의 상태에 놓이게 하거나, 질 낮은 노동력을 요구하는 직업에 종사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장기적인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사회적으로 청소년의 성인기로의 전환 실패는 사회가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회구성원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촉발시켜 사회통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도울 수 있고, 다양한 체험활동에의 참가는 자아정체감 및 자존감을 회복시키며, 청소년의 고용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European Commission, 2012). 특히 영국은 청소년이 단체 활동 참가를 통해 연대감이나 소속감을 강화시켜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활동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야말로 한국사회의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2. 청소년활동의 개념

Smith(1988)에 의하면 청소년활동이란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첫째,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을 위한 활동이다. 즉 다양한 연령대의 청소년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는 활동으로 청소년을 이해하는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청소년을 위한 활동이라는 뜻이다. 청소년들은 각기 다른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지향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자기 개발을 극대화하도록 돕는 것이 청소년활동이다. 두 번째 청소년활동이란 자발적인 참여와 민주적인 관계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한다.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다른 서비스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자발적 참여와 민주적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영국의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간의 민주적인 관계를 지향해 왔으며 이러한 민주적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경험과 학습을 청소년활동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이 속한 기관이나 지역에 기여하는 활동이어야 한다. 즉, 청소년활동은 어떤 과제를 가지고 교육적인 목적 하에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를 바탕으로 책임감 있는 기여와 참여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친화적이며 비형식 학습을 지향하고 인간 존엄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청소년지도사들은 청소년친화적인 활동을 제공해야 하고 청소년을 신뢰해야 하며 청소년의 삶이 존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청소년활동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에 대한 존중과 신뢰, 존엄성 인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복지를 지향하는 활동이다. 역사적으로 영국의 청소년활동은 청소년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자기개발과 성취를 도모하였다. 학교교육만으로 부족한, 혹은 학교교육에서 소외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청소년활동을 통해 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활동이라는 뜻이다.

아래의 그림은 청소년활동의 개념과 영역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청소년활동은 사회복지의 영역과 공교육인 학교에 모두 관여하고 있는 활동으로 그림에서 나타난 personal adviser와 youth service worker가 연결고리가 된다.



<그림 1> 청소년활동(Youth Work)의 개념<sup>1)</sup>

또 다른 관점에서의 청소년활동은 즐겁고 도전적이고 배움과 성취가 있는 활동을 통해 자신과 타인, 그리고 사회에 대해 배우는 활동이다. 또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이 배우고 참여하는 발달과정의 일부이기도 하며 청소년지도사와의 관계가 청소년활동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이 모이고 참여하는 다양한 장소와 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주로 소집단으로 이루어지는 경험중심의 참여 학습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의사결정 전략을 경험하게 하며 자신감을 높이고 대인관계와 사고능력을 향상시키는 안전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 청소년활동은 정부의 청소년에 대한 비전을 전달하는 활동으로 현재 영국정부가 지향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청소년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또 이런 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성공적인 성인의 삶으로 전환할 수 있어 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법의 하나가 되는 것이 청소년활동이다. 정부주도의 청소년활동의 대상은 주로 13세에서 19세이지만 필요에 따라 24세까지 연령이 확대되기도 한다(DfCSF(2009)). 청소년활동은 교육기준청( Ofsted - the 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에 의해 평가를 받으며 이러한 평가가 청소년활동의 자율성을 위축시키기도 하지만 때로 청소년활동의 질을 보장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청소년활동의 개념은 청소년활동의 주요한 7요소를 통해 정의될 수 있으며, 청소년활동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Smith, 2001).

- 청소년에게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1) [www.infed.org/youthwork/b-yw.h](http://www.infed.org/youthwork/b-yw.h)

- 청소년의 개인적 선택과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 개인적 효능감 개발
- 청소년의 다양한 삶의 형태를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도록 함
- 청소년으로서의 바람직한 삶의 양식과 태도, 행동을 습득
- 신체와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 청소년활동에 청소년지도사가 개입하여 수퍼비전 제공
- 청소년의 지속적인 참여 유도

### 3. 청소년활동정책의 현황

#### 1) 법제 현황

##### (1) 영국의 학제

한국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Key Stage 1,2(핵심단계 1,2)와 중학교에 해당하는 Key Stage 3, 4(핵심단계 3,4)로 구성이 되어있고 16세에 마무리되며 의무교육이 종료된다. 핵심단계를 모두 이수하면 2년 과정의 대학진학을 위한 상급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해야 대학진학이 가능한데, 이 상급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어서 영국의 60~70%에 이르는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 영국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래의 표는 영국의 학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2013년 2월 개정된 교육과정이다.

<표 1> 2013 교육과정<sup>2)</sup>

	Key Stage 1	Key Stage 2	Key Stage 3	Key Stage 4
연령	5-7	7-11	11-14	14-16
학년	1-2	3-6	7-9	10-11
핵심과목				
영어	√	√	√	√
수학	√	√	√	√
과학	√	√	√	√
기타 기초과목				

2) DfE(2013:7) The National Curriculum in England, Department for Education, 의 표를 재구성함

	Key Stage 1	Key Stage 2	Key Stage 3	Key Stage 4
예술과 디자인	√	√	√	
시민교육			√	√
컴퓨터	√	√	√	√
디자인과 테크놀로지	√	√	√	
외국어/근대 외국어		√	√	
지리	√	√	√	
역사	√	√	√	
음악	√	√	√	
체육	√	√	√	√
필수 교과				
종교교육	√	√	√	√
성교육			√	√
PSHE(Personal, Social, Health and Economic Education)	√	√	√	√

(2) 청소년 및 교육 관련법

아래의 <표 2>는 청소년 교육 및 청소년활동과 관계되는 법을 설명하고 있다.

<표 2> 청소년 관련법과 제도

법률	내 용	비고
Criminal Record Chec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무부 산하 Criminal Record Bureau(범죄기록부)에서 주관</li> <li>- 아동과 특정 성인과 일을 하는 고용주에게 개인의 범죄기록에 대해 조사해 주는 것</li> <li>- 아동과 특정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Criminal Record(범죄기록) 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함</li> </ul>	모든 청소년단체나 기관 종사자의 범죄 기록 조회를 의무화
Education and Inspection Act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초중등학교의 교육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 고자하는 것이 입법 목적</li> <li>- 제 8장에서 모든 초중등학교의 교육 내용, 교육 활동 및 시설 운영 등의 감사에 대한 규정과 목적을 정의하고 있음</li> </ul>	학교 내 청소년 활동 및 청소년시설에 관한 법률
Section 507B of the Education Act (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유사한 입법내용을 담고 있음</li> <li>- 청소년이 여가생활을 통해 자기개발에 긍정적인 활동에 참가할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입법 목적</li> <li>- 학교는 물론 청소년 관련 모든 시설이 준수해야 하는 법률로서 활동의 내용과 활동의 안전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음</li> </ul>	

아래의 <표 3>은 1996년 이후 여러 부처에서 제안된 청소년관련 정책과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영국의 청소년정책과 제도의 개요를 파악할 수 있다.

< 표 3> 1996년 노동당 정부 이후 주요 청소년정책, 제안 부처, 정책 내용<sup>3)</sup>

연도	보고서	제안 부처	정책 내용
1996	Misspent Youth : Young People and Crime	Audit Commission (감사원)	청소년문제, 가족 붕괴, 사회적 배재와 관련한 고위기 분야와 관련한 청소년의 위기에 관심
1997	No More Excuse: A new approach to tackling youth crime in England and Wales	Home Office (내무부)	청소년 위기 감소에 관심. 청소년문제와 청소년 문제의 확대, 청소년 범죄가 대중에 주는 위험, 청소년 문제의 희생자, 반사회적 행동 등에 관심
1999	Misspent Youth '98 : The Challenge for Youth Justice	Audit Commission (감사원)	주로 청소년의 위기와 중대한 위기의 상황에 대해 다룸
1999a	Teenage Pregnancy	SEU (Social Exclusion Unit) 내각부의 사회배재부	청소년 위기의 종류를 세분화, 위기청소년의 인구, 사회적 배제, 10대 임신부의 열악한 건강상태 등을 다루고 있음
1999b	Bridging the Gap	SEU (Social Exclusion Unit) 내각부의 사회배재부	청소년 위기의 문제를 세분화하고, 특히 학업성취도가 낮은 청소년과 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학교로부터 소외된 청소년에 대한 정책
2000	PAT 12 : Young People	SEU (Social Exclusion Unit) 내각부의 사회배재부	다양한 위기 요소, 새로운 위기요소와 위기 대상, 위기와 보호 요소, 위기 대응(예, 사회적 배재, 약물 사용, 범죄, 학교 퇴학 등)에 대한 전략을 다룸
2000	Connexions : The Best Start in Life for Every Young Person	DfEE (교육고용부)	위기로인을 다양한 취약점, 학교중퇴, 범죄, 우울증, 열악한 건강상태, 분리, 사회적 배제, 애정 결핍, 낮은 학업성취도, 학습이나 일로부터의 격리 등으로 분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2001	Transforming Youth Work : Developing Youth Work for Young People	DfEE (교육고용부)	사회적 배재, 취약점, 학교나 기타 안전한 생활 환경으로부터 분리된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정책
2002	Children at Risk – Comprehensive Spending Review	HM Treasury 재무부	위기 아동의 위기로인, 즉, 비행, 경제적 취약, 사회적 배재 등을 집중으로 다루는 정책
2003	The Victoria Climbié Inquiry	Laming/Cabinet Office (내각부)	위기의 정도, 위기 측정, 위기의 규모, 위기의 요인들을 분석, 학대와 방임, 폭력 등의 해결을 위한 정책

3) Turnbull & Spence, 2011:944의 표를 연구자가 재구성하고 최신 정책을 추가함.

연도	보고서	제안 부처	정책 내용
2003	Every Child Matters	DfES (교육기술부)	위기, 위기요인, (예, 학교교육에의 부적응, 비행, 반사회적 행동, 폭력과 방임, 열악한 건강상태, 10대 부모, 지속적인 학대), 위기집단 등을 규명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
2003	Youth Justice : Next Step	Home Office	위기 감소, 위기의 해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 파악, 폭력과 성폭력의 문제들을 다루는 정책
2004	Every Child Matters: Next Steps	DfES (교육기술부)	Every Child Matters(2003)에의 보완과 위기의 수준과 정도를 측정하고자 함.
2004	Every Child Matters : Change for Children	HM Government (국회)	위기요소를 최소화(예, 아동비만, 열악한 건강상태, 상습적인 학대 등)하기 위한 정책
2005a	14-19 Education and Skills White Paper	HM Government (국회)	위기요소로 교육에서의 분리, NEET, 애정결핍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2005b	Youth Matters	HM Government (국회)	위기요인(낮은 학업성취도, 비행, NEET, 비행과 범죄, 범죄의 희생자/대상자, 심대 피임, 상습적인 학대 등), 최악의 위기 요인 분석, 위기 행동, 위기를 다룰 수 있는 보호 요인 등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
2006	Youth Matters : Next Steps	DfES (교육기술부)	위기와 위기에의 대응, 위기 개념 재정의, 학습으로부터의 분리, 학대, 배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2007	Care Matters : Time for Change	DfES (교육기술부)	위기, 위기요인과 보호요인, 특정 위기 요인으로 낮은 학업성취도, 비주류화, 가족, 임신, 보호의 부재, 학교 배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룸
2007	Aiming High for Young People	HM Treasury/ DCFS (재무부/아동가족학교부)	위기 대응, 위기 행동, 위기 요소 분석, 다양한 위기상황을 폭넓게 다룸. 약물사용과 부장용, 반사회적 행동, 범죄, 심대임신, 노동시장의 문제, 범죄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
2007	Staying Safe : consultation	HM Government /DCFS (국회/아동가족학교부)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 새로운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새로운 가족의 형태, 다문화 지역사회, 신기술, 학대, 방임, 인터넷, 폭력, 갱단, 학대로 인한 죽음, 학교포격, 다양한 사건, 비행 및 범죄, 피해, 반사회적 행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 온라인 학대와 온라인 폭행 등)을 도모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함
2007	The Children's Plan	DCFS (아동가족학교부)	인터넷, 비디오 게임, 낮은 학업성취도, 알코올 남용, 위기 행동, 성적 행동, 비만, 미디어의 영향, 학대, 가출, 의도하지 않은 상해, 사회적 배제 등의 위기 요소들을 다루기 위한 전략
2008a	Youth Task Force Action Plan : Give respect, get respect - youth matters	DCFS (아동가족학교부)	위기 가정, 위기 측정에 대한 정책(예, 재범, 낮은 학업성취도, 여러 종류의 유해환경 범죄, 비행 등)

연도	보고서	제안 부처	정책 내용
2008b	The Children's Plan : One Year On	DCFS (아동가족학교부)	모든 종류의 교통사고, 학교폭력, 낮은 학업성취도, SNS, 성에 대한 관심과 성행동, 신기술, 불안감, 알코올 남용, 비만, 당뇨, 학대와 방임, 심장과 간질병, 미디어, 소비, 가정에서의 사고, 잠재성을 극대화하는데 있어서의 실패, 위기 행동, 기타 해를 가져오는 여러 행동 등을 위기로 보고 위기관리에 관한 정책을 다룸
2009	The Protection of Children in England : A Progress Report	Laming/Cabinet Office (내각부)	다양한 종류의 위기측정에 관한 정책 : 유해환경, 남용, 학대, 방임, 가정 학대, 폭력, 폭력 피해자.
2011	Positive for Youth	Department for Education (교육부)	Every Child Matters에서 제시된 다섯 가지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에 대한 소개와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제시

## 2) 청소년관련 시설 및 인구 현황

### (1) 청소년활동 시설의 주체와 특징

청소년복지와 활동, 육성을 포함하여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책 및 서비스를 Youth Service 라고 하는데 이를 전달하는 주체는 주로 자선단체로 분류된다. 아래의 <표 4>는 아동,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되, 성인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의 주체를 영역별로 분류하고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청소년활동의 주체에 해당하므로 청소년활동 시설의 분류라고 할 수 있다.

<표 4> 청소년활동주체와 특징

청소년활동 주체	특징	비고
Young People's Service	종합 복지지원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청소년활동이 포함됨 ;청소년서비스, 복지와 보호, 교육을 모두 포함하는 정부차원의 서비스 위주	공공영역으로 분류
Sports and Leisure Service	스포츠, 레저 중심의 활동	민간영역 중심
Sports, Arts and Cultural Organisations	스포츠, 문화 예술 중심의 활동	민간영역 중심
Youth Centres	청소년관련 활동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크고 작은 청소년 센터. 최소 행정단위별로 운영됨	공공, 민간 모두 포함됨
Voluntary groups	자원봉사단체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지역 자원봉사단체, 혹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자원봉사단체	민간영역 중심
Youth Hostel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민간영역 중심

## (2) 청소년관련 시설의 종류

청소년관련시설은 자선단체로 분류되는데 청소년시설을 규정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2006년 개정된 자선단체법에 따르면 청소년시설은 여기에 포함됨을 알 수 있을 뿐이다. 한국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비정부, 비영리기관을 의미하여 청소년활동을 제공하는 청소년단체가 여기에 포함되며, 한국처럼 국가가 주도하는 청소년시설은 없다. 자선단체법에 의해 자선단체에는 다음의 활동목적을 가진 단체와 기관이 포함된다; 가난의 예방 및 구제, 교육 진흥, 종교 활동, 건강증진 및 생명구호활동, 시민성 함양 및 지역사회 개발활동, 예술, 문화, 유산, 과학 등의 진흥활동, 스포츠 활동, 인권증진, 갈등 및 분쟁상황 해결 활동, 종교의 포교활동, 인종간의 화합, 평등 다양성을 도모하는 활동, 환경보호 및 환경 개선활동, 청소년, 노약자, 경제적 취약계층, 기타 취약계층에 대한 구제활동, 동물 복지에 관한 활동, 여왕의 효율적인 통치를 돕거나 경찰이나 소방방재 등의 응급상황을 돕는 서비스 활동, 기타 이상의 목적들과 비슷한 목적이라고 여겨지는 활동 등.

이밖에 청소년활동 시설에는 청소년 클럽과 청소년 센터가 있는데 모두 지방정부나 민간단체에 의해 운영될 수 있다. 청소년활동시설은 독자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에 존재하는 다른 시설의 공간을 함께 공유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도서관, 교회나 이슬람 사원, 병원 등도 넓은 의미에서 청소년활동 시설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 공원, 쇼핑센터 등에서도 청소년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기도 하다. 그러므로 청소년활동 시설에 대한 정의는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영국은 찾아가는 청소년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버스나 기타 교통수단을 개조하여 청소년들을 만나 청소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활동 시설의 개념이 보다 확대되어 있다는 점이 한국과 다르다.

학교에서도 청소년활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마치 한국이 창의적체험활동을 활용하여 청소년시설이 학교 안에서 청소년활동을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국도 청소년단체가 학교에서 청소년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해 놓고 있다. 특히 시민교육이나 PSHE (personal, social and health education)교육과정을 통하여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도 한다. 또 2010년부터 영국의 방과 후 학교(extended school)가 모자라는 학업의 보충 외에도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바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학교도 청소년활동 시설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스포츠클럽이나 스포츠 단체들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지방정부에 속해 있는 청소년위원회들은 지방정부에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기도 하지만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청소년위원회 역시 청소년활동 시설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영국의 청소년활동

시설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기관과 조직을 의미하며 공간의 개념보다 무슨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청소년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 3) 지도인력 양성 현황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은 대표적으로 청소년지도사(Youth Worker)와 개인조언자(Personal Advisor)이며 개념과 역할, 양성 및 배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지도사(Youth Worker)의 개념

영국에서 청소년지도사란 국가직업표준표(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 for Youth Work)에 의해 13세에서 19세의 청소년들과 25세 이하의 학습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이 개인적, 교육적 사회적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촉진하고 돕는 사람들을 말한다(PAULO, 2002).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불평등을 표현할 수 있게 하며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람이며, 청소년이 자신의 건강이나 교육, 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긍정적인 기술과 태도를 개발함으로써 자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다.

넓은 의미에서 청소년지도사의 범주에는 Play Worker(아동놀이지도사), Careers adviser/personal adviser(진로상담사, 개인조언자), Community arts worker(지역문화지도사), Community development worker(지역개발지도사), Community education officer(지역교육담당관), Learning mentor(학습지도사), Outdoor pursuits manager(야외활동 매니저), Probation officer(보호관찰관),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Sports coach/instructor(스포츠지도사)가 포함된다(Prospects, 2010).

이외에도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의 관심(interests)과 필요(needs)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청소년센터, 학교(직업학교), 대학(모든 상급학교 포함), 종교기관, 청소년대상의 사법기관 등에서 일하는 사람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발달을 위한 모든 활동을 기획하고 수행, 평가하며 이외에도 레크레이션 활동, 상담, 아웃리치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기도 한다(PAULO, 2002).

#### (2) 청소년지도사 자격요건

국가 공인 청소년지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증을 갖추어야 한다.

우선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s(NVQs)이라고 불리는 국가직업자격증, Vocationally Related Qualifications(VRQs), 혹은 관련학과 학사 학위 등이 거기에 포함된다. 또 청소년지도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고용주는 지속적인 업무연수와 학습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지도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National Youth Agency, 2011).

청소년지도자는 크게 Level 2로 분류되는 Youth Support Worker, Level 3로 분류되는 Professional Youth Worker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는 자격증 유무와 경력에 따라서 구별된다. 더 쉽게 말하면 Level 2 Youth Worker는 한국의 고등학교 학력 소지자, Level 3 Professional Youth Worker는 대학교 학력 소지자에 해당된다(National Youth Agency, 2011).

<표 5> 청소년지도사의 종류 및 기타 현황<sup>4)</sup>

	Youth Support Worker	Professional Youth Worker	기타
학력 기준	- NVQs나 VRQs 자격증 - 또는 이에 해당하는 경력이나 자격증 소지	- 4년제 관련학과 졸업자, 혹은 대학원 졸업자 -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010년부터 4년제 대학졸업 이상으로 학력기준을 강화 - 영국 전역에 40여개의 관련학과가 있음	1,500 학생들이 매년 청소년관련학과에 재학 중 • 5,000 여명이 청소년지도사 노동자 연합에 가입 • 일주일에 16시간 이하의 35,000 여명의 파트타임 청소년지도자가 활동 중 • 500,000 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청소년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음.
역할	Professional Youth Worker를 보조하거나 청소년지도에 관련된 업무 지원	- 청소년활동과 지도에 관련한 모든 일의 기획, 수행, 평가, 보고 및 Youth Support Worker 수퍼비전	
평가	Professional Youth Worker의 수퍼비전 필수	국가청소년위원회(National Youth Agency)의 평가를 받음	
양성 학과	관련 학과 없음	<청소년지도사 양성학과의 명칭> youth and community, community and youth studies, childhood and youth studies, informal and community education	
배출 인원	17,000여명(2006년 감사자료 기준)	4,000여명(2006년 감사자료 기준)	

4) National Youth Agency (2011) <http://www.nya.org.uk/>

### (3) Personal Advisor의 개념

청소년지도사로 분류되기도 하는 PA는 코넥션즈(Connexions)의 주요 인력자원으로서 기존의 청소년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코넥션즈를 도입할 당시의 교육부는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지도와 활동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PA를 고안해내었다. 기존의 청소년지도사와 역할이 비슷한데 가장 큰 차이는 기존의 청소년지도사보다 학교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거나 아예 학교에 배치되기도 하며, 교육과 건강, 사회복지, 범죄 등의 분야에서 기존의 청소년지도자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PA에게 요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직업역량은 청소년을 모든 계획과 실행에 중심에 두는 것, 청소년참여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DfES, 2005). PA의 중요한 역할은 크게 Assessment (측정), Planning (계획), Implementation (실행), Review(평가)의 단계별로 각각 다르며 역할은 아래의 <표 6>과 같다.

<표 6> PA의 역할

단계	역 할
Assessment (측정)	위기 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취합하고 위기청소년과의 만남 시작 위기 청소년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청소년의 의견과 생각 경청 및 존중
Planning (계획) & Implementation (실행)	Assessment(평가와 측정)의 단계를 통해 파악된 위기 청소년의 문제점들을 행동계획의 수립단계에 의해 명료화 작업 수행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에 대한 방향성 제시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강조 및 독려, 경청, 존중
Review(평가)	위기 청소년들이 코넥션즈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져 왔고, 앞으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점검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시기에, 부모 혹은 보호자, 다른 청소년지도사들과 청소년에 대한 평가

## 4) 대표적인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 사례

### (1) 청소년체험활동 프로그램

한국과 달리 영국은 청소년활동이 주로 주말에 이루어진다. 그 이유는 주중에 청소년의 학교생활로 인하여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주중에는 학업과 관련한 활동이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 이미 주5일 근무와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영국사회의 여가나 문화는 주말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특징이 있다(DfCSF, 2009). 다음의 표는 대표적인 주말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유형을 분류한 것으로 이 유형 안에서 지방정부가나 청소년단체가 이러한 목적과 내용에 어울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즉 프로그램의 유형이지 프로그램의 주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표 7> 체험활동 프로그램 유형 비교

활동 유형	목적	내용 및 특징	주요 활동 시간대
청소년센터 중심 활동	국가 청소년정책 구현	- 청소년센터 내에서 이루어짐 - myplace 사업에 포함	주말 낮과 밤 모두 가능
스포츠와 레크레이션 중심 활동	다양한 청소년의 요구에 부응	- 청소년지도사가 아닌 일반인에 의한 청소년활동지도의 부작용을 해결할 필요가 있음 - 남자 청소년 위주의 스포츠 활동이 주를 이룸	주말 낮과 밤 모두 가능
찾아가는 청소년활동	위기 청소년문제 예방 및 지도	- 위기청소년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활동 프로그램을 가지고 찾아가감 - 청소년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고 위기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주로 주말 늦은 밤에서 새벽에 이루어짐
대규모 주말활동	다양한 청소년활동 제공	- 청소년시설이나 단체에서 제공하기 어려웠던 대규모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시간이나 재정의 압박에 구애받지 않는 대규모 청소년행사를 기획할 수 있음	주말 낮과 밤 모두 가능
주말 낮 활동	교육적 활동, 여성/장애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	- 주말 낮에 이루어져, 비교적 활동에의 소극적인 장애청소년과 무슬림 여자 청소년의 활동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음 - 교육적 의도를 포함한 활동이 가능함	주말 낮에만 이루어짐

## (2) Youth in Action

Youth in Action은 국가수준에서 운영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인데 원래는 유럽연합의 청소년교류 활동 프로그램으로 영국 안에서는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이 참가자 선발과 파견, 평가의 역할을 한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아래의 <표 8>과 같다. 총 5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은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미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청소년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프로그램이며 참가율도 매우 높다. 물론 이 프로그램이 청소년활동으로 이루어져있지만 유럽연합은 이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통합과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ropean Commission, 2011). 청소년활동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관점은 한국에서 청소년활동 분야를 확대하고 중요성과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 시급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영국의 Youth in Action 주체인 영국문화원은 Youth in Action이 청소년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청소년활동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첫째, Youth in Action은 청소년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며,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의 시민성을 함양하고 고용가능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활동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두 번째, Youth in Action은 취약계층 청소년이 유럽연합의 다른 국가의 청소년과 교류하고 해외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므로 이들을 위한 복지지원 차원에서도 청소년활동으로서의 유익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유럽연합이 취약계층 청소년의 참여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시도와도 일치한다. 세 번째 Youth in Action은 청소년들의 간문화(intercultural) 감수성을 증대시킬 뿐 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방문하는 지역의 주민들과 지역에게도 간문화 감수성을 개발시킬 수 있어 성인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Youth in Action은 청소년이 자국 내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청소년활동을 제공하며 유럽사회에 대한 이해를 도와 유럽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게 하고 더 나아가 도전정신을 고무시켜 청소년 개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 이러한 이유들로 영국은 청소년활동의 영역을 유럽연합 차원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볼 수 있다.

<표 8> Youth In Action의 프로그램 개요<sup>5)</sup>

Action	하위 프로그램	내 용	
1	Youth For Europe	1.1-Youth Exchanges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을 만나 서로의 문화에 대한 교류
		1.2-Youth Initiatives	청소년이 직업 제안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
		1.3-Youth Democracy	청소년 참여증진을 도모하여 유럽 시민성 함양이 목적
		Multi-Measure projects	Action 1에 해당하는 활동 여러 개를 최대 18개월까지 동시에 진행하는 프로그램
2	European Voluntary Service	하위프로그램 별도로 없이 Action 2 자체가 프로그램	청소년들이 12개월까지 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
3	Youth in the World	3.1- Cooperation with the Neighbouring Countries of the European Union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상호 인해와 문화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3.2-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of the World	유럽연합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의 청소년 교류프로그램

5) European Commission(2011), Youth in Action Programmes Guide [www.ec.europa.eu/youth](http://www.ec.europa.eu/youth)에서 편집하여 재구성

Action	하위 프로그램	내 용	
4	Youth Support System	4.1 – Support to bodies active at European level in the youth field	NGO의 청소년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4.3 – Training and networking of those active in youth work and youth organisations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단체의 국제교류를 통해 이들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4.4 – Projects encouraging innovation and quality	프로그램의 혁신과 질적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4.5 – Information activities for young people and those active in youth work and youth organisations	ICT 기술향상과 이를 통한 청소년참여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
		4.6 – Partnerships	장기간 교류프로그램의 파트너십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5	Support for European cooperation in the youth field	5.1 – Meetings of young people and those responsible for youth policy	청소년정책 전문가와 청소년정책에 참여하는 청소년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 (3) National Citizen Service<sup>6)</sup>

National Citizen Service(이하 NCS)는 현재 영국의 총리인 David Cameron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프로그램으로 2010년 보수당이 내세운 정책공약을 집대성한 Big Society(큰 사회: 빅 소사이어티)의 이념을 가장 잘 반영한 프로그램이다. Big Society란 기존의 '작은 정부'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시민사회의 역량을 육성하고 활용, 사회적 배제와 갈등, 환경오염 같은 당면과제를 해결하고자 사회 구성원 모두를 포함하여 공동의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NCS는 이러한 보수당 정부의 Big Society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을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국가적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NCS의 목적은 첫째,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함께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사회연대를 강화하고 둘째, 청소년의 성인기로의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사회를 구축하며,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사회참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1년 처음으로 시범사업이 운영되었는데 이때 10,000명이 넘는 청소년이 영국 전역에서 참가하였다. 여름방학 중 7~8주에 걸쳐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2011년 이후 해마다 시범사업의 규모를 확대해왔고, 지역마다 프로그램을 총괄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탁한다.

6) <https://www.gov.uk/government/get-involved/take-part/national-citizen-service>의 내용을 재구성 함

시기는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재 보수당 정부의 목표는 조만간 영국의 16세 의무교육이 끝나는 모든 청소년들이 NCS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프로그램의 실현가능성과 청소년의 권리보다 국가에 대한 의무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 자세한 프로그램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9> National Citizens Service<sup>7)</sup>

프로그램	내 용	기간
Phase 1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해당하며 참가자 상호간의 관계형성과 참가자와 프로그램 운영자의 관계형성을 도모하는 프로그램	
Phase 2	청소년들이 집을 떠나 공동체 생활을 하며 개인적, 사회적 발달을 목표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야외활동 위주로 구성됨	1주일
Phase 3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집을 떠나 공동체 생활을 하며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함. 이와 관련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임	1주일
Phase 4	지역사회와 협의 하에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시간	1주일
Phase 5	4단계까지의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30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회봉사 참여 프로그램 이후 청소년들이 자원봉사활동과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함.	

NCS의 특징 중의 하나는 기참가자, 즉 프로그램을 참가했던 청소년들을 다음해 프로그램 운영자와 자원봉사자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또 표에서 설명된 Phase 2와 3, 4단계에서는 청소년이 각자의 집을 떠나 3주 이상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므로 청소년의 독립심과 사회성을 개발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공동체 생활을 위해 각기 다른 경험과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하나의 조로 나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은 다양한 문화와 배경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수 있고, 갈등해결과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4단계가 끝난 후에는 4주 이상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도 특징인데 이러한 단계를 통하여 청소년은 단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모든 청소년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의 절대 부족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과연 4주안에 서로를 이해하고 다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함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

7) <https://www.gov.uk/government/get-involved/take-part/national-citizen-service>의 내용을 재구성 함

#### 4. 청소년활동정책의 전달체계

영국의 청소년체험활동 지원정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는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이며 지방행정조직은 각 지방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하여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행정조직(전달체계)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긴밀히 연계하고 있는 대표적인 민간조직은 국가청소년위원회(National Youth Agency)와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이다. 교육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 영국문화원의 조직과 청소년활동 관련 업무는 아래와 같다.

##### 1) 교육부

학교 밖 청소년정책이나 활동을 전담하는 부처는 없다. 다만 교육부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을 뿐이다. 정권의 성격에 따라 교육부내에 전담부서를 두기도 하며 현재는 정책영역별로 부서가 나뉘어 있다. 교육부의 정책영역 및 부서와 각 영역별 주요 업무는 아래의 표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DfE, 2013).

<표 10> 교육부 정책 영역 개요<sup>8)</sup>

정책 영역 및 부서	아동과 가족	청소년	조기교육과 아동양육	학교	의무교육 이후 청소년 (16세 이상)	고등교육과 대학	성인교육과 직업교육
세부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양과 양육</li> <li>- 통합 업무</li> <li>- 아동 서비스 주체</li> <li>- 평등과 다양성</li> <li>- 건강과 장애</li> <li>- 보호 아동</li> <li>- 사회적 보호</li> <li>- 보호자, 양육자, 가족</li> <li>- 아동 보호</li> <li>- 생애초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EET (니트족)</li> <li>- 알코올, 약물 남용</li> <li>- 10대 임신과 성보호</li> <li>- 청소년 범죄</li> <li>- 청소년활동과 자원봉사</li> <li>- 사회통합</li> <li>- 위기행동</li> <li>- 정보, 상담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읽기, 쓰기, 셈하기 기술 개발</li> <li>- 생애초기와 아동 보호 업무</li> <li>- 평등과 다양성</li> <li>- 재정지원</li> <li>- 놀이방, 유아원, 유치원</li> <li>- 학교밖 아동 보호</li> <li>- 학업성취도와 평가</li> <li>- 특수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선택</li> <li>- 교육단계</li> <li>- 교과목</li> <li>- 평등성과 다양성</li> <li>- extra-curricular activities</li> <li>- 시설과 환경</li> <li>- 학교운영과 재정</li> <li>- 학업성취도와 평가</li> <li>- 특수교육</li> <li>- 학부모, 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학허가와 졸업</li> <li>- 인턴십</li> <li>- 교육과정과 자격증</li> <li>- 학교운영과 재정</li> <li>- 강사와 학교 직원</li> <li>- 학업성취도와 평가</li> <li>- 상급고등학교와 전문 대학</li> <li>- 기술과 취업</li> <li>- 특수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학허가와 졸업</li> <li>- 교육과정과 자격증</li> <li>- 평등과 다양성</li> <li>- 고등교육 재정</li> <li>- 학교운영과 재정</li> <li>- 강사와 교직원</li> <li>- 기관 및 연구소</li> <li>- 학업성취도와 평가</li> </ul>	

8) <http://www.education.gov.uk/>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함

정책 영역 및 부서	아동과 가족	청소년	조기교육과 아동양육	학교	의무교육 이후 청소년 (16세 이상)	고등교육과 대학	성인교육과 직업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슈어 스타트</li> <li>- 복지와 문제 행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역사회, 산업체 연계</li> <li>- 학생 수</li> <li>- 학생지원, 복지, 문제행동</li> <li>- 교사와 학교 업무</li> <li>- 교수학습</li> <li>- 학교와 대안 학교의 유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지원과 복지</li> <li>- 교수학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와 기업</li> <li>- 기술과 고용 특수교육</li> <li>- 학생 재정 학생지원과 복지 교수학습</li> </ul>	

## 2) 국가청소년위원회(National Youth Agency)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영국의 청소년활동을 조직 지원하며 정부와 민간단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대한 책임이 있다. 비록 민간단체이지만 정부의 정책과 사업을 전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다. 청소년활동을 개발하고 청소년지도사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기도 한다. 청소년업무를 전담하는 정부의 부처는 존재하지 않지만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정부부처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제도를 운영하고 청소년지도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소년지도사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청소년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단체들이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도 한다.

## 3) 영국문화원

영국문화원은 1934년에 설립되었고 1940년에는 Royal Charter를 제정하여 현재 영국을 포함하여 110개의 국가에 그 지부를 두고 있다. 영국문화원 운영이 가장 큰 목적은 영국과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해주는 데 있다. 또 영국이 가진 우수한 문화와 전통을 전파하고 나누기도 하며, 영어와 기타 교육의 기회 제공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영국문화원은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Foreign Commonwealth Department(영연방부)에서

재정지원을 받는다. 영국의 지속되는 경제위기와 전 세계적인 안보위기와 경제위기는 영국문화원의 사업을 다소 위축시키고는 있지만, 영국문화원은 전 세계 각지에서 현지 사정에 맞춘 문화, 예술, 교육의 확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British Council, 2013). 특히 전술한 바 있는 유럽연합의 대표적인 청소년국제교류 프로그램인 Youth In Action Programme의 영국 지부로서의 역할을 겸하고 있기도 한데, 이는 영국문화원이 한국에 알려진 표면적인 문화교류네트워크 정도의 이미지와는 달리, 교육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교육기구나 단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European Commission, 2011). 즉 영국을 비롯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유럽연합이 당면하고 있는 사회통합과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대상의 학교밖 교육, 한국의 청소년활동에 해당하는 청소년교류와 Youth Work(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를 위한 플랫폼 중의 하나가 영국문화원이라는 것이다. 영국문화원은 처음 설립될 당시만 해도 단순히 영국의 문화를 전수하고 세계적인 협력 구축을 위한 역할 수행이 목적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1980년대 이후에는 청소년의 학교 밖 교육과 청소년활동, 흔히 non-formal education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활동의 주요 전달체계로 볼 수 있다.

## 5. 청소년활동정책의 주요 이슈

현재 영국의 청소년활동정책의 주요 이슈는 첫 번째, 사회통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술한 여러 청소년정책들의 목적이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통합에 이르게 하겠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 급변하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소년정책의 주요 이슈는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영국은 자국 내 청소년정책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 유럽연합의 청소년정책을 반영한 청소년정책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청소년정책 역시 사회통합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므로 영국과 유럽연합의 현재 청소년활동정책의 주요 이슈는 사회통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이슈는 2007년 Aiming high for young people 정책에서 제시한 긍정적인 청소년활동에의 강화를 통한 청소년역량강화이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시설들이 보다 청소년 친화적인 시설과 장비를 구비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지원 사업인 myplace를 운영하고 있다. 유럽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개별 청소년이 자신의 고용역량을 강화하고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영국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역량강화를 그 주요 이슈로 삼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청소년활동의 이슈는 역시 2007년에 발표된 'The Children's Plan'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정책의 가장 중요한 점 중의 하나는 청소년의 참여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의 청소년 참여는 물론 지역사회와 국가의 정책개발과 운영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최근 청소년정책에 담겨 있는 새로운 이슈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청소년활동을 통한 청소년 비행 예방과 청소년문제 해결이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Aiming high for young people 정책은 청소년 주말활동 정책을 소개하고 있는데, 청소년이 가장 많은 비행에 연루되는 시간이 주말이므로 이때 건전한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의 비행이 예방될 있을 것으로 지적하기도 하였다. 한국의 청소년활동도 물론 청소년의 비행예방과 문제행동 감소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활동의 목적으로서 비행예방과 문제행동 감소가 거론되기보다, 청소년복지증진 차원에서 청소년의 비행과 문제행동이 다루어진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의 문제해결과 비행을 감소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현재 한국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청소년 자살의 문제도 청소년활동을 통해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6. 청소년활동정책의 시사점

### 1) 사회통합의 도구로서 청소년활동 이해

전술한 바와 같이 영국에서 청소년활동은 단지 개인이 성장을 지원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점에서 확대되어 사회통합의 도구로 인식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물론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이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고 사회통합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와 관계없이 영국에서의 청소년활동은 전통적으로 사회적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적 관점에서 청소년을 바라보는 사회통합적 관점을 견지해오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도 청소년활동의 효과성이 좀 더 객관적이고 넓은 관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다양한 청소년활동에이 참여는 곧 청소년이 개인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공유된다면 청소년활동이 갖는 위상이 증대될 것으로 믿는다.

## 2) 사회적 차원에서 청소년활동의 중요성 인식

영국과 유럽연합은 non-formal education으로 분류되는 청소년활동이 학교교육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여긴다. 학교교육이 더 이상 변화하는 세계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세계의 변화가 예측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교육보다 상대적으로 형식과 주제, 내용이 자유로운 청소년활동이 이러한 시대에 요구되는 청소년의 기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는 사회적 인식이 영국사회에서 공유되고 있다. 한국 역시 학교교육만으로는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지식과 기술, 태도를 함양하게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공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입시위주의 교육환경과 학교당국자들의 청소년활동에의 중요성 인식의 부족은 여전히 한국의 청소년들에게서 청소년활동 기회를 박탈하고 있기 까지 하다. 주5일제 수업의 실시로 적어도 주말을 이용한 청소년활동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했으나, 주말에 사교육이 오히려 기승을 부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아동과 청소년은 방치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더 이상 새롭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한국역시 청소년활동의 중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와 정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우리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을 보다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발판과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 3) 청소년지도사의 사회적 처우 개선

영국 청소년지도사의 사회적 지위는 교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이유는 청소년활동의 중요성이 학교교육만큼 인정받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의 청소년지도사는 임금과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사회복지사에 비해 볼 때도 아직 한참이나 멀었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업무량은 점점 늘어나고 요구되는 역량도 정말 다양하다. 마치 슈퍼맨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므로 능력은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청소년지도사를 포기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소명의식만을 요구한다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일이 될 것이다. 청소년지도사의 처우가 개선된다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이직율의 감소로 프로그램의 지속성이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 이는 곧 청소년활동의 효과성으로도 입증될 수 있을 것이므로 청소년활동정책의 개선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것은 청소년활동을 전달하는 청소년지도사의 처우개선이라고 생각한다.

## 4) 청소년활동을 통한 청소년문제의 해결

청소년활동은 한국사회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영국은 주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청소년문제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국의 학교폭력

의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위중한 문제이다. 학교폭력이 학교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와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해 기간제 상담교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의 청소년활동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다. 청소년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문제가 얼마나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결과를 축적해야 한다. 그래서 청소년활동 정책의 목표 안에 청소년의 비행예방과 문제해결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청소년활동의 종류가 다양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활동이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 7. 참고문헌

British Council(2013). <http://www.britishcouncil.org/>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DfES)(2005) Youth Matters.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DfCSF(2009). Positive Activities: Good Practice Guidance. (Delivering Sports, Arts and Culture Activities as part of the Friday/Saturday Night Youth Offer).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European Commission(2001). The European Commission White Paper : A new impetus for European Youth.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Commission(2009). EU Strategy for Youth – Investing and Empowering.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Commission(2011). Youth in Action Programmes Guide [www.ec.europa.eu/youth](http://www.ec.europa.eu/youth)

European Commission(2012) EU Youth Report : Status of the situation of young people in the European Union. European Commission.

HM Treasury (2007) Aiming high for young people. A ten year strategy for positive activities. London: HM Treasury/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 Jefferies, T. (1996) 'The hallmarks of youth work', YMCA George Williams College Induction Studies Unit 7.
- Jefferies, T. and Smith, M. M. (1999) *Informal Education. Conversation, democracy and learning*, Ticknall: Education Now.
- National Youth Agency (2011) <http://www.nya.org.uk/>
- PAULO(2002) *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 for Youth Work*, Lincolnshire : the Standards Setting Body for Community-Based Learning & Development
- Smith, M. (1988) *Developing Youth Work. Informal education, mutual aid and popular practice*, 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Press. Available as an e-text: *developing youth work*.
- Smith, M. K. (1999, 2002) 'Youth work: an introduction', the encyclopedia of informal education, [www.infed.org/youthwork/b-yw.htm](http://www.infed.org/youthwork/b-yw.htm).
- Smith, M. K. (2001) 'Young people, informal education and association', the informal education homepage, [www.infed.org/youthwork/ypandassoc.htm](http://www.infed.org/youthwork/ypandassoc.htm).
- The National Youth Agency(2009). *Expanding Friday and Saturday Night Provision*,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 2

## 핀란드의 청소년활동정책

민 전 순

핀란드교육전문가



# 핀란드의 청소년활동정책

민전순(핀란드교육전문가)

## 1. 청소년정책 & 청소년업무<sup>1)</sup>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

핀란드에서 사회적 아동·청소년정책 목표들의 실현 노력은 이미 수십년 동안 계속되었다. 핀란드 청소년정책의 기본 철학은 지난 반세기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청소년 정책의 핀란드 원칙들은 두 기본 방향에 중점을 두었다. 한편으로는 행정과 정책 결정, 사회적 활동대책들과 개발업무의 지속적인 구조들을 구축, 확립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youth policy와 사회계획),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 세대의 사회경제적 위치 강화와 청소년의 참여와 영향 미치기, 이의 실제 실현을 위한 청소년 정치가 강조되었다 (youth politics). 또한 기본 방향들이 청소년업무에, 특히 시들의 청소년업무 활동의 임무들과 연계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특히 1960년대말부터 1970년대까지, 그리고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이 기본 방향은 유지되었다.

이미 1960년대에 사회의 청소년 사안들에 대한 구조적 계획 정책에 (youth policy) 대한 발전된 생각은 또한 정부의 청소년부문 입지와 청소년업무의 법적 위치를 정당화하고 이를 정착, 확립시키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동시에 두 기본 방향은 시의 청소년정책 구조 구축과 연결되었다. 1990년대에 이 기본 방향들은 청소년들의 생활 조건 개선 노력으로 구체화되었다. 청소년들의 생활 조건 향상은 청소년업무 관련법의 두 번째 개정에서 (1995-1996) 청소년업무의 임무가 되었다. 2000년대에 정부 차원의 개발은 청소년업무에서 청소년들의 생활 조건들을 기술하는 정보와 자료 수집, 저장과 이를 정책 결정에 더 폭넓게 참고하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청소년정책의 청소년정치 (youth politics) 개념은 1960-70년대에 현저히 정치적 청소년조직들의 활동과 정당정치, 부분적으로는 또한 시의 청소년업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사회의 변화와 달라진 사회 풍토 속에서도 이 기본 방향의 계속성은 최근 몇 년 동안 일반화된 청소년들의 참여,

---

1) 핀란드에서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업무는 서로 떼어놓을수 없는 긴밀한 관계이므로 이 장에서 이 두 부분의 발전 과정과 배경을 간략히 소개한다. 한편 핀란드에서 'nuoris' (youth) 는 청소년과 함께 만 29세 미만의 청년들도 포함하는데, 번역의 간결성을 위해 '청소년' 으로 통일하여 표기한다.

참여 기회와 영향 발휘 기회 증진 목표들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목표들은 청소년업무, 청소년정책과 이들 관련 제정법에도 잘 나타나 있다.<sup>2)</sup>

한편 핀란드의 복지 증진 업무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뿌리들은 에반젤리스-루터교회와 교구들 그리고 국가의 관련 활동부문에 기초하는데, 현대 언어로는 폭넓게 그 시대의 교육사회부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청소년활동<sup>3)</sup>으로 이어진 발전은 1800년대부터 시작해서 가장 뚜렷하게 귀족들의 민간단체들 개발로 시작되었다. 이 시기부터 청소년활동에 시민 활동 관련 시민계몽과 자기교육의 원칙들이 계승되었다.

1900년대 초반까지 청소년활동은 자원봉사자들과 여러 직업단체 대표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청소년업무와 청소년업무 종사자란 명칭들은 1900년도 중반에 이르면서 점차 정착되기 시작했다. 1900년대에 청소년업무를 위한 국가와 교회의 지원 폭이 넓어졌고 조직 활동과 자원봉사 활동 기반에서 청소년업무가 시와 교구에서 1940년대 말부터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1950년대에 이르자 청소년업무가 이미 시와 교구들의 기본 임무들 중 하나로 간주되기 시작했고, 같은 시기 청소년부문 교육개발과 함께 직업적 조직화 물결이 일기 시작했다. 그러나 발전은 느렸고 굴곡이 많았다. 1970-1980년대 들어서야 청소년업무가 거의 모든 시와 교구에서 별도로 임명된 직원의 임무가 되었다. 1970년대 제정된 법률, 교회사안 관련 기본 방향 개발, 교육의 지속적인 개발이 이러한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이 결과로 1980년대에 지역 청소년업무 종사자들과 청소년을 위한 공간들 수가 핀란드의 대부분 현재 청소년 시설 수치에 이르게 된다.<sup>4)</sup>

## 2. 청소년업무<sup>5)</sup>의 개념

핀란드 청소년법에(72/2006) 따르면 청소년업무의 대상 그룹은 만 29세 미만 아동, 청소년, 청년을 포함하며 청소년업무로 의미하는 바는 청소년들의 적극적 시민활동 증진, 사회적 입지 강화, 청소년들 자신의 시간 이용에 초점이 맞춰진 청소년의 성장과 독립 지원, 그리고 세대 간 상호접촉과

---

2) 출처 - [nam.humak.fi/artikkelit/lapsi-ja-nuorisopolitiikka-0](http://nam.humak.fi/artikkelit/lapsi-ja-nuorisopolitiikka-0)

3) 공식적인 '청소년업무' 의 시작은 나중에 시작되므로, 청소년 주체 또는 청소년 관련 활동을 의미하는 '청소년활동' 으로 번역한다. 초기의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업무의 비공식적 시초로 볼 수 있다.

4) 출처 - [nam.humak.fi/artikkelit/nuorisotyön-rakenne-suomessa,nam.humak.fi/artikkelit/nuorisotyön-rakenne-suomessa-virallinen-asema-0](http://nam.humak.fi/artikkelit/nuorisotyön-rakenne-suomessa,nam.humak.fi/artikkelit/nuorisotyön-rakenne-suomessa-virallinen-asema-0)

5) 핀란드어로 'nuorisotyö' 이며 'youth work' 을 의미한다.

소통을 가리킨다. 적극적 시민활동은 시민사회에서 청소년들의 목표 지향적 활동을 가리킨다. 또한 청소년정책은 청소년들의 성장 환경과 생활 조건 개선으로 상세화된다. 사회적 입지 강화는 청소년들의 삶의 기술 향상과 소외/고립 예방을 위한 청소년 대상 활동대책들과 관계된다. 핀란드에서 청소년업무는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과 관계된 모든 활동, 서비스, 임무들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된다.

시의 청소년업무는 다양한 임무들을 가리키는데, 물론 시의 청소년업무와 청소년정책에 기반하여 임무들이 수행된다. 시의 핵심 청소년업무들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훈육지도, 청소년 시설 관리, 취미 활동 기회 제공, 정보·상담서비스 제공, 청소년협회들과 기타 청소년그룹들 지원, 체육, 문화, 국제, 다문화 청소년 활동, 청소년 환경교육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청소년업무로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작업장 (työpaja - workshop) 서비스와 기타 현지 상황과 필요에 맞는 활동 형태들이 포함된다. 청소년업무는 대부분 현지 공무원들 간 협력과 또한 이들과 청소년들, 청소년협회들, 기타 청소년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기구들과 협력을 바탕으로 실현된다.<sup>6)</sup>

비정부 시민단체들의 청소년업무에 대한 정의와 목표들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정의와 목표들이 하나로 균일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앞에 제시된 청소년업무 기본 방향들과 제정법의 정의가 또한 단체들의 청소년업무 방향을 결정하는 기본 틀이 된다. 예를 들어 비정부 단체이며 핀란드의 청소년, 청소년기구, 청소년활동들을 대표하는 국가 청소년협력협회인 알리안스협회는 (Allianssi ry<sup>7)</sup>-NationalYouthCooperation) 청소년업무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 청소년법 (72/2006) 규정을 참고하면 청소년업무는 청소년들의 소외/고립 상태와 청소년들의 적극적 시민활동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청소년들의 삶의 기술과 복지 증진은 소외/고립 방지 활동에 영향 미친다.
- 청소년업무는 여러 다른 청소년들의 사회적 접촉 기회, 이들이 서로 알게 되는 기회들을 증진시킨다.
- 청소년들 간 동등 비교가 가능한 환경 실현은 청소년업무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들 중의 하나이다.
- 기본 수준의 청소년업무는 청소년들에게 활동 기회들, 유쾌하고 유용한 여가 활동 방식들을 제공한다.
- 기초 청소년업무는 청소년 삶에서 즐겁고 유쾌함을 신장하고 증진하는 것이다.
- 기초 청소년업무는 정기적이고, 장기적 영향과 효과를 고려한 활동을 주관하는 것이다 - 이렇기 때문에

6) 출처 - [www.minedu.fi/OPM/Nuoriso/nuorisotyoen\\_kohteet\\_ja\\_rahoytus/?lang=fi](http://www.minedu.fi/OPM/Nuoriso/nuorisotyoen_kohteet_ja_rahoytus/?lang=fi)

7) ry.는 'rekisteröity yhdistys' 의 축약으로 'registered association' 을 뜻한다.

- 청소년업무는 특성상 예방적이다.
- 청소년업무는 또한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을 찾아 다닌다.
- 청소년업무에 투자된 재원들은 문제 발생 후 바로잡는 활동 지출과 비교할 때 사회부문 비용 절감을 가져온다.
- 사회의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 청소년들의 성장을 증진하는 것이다.
- 정책 결정과 국제 활동에서 청소년들의 참여를 증진하는 것이다.<sup>8)</sup>

### 3. 청소년정책 현황

#### 3.1 법제 현황

청소년법 제정 배경에는 헌법에 명시된 모든 시민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투표권이 없는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별도 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권리이지만 법으로,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권리 실현은 종종 장식문구로 남게 된다. 또다른 청소년법 제정 주요 이유는 법으로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업무 실행에 있어 역할 분담과 협력 책임들을 명시하여 효과적 정책 실현 임무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업무 관련 법제 현황을 살펴보면, 2장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청소년법이 (2006, 변경 2011<sup>9)</sup>) 청소년업무와 청소년정책에 대한 개념을 명시한다. 청소년법은 시의 청소년업무의 일반적 목표와 임무를 정의하고, 청소년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 형태들과 청소년업무의 임무들을 실현하는 관련기구/관련자들을 기술한다. 또한 청소년법은 청소년관련 주요 사안에 대해 청소년들의 공개 경청할 권리, 시의 청소년 주요 사안 청소년들에게 공지 의무, 참여와 영향 미치기 실현 방법들에 대해 명시한다. 2011년 청소년법 변경을 통해 청소년법은 또한 청소년 관련 다부문 협력에 대해 규정한다. 한편 청소년법은 (2006) 정부 임기가 바뀔 때마다 입안해야 할 국가 아동&청소년정책 개발프로그램에 대해 규정한다.

청소년법에 (2006) 따르면 교육문화부가 청소년업무와 청소년정책의 전반적 개발을 맡는다. 청소년 업무 실현은 시와 청소년협회들, 기타 청소년업무 관련 조직/기구들이 맡는다. 또한 청소년업무

8) 출처 - [nam.humak.fi/artikkelit/nuorisotyön-rakenne-suomessa-virallinen-asema-0](http://nam.humak.fi/artikkelit/nuorisotyön-rakenne-suomessa-virallinen-asema-0)

9) 2006년 제정된 청소년법의 주요 사항들은 그대로 유효하며 지역정부 구성 변화에 따른 청소년업무 변경 부분들이 있다. 이는 4장에서 또 언급된다.

서비스는 지역적으로 시들의 협력 활동을 통해 제공될 수 있다.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업무와 청소년정책은 현지 공무원들, 청소년협회들, 기타 청소년업무 관련 조직/기구들, 그리고 청소년 자신들과 함께 다직업적 협력을 통한 실현이 권장된다. 즉 2011년 법 변경과 함께 청소년법의 시의 임무들에 청소년 사안을 다루는 시의 여러 다른 활동부문과 공무원들의 다부문 협력이 공식적으로 첨가되었다.

한편 지역적으로 새롭게 구성된 경제개발·교통·환경센터들의 (ELY-센터)<sup>10)</sup> 책임에 센터 관련법과 법령(2009)에서 청소년법에 언급된 청소년 사안들이 규정되었다. ELY-센터들의 청소년부서 임무들은 청소년법과 청소년정책에 따른 임무들, 즉 이전 지방정부의(läänihallitus - provincial government) 청소년부서 책임이었던 임무들을 계속 맡는다. 교육문화부는 센터 임무 수행결과를 감독한다.

한편 청소년법은 청소년업무와 청소년정책 실현을 위해 시들에 배당되는 국가지원금에 대한 법률을 포함한다. 청소년법은 또한 청소년 관련 조직/기구들과 국가 청소년센터들의<sup>11)</sup> 국가보조금을 규정한다. 국가보조금은 또한 청소년업무와 청소년정책에 대한 연구, 국제 청소년협력업무, 청소년 공간/시설 건설, 청소년 공간/시설 기본 수리와 장비 설치, 그리고 청소년업무 개발 활동에 지급될 수 있다. 국가보조금의 보조 기준들, 즉 청소년업무와 청소년활동의 기준들은 청소년업무와 청소년정책에 대한 법령에서 더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8년 발효된 개정된 아동보호법은 (2007) 각 시가 아동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한 조사들을 하고 계획들을 입안하며 실제적 방책들을 세워 목표를 실현하도록 규정한다. 아동보호법은 또한 아동-청소년정책 실행 의무를 지우는데, 청소년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증진시켜야 한다. 시제정법은 (1995) 시의 거주민들과 청소년들 위한 일반적 의무와 특수 의무들을 규정한다. 시제정법에 따르면 시는 모든 거주민들의 복지와 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증진해야 한다.<sup>12)</sup>

핀란드 교육체계는 세 교육 등급으로 나뉘어지는데, 기본 등급, 중간 등급과 상위 등급이 있다. 원칙적으로 이전 등급을 이수한 사람이 그 다음 등급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기본 등급은 9년간 지속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합한 종합교육에 해당하며, 종합교육에 앞선 취학

10) 핀란드어로 ELY-keskus 는 'Elinkeino-, liikenne- ja ympäristökeskus' (The Centre for Economic Development, Transport and the Environment)을 의미한다. 앞으로 핀란드어 축약 형태인 ELY-센터로 간결히 표기한다.

11) 국가 청소년센터는 (Vallakunnallinen Nuorisokeskus) 핀란드 전역에 13개가 있으며 네트워크가 확립되어 있어 센터 간 협력 활동이 용이하다. 위치한 지역 관련 지역 활동, 전국적 활동 또는 국제 활동 모두 관여할 수 있으며 캠프·자연학교 활동을 자주 주관한다. 청소년들의 적극적 시민 활동과 사회적 입지 증진 활동을 지원하며 필요에 따라 청소년업무 개발센터들, 시들의 청소년업무 지역서비스센터들로 기능하며 또한 청소년업무의 보완교육도 제공한다.

12) 출처 - [www.kunnat.net/fi/asiointijapalvelut/opeku/kultti/nuoriso/nuorisolaki/Sivut/default.aspx](http://www.kunnat.net/fi/asiointijapalvelut/opeku/kultti/nuoriso/nuorisolaki/Sivut/default.aspx)

전 교육, 만 6세 어린이 대상 교육에 원하면 참여할 수 있다. 대부분 어린이들이 취학 전 교육에 참여하며 취학 전 교육은 놀이, 체험 위주로 진행되며 알파벳이나 셈은 미리 가르치지 않는다. 종합교육 이후 교육은 인문고 교육과 직업고 교육으로 나뉘어지는데, 학생들은 원하면 이 두 교육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sup>13)</sup> 중간 등급 교육 후에는 상위 등급 교육인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대학은 직업대학들과 국립대학들로 나뉜다.<sup>1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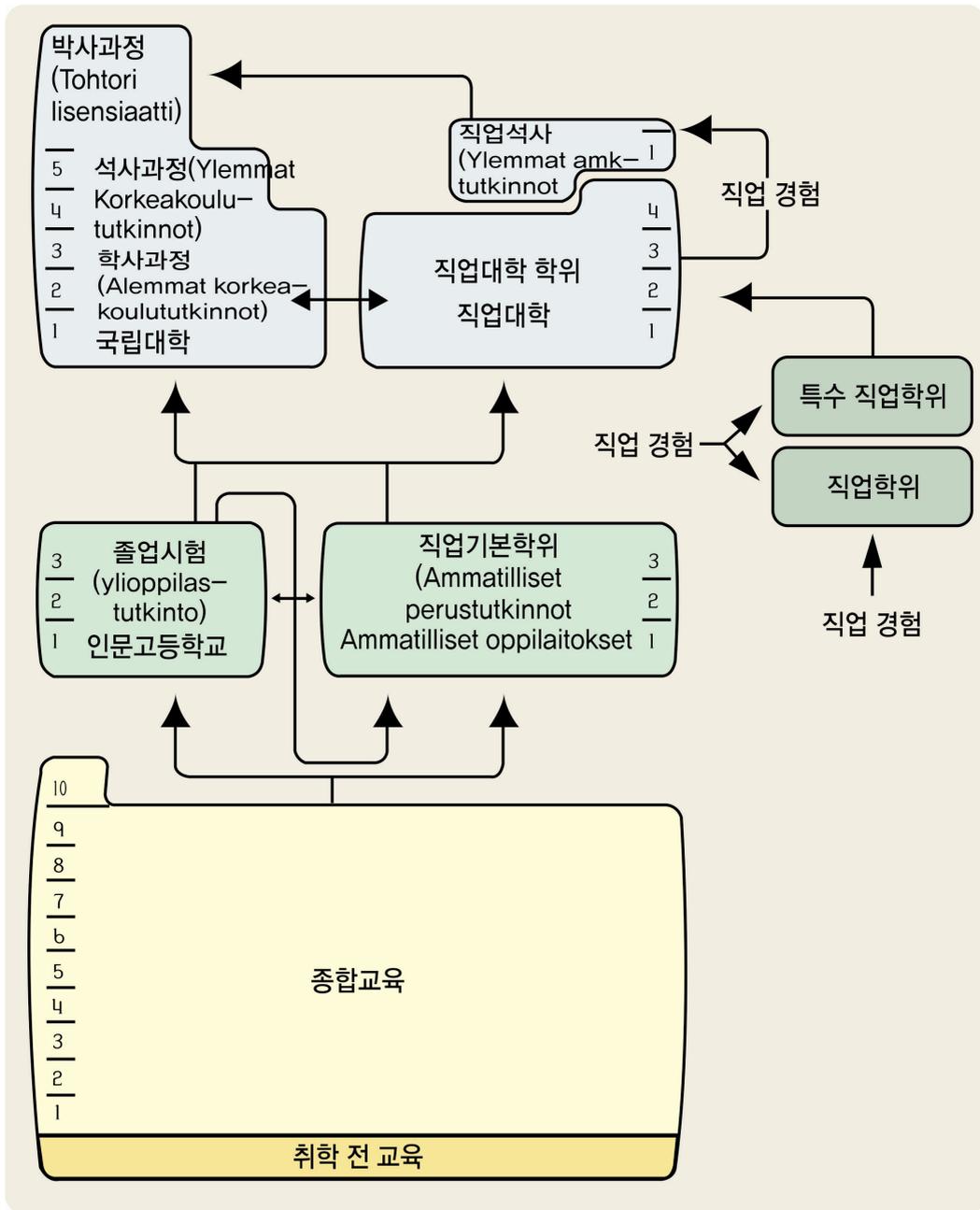
핀란드는 손재주를 중시하고 실용적인 학습도 똑같이 중시하는 문화 풍토를 가지고 있다. 초등학교 때 수예 시간이 따로 있으며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기술, 가정 과목 외에도 수예, 식물 과목을 배울 수 있다. 중학교2학년 때부터 선택과목들 중 2-3과목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과목들은 외국어, 미디어 코스 외에도 , 미술, 기술, 가정, 수예 등 예술/기술 과목들이 제공되어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에 따라 선택 과목을 신청한다. 기술2의 경우 학생이 큰 함을 직접 만드는 등 손재주를 연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물론 재료비는 무료라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이러한 실습 위주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다. 핀란드에서는 선택과목들 중 읽고 공부해야 하는 코스들보다 실습 위주의 과목들이 학생들로부터 인기가 많다.

이렇게 과목들을 서열화하지 않는 풍토는 학생들이 몸이나 손을 사용하는 직종도 존중하는 마음을 갖도록 돕는다. 핀란드에서는 의무교육인 종합학교를 마치고 직업고를 선택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으며 매년 차이가 좀 있으나 인문고와 직업고 진학 비율이 서로 비슷하거나 약간 많거나 적게 나타난다. 또한 지속적인 직업교육의 개발과 평가, 직업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직업교육이 향상되었고 결과적으로 직업고 선호도가 높아졌다. 한편 성인교육은 모든 교육 등급에서 제공된다.<sup>15)</sup>

13) 핀란드어로 'kaksoistutkinto' (dual qualification(s)) 라고 불리며 인문고 학생이 직업고의 수업들을 들을 수 있고, 또 직업고 학생이 인문고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미 인문고와 직업고, 그리고 직업대학을 한 큰 캠퍼스에 이웃으로 자리잡게 한 시들이 있고 이를 추진 중인 시들이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이를 신청하는 학생들은 아직 아주 소수인데, 무엇보다 인문고 공부량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14) 직업대학 (ammattikorkeakoulu - polytechnics or higher institution for vocational education) 재정의 큰 몫은 시가 부담하며 국가 부담은 상대적으로 작다.

15) 출처 - 국가교육청 [www.oph.fi/koulutus\\_ja\\_tutkinnot](http://www.oph.fi/koulutus_ja_tutkinnot)



<그림 1> 핀란드 교육과 학위 체계 ([www.oph.fi/koulutus\\_ja\\_tutkinnot](http://www.oph.fi/koulutus_ja_tutkinnot))

### 3.2 청소년 관련 시설 및 인구 현황

핀란드 청소년 시설 및 인구 현황은 크기가 다른 세 도시를 표본으로 선정해서 살펴본다. 표본 도시로는 작은 시 발케이아코스끼 (Valkeakoski), 중간 크기의 하멘린나 ( Hämeenlinna), 큰 도시들 중 하나인 탐페레를 (Tampere) 예로 한다. 우선 이 시들의 전체 인구와 청소년 시설 수, 그리고 학교 수는 다음과 같다:

<표 1> 전체인구와 청소년시설 및 학교 수

시	전체 인구	청소년 시설
발케이아코스끼	21,200명	4
하멘린나	67,282명	11
탐페레	217,603명	14 <sup>16)</sup>

시	초등학교	중학교	종합학교	특수학교	중고등학교	인문고	직업고
발케이아코스끼	10 <sup>17)</sup>	2				1	1
하멘린나	12	7	3			4	4
탐페레 <sup>18)</sup>	28	5	13	3	1	12	5 <sup>19)</sup>

우선 발케이아코스끼의 청소년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한 곳은 청소년 카페로 당구나 카드 게임, 컴퓨터 사용이 가능하다. 카페에서 꼭 음료수 등을 주문할 필요는 없다. 또 한 곳은 자연보호 구역에 위치한 캠프 센터로 캠핑 등 여러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다. 두 개의 청소년 시설에서도 당구나 여러 테이블 게임들, 여러 운동 놀이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이 두 곳에서 밴드 연습을 할 수 있으며 약 10개 밴드 수용할 수 있는 연습 공간이 있다. 청소년 시설에서 종종 청소년 디스코들도 주관된다.

취미, 클럽, 회의 모임 공간 이용을 위한 순번에 대해서는 발케이아코스끼 청소년사무소로 연락하면 된다. 각 시설에 청소년 지도자는 한 명씩 있으며 시설 개방은 평일과 주말 합해서 일주일에 3-4일에 한다. 특별한 행사나 모임이 있을 때 청소년 연령별로 이용 가능한 시간도 따로 배정될 때도 있으나 보통 만 18세 미만 초등학교 고학년들과 청소년들이 개방 시간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발케이아코스

16) 인구와 비교할 때 매우 적은 수이나 모두 규모가 매우 큰 청소년센터들이다.  
 17) 발케이아코스끼의 초등학교들은 시 센터의 두 개의 큰 학교를 빼고는 대부분 중간, 소규모학교들이다. 두 중학교 모두 300-500명 가량 학생이 통학하는 규모가 큰 학교이다.  
 18) 탐페레의 학교 크기는 거의 대부분 큰 규모로 한 학교 학생 수가 300-500 명인 경우가 많다.  
 19) 탐페레의 직업고등학교와 성인직업교육센터가 합쳐져 하나의 대규모의 직업교육센터로 기능하며 탐페레 여러 구역에 교육 시설이 분산되어 있다. 이 대규모 직업교육아카데미의 청소년 학생 수는 8,000명, 성인 학생 수는 10,000명, 견습학생 수는 3,600명에 이른다. 나머지 네 직업학교는 보통 크기이다.

끼시의 청소년부문의 청소년사무소는 청소년 시설 유지, 관리와 함께 모든 청소년 관련 사안 서비스와 자문을 제공하며 동시에 청소년 서비스 공지와 실현을 책임진다.

발께아꼬스끼시는 청소년 시설 주 이용자들에게 청소년 클럽카드를 발급받을 것을 권장한다. 만 12-17세 청소년들은 청소년 지도자 또는 청소년 시설 관리자의 승인을 받으면 카드를 소지할 수 있다. 청소년 사무소가 카드 발급을 하며 신청 후 약 1주일 후에 발급된다. 만 18세가 되면 카드는 자동적으로 무효화된다. 클럽카드로 발께아꼬스끼 회사/자영업자들이 제공하는 여러 조그만 혜택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시의 청소년부문이 자영업자/회사들과 특별 협약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혜택/할인 제공에 흥미 있는 회사는 청소년사무소에 연락하여 절차를 밟으면 된다. 참고로 클럽카드, 또는 청소년카드 시스템은 각 시마다 있다.

참고로 발께아꼬스끼시는 청소년부문 이외에도 기본적인 청소년 취미 활동 기회들을 제공한다. 발께아꼬스끼 성인교육문화센터<sup>20)</sup>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아동·청소년 예술 기본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발레학교, 수예학교, 언어예술학교, 드라마학교 등이 있다. 성인교육문화센터 외에도 시립 음악아카데미와 미술아카데미에서 예술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다. 실업자 부모를 둔 아동이나 청소년은 무료로 한 가지 음악이나 미술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다. 음악아카데미와 미술아카데미 또한 핀란드 거의 모든 시에 있으며 예술 기본교육의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주기적으로 이에 대한 평가가 행해진다. 즉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차분히 단계를 밟아가는 심도 있는 예술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체육클럽들이 있으며 스케이트 공원, 체육관, 수영장, 아이스하키장 등 체육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체육 취미 활동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하멘린나는 핀란드에서 중간 규모에 가까운 시로 11개의 청소년 시설을 관리하며 각 시설에 한 명의 청소년 지도자가 근무한다. 청소년 시설의 규모는 발께아꼬스끼보다 큰 편으로 시설에서 당구/포켓볼, 컴퓨터 게임, 그룹 게임, 음악 감상, 영화 감상, 수예, 신문 읽기, 텔레비전 보기, 여러 다른 경기/시합들에 참여하거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 청소년 시설은 협회들이 주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임시적 임대는 관련 청소년 시설 청소년 지도자에게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청소년 시설의 개방은 작은 시설 두 곳은 일주일에 하루만 개방하며, 가장 큰 시설은 평일과 주말 합해 일주일에 5일 개방한다. 대부분 시설은 주로 일주일에 3-4일 개방한다. 하멘린나시의

---

20) 핀란드의 거의 모든 시에 성인 대상의 일반교양/취미/시민문화 교육문화센터가 있는데 성인 대상 외국어 코스들, 기본 심리학 코스들, 수예, 공예, 회화 코스들, 무용코스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오후와 저녁 시간에 교육이 제공된다. 아카데미 프로그램 한 부분에 항상 아동·청소년을 위한 국가교육청이 감독, 평가하는 예술 기본교육 코스들이 있다. 이를 맡은 강사들의 전반적 높은 학력은 (석사 소지자들도 많음)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심도 있는 예술 취미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청소년부문 관련 직원은 청소년지도자들 포함해서 15명이다.

하메린나시는 기본적인 성인교육문화센터, 음악아카데미, 미술아카데미 외에 문학, 그룹스포츠, 빙상 스포츠, 보이스카웃, 육상, 사격, 모토스포츠, 레슬링, 태권도 등 여러 체육 취미 활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페레시의 청소년 시설은 총 14개인데, 이들 모두 다 규모가 매우 큰 청소년센터들이다. 한 곳은 청소년카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곳의 청소년 지도자들은 2명이며 카페에서 공연, 강의, 정보전달 행사 등이 열린다. 대부분 센터에 각 3명의 청소년 지도자들이 근무하며, 다른 센터들에서도 최소 2명의 청소년 지도자들이 일한다. 일주일에 3-5일 개방되며 상황에 따라 연령대별로 이용 시간이 따로 배정되는 경우도 있다.

센터는 최신 TV가 구비되어 있고 최신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으며, 실내 하키, 벽 등반 등을 할 수 있다. 밴드 공간도 따로 갖추어져 있다. 이 외에 수예, 요리 등 취미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소풍이나 행사들이 개최되기도 한다. 가끔 세일즈 행사들도 (예. 크리스마스 세일) 열린다. 생일 파티나 디스코들도 종종 주관된다. 테마별 취미 활동도 주관되는데, 놀이, 수예/공예/기술, 드라마, 체험, 시합 등 테마들이 있다.

따페레 시의 센터에 있는 가장 큰 청소년센터 '13' 을 간략히 소개하면 2,500 평방 미터, 5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작업장, 취미, 회의, 모임 공간이 제공된다. 주요 서비스는 게임, 음악, 미디어, 수예 활동인데, 3층은 전부 수예만을 위한 공간이다. 음악 공간도 무대와 스튜디오가 구비되어 있다. 이 모든 활동들을 위한 시설, 장비, 재료 등은 다 구비되어 있으며 전문 직업지도자가 청소년들의 취미 활동을 지도, 조언한다. 청소년센터 13의 총 직원은 14명으로 건물과 시설 관리인을 포함한다.

참고로 따페레시의 성인교육문화센터의 교육 제공은 시 전역에 분산되어 있으며 물론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예술 기본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따페레시는 방과 후 취미 활동 클럽서비스인 HIP 을 (Harrastava iltäpäivä) 원하는 학교에 제공하는데 방과 후 취미 활동은 학교나 시의 체육관, 수영장 등 시의 여러 공간들에서 이루어진다. 따페레시는 좀 더 많은 학교들이 HIP에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sup>21)</sup> 어린이의 취미 생활 관련 핀란드 전 대통령 따르야 할로넨은 (Tarja Halonen) 모든 어린이들이 부모의 재력이나 거주지와 상관 없이 꼭 적어도 하나의 취미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이런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서적 성장을 돕는 취미 생활의 중요성은 현

---

21) 출처 - [www.tampere.fi](http://www.tampere.fi), [www.nuortentampere.fi](http://www.nuortentampere.fi), [www.nuoret/nuorisotila/](http://www.nuoret/nuorisotila/), [www.hameenlinna.fi](http://www.hameenlinna.fi), [www.hameenlinna.fi/Nuoret/Nuorten-Hameenlinna](http://www.hameenlinna.fi/Nuoret/Nuorten-Hameenlinna), [www.valkeakoski.fi](http://www.valkeakoski.fi), [www.valkeakoski.fi/portal/suomi/kulttuuri\\_ja\\_vapaa-aika/nuoret/nuorisotilat](http://www.valkeakoski.fi/portal/suomi/kulttuuri_ja_vapaa-aika/nuoret/nuorisotilat)

정부도 변함없이 지지하고 있다.<sup>22)</sup>

청소년센터 이용 청소년들은 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프로젝트, 청소년센터 활동계획과 실현에 참여가 가능하며 청소년 지도자들은 청소년들의 센터 개발아이디어를 제시하기를 희망하며 이를 가능한 한 수렴하려 한다. 기본적으로 청소년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은 핀란드 전국 청소년 시설, 청소년센터들이 주목해야 할 원칙인데 이는 지난 달 문화체육부 장관의 공식 석상에서 밝힌 입장이 이런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지난 5월 21일 청소년/청년 사회보장 (Nuorisotakuu - Youth guarantee) 관련 알림 행사에서 문화체육부 장관은 청소년이 변화의 대상이 아니라 변화의 실현자임을 강조하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과 필요한 서비스들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화체육부 장관은 다분야 공무네트 워크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시 공무원들 간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sup>23)</sup>

### 3.3 지도인력 양성 현황

여가와 청소년업무부문의 교육 구조가 지난 10년 동안 새롭게 변화되어 같은 임무에서 많은 여러 다른 학위를 소지한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다. 청소년업무 직원으로 이끄는 교육은 직업교육과 대학교육에서 제공된다. 교구들은 자체 청소년업무 종사자들을 별도의 직업교육기관에서 교육시킨다.

종합교육 이후 중간등급 교육 단계의 직업교육으로 직업고등학교에서 ‘청소년과 여가 지도/감독 기본학위’ 를 이수할 수 있으며, 청소년 지도자와 여가 지도자 교육은 여러 여가 활동과 체육부문 교육기관에서 또한 받을 수 있다. 3년 기간의 기본학위 이수자는 상위 등급, 즉 대학 진학 자격이 주어진다. 기본학위는 또한 직업 경험이 충분할 경우 직업 생활의 지식/기술 증명<sup>24)</sup> 절차를 통해 이수할 수 있다. ‘아동가족업무 기본학위’ 는 여가와 체육 부문에 속하는 직업고등학교에서 제공되는 교육이다. 기본학위는 유아교육 임무에서 시 또는 교구의 직원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학위는 직업 기본교육으로 또한 지식/기술 증명 절차를 통해서 이수할 수 있다.

학위들의 목표는 청소년 여가 지도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하는 것이다. 청소년

---

22) 핀란드에서 부모가 실업자이거나, 수입이 적은 편모/편부 밑에 성장하는 어린이들에게 어린이/청소년 대상 미술/음악/운동무용 중 한 취미를 무료로 배울 수 있다. 음악 취미의 경우 악기를 살 형편이 못 될 경우 악기를 음악아카데미에서 무료로 대여해준다. HIP 활동 참여는 기본적으로 무료이다.

23) ‘Nuori ei ole meille muutoksen kohde, vaan muutoksen toteuttaja’ 청소년은 우리에게 변화의 대상이 아니라 변화의 실현자, 출처 - 교육부 청소년부문 기사 [www.minedu.fi/OPM/Tiedotteet/2013/05/nuorisotakuu\\_arhinmaki.html?lang=fi](http://www.minedu.fi/OPM/Tiedotteet/2013/05/nuorisotakuu_arhinmaki.html?lang=fi)

24) 핀란드어로 ‘näyttökunto’ (skills demonstration)을 뜻하며 보통 직업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의 마지막 단계에서 수행해야 하는, 졸업을 위해 통과해야 할 관문이다.

여가 지도자는 부문 업무방식들을 개발, 계획하고 아동과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여가 활동을 위한 전제 조건들을 구축,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직업대학 중 하나인 인문직업대학에서<sup>25)</sup> ‘시민 활동과 청소년업무 교육 프로그램’ 을 이수할 수 있다. 인문직업대학의 교육은 여러다른 전문가 임무, 교육 임무, 개발 임무, 감독자 임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한다. 기본 교육 배경으로는 인문고 졸업 또는 관련 부문 직업고 졸업을 전제한다. 직업대학 교육 기간은 4년이다. 더 나아가 대학 수준의 상위 학위 교육은 쿠오피오 대학과 (Kuopion yliopisto) 미 리 직업대학이 (Mikkelin ammattikorkeakoulu) 협력하여 제공하는 2년 과정의 청소년교육 석사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또한 탐페레 대학 사회학부에서 ‘청소년업무와 청소년연구 기본프로그램’ 60학점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청소년업무와 청소년연구 석사 프로그램’ 도 제공된다.

청소년업무 관련 학위들은 또한 견습교육을 통해 이수될 수 있다. 견습교육은 직업 기본교육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추가교육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교육 배경에 기초하여 견습 학생을 위한 개인 학업프로그램이 작성되는데, 이 때 이미 갖고 있는 부문 지식과 기술을 고려한다. 학업프로그램은 학생, 고용주, 지역 교육정책 공무원과 함께 입안한다. 다시 요약하면 청소년부문 직업교육 기본학위들은 청소년·여가지도 직업 기본학위와 아동지도 직업 기본학위이다.<sup>26)</sup>

### 3.4 대표적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 사례

Avartti는 만 14-25세 대상 국제 취미프로그램으로 영어 명칭은 “The International Award for Young People” 이다. 매년 프로그램에 130개 넘는 국가의 약 백만 청소년들이 참여한다. 이 프로그램은 1956년 영국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이고, 핀란드의 Avartti는 교육문화부가 임명한 국가서비스개발센터이다. Avartti-프로그램 행정은 독립적인 Avartti-기금이 담당한다.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익숙한 취미 활동을 계속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직접 달성목표들을 세워 자신의 기술을 개발, 시험하고 자기 자신과 경쟁하게 된다.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은 핀란드와 외국의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고 여러 다른 문화를 접할 수 있다. 자신이 정한 목표를 달성하면 참가자는 이에 대한 명예 기장을 받는다. 기장 종류는 동, 은, 또는 금이며, 이와 함께 Avartti-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도 받는다.

Avartti-프로그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프로그램 참가자는 세 개의 취미 활동, 서비스, 기술, 운동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또한 체험적 ‘모험’ 활동을 하게 된다. 자신의 흥미에 따라 한 가지

25) 핀란드어로 ‘Humanistinen ammattikorkeakoulu’ 이며, 축약하여 종종 ‘Humak’ 으로 불린다.

26) 출처 - [www.minedu.fi/export/sites/default/OPM/Nuoriso/Liitteet/NUORISOTYx\\_JA\\_-POLITIIKKA.pdf](http://www.minedu.fi/export/sites/default/OPM/Nuoriso/Liitteet/NUORISOTYx_JA_-POLITIIKKA.pdf)

또는 세 취미 활동 모두를 동시에 시작할 수도 있다. Avartti는 혼자, 짝을 지어 또는 그룹으로 할 수 있다. Avartti참가에 어떤 특수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는다. 참가 자격으로 만 14-25세 연령 기준을 충족하고 취미 활동에 대한 흥미와 하나의 취미를 시작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참가가 가능하다. Avartti-프로그램 참가에 임원비나 가입비는 없으며 모든 참가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 프로그램 진행되는 동안 개인적 성취 내용들을 기록하기 위한 국제 성취노트 구입비 3 유로가 있다. Avartti 기타 비용은 대개 참가자들이 선택한 취미들에 따라 차이가 있다.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시의 취미 기회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 때 프로그램 참가 비용이 가능한 저렴하게 된다.

Avartti 참가를 원하는 청소년들은 가까운 시의 Avartti활동가에 연락한다. 자신이 거주하는 시에 아직 Avartti활동이 없으면 Avartti사무소로 직접 연락하거나 인터넷에서 작성할 수 있는 연락양식을 보내면 된다. 현지 Avartti활동은 예를 들어 학교들, 시와 교구들의 청소년부문들, 운동클럽들과 청소년기구들과 협력하여 주관할 수 있다. 활동 시작 전에 현지 활동가는 Avartti 지도교육에 참여한다. Avartti사무소는 매년 지도자 임무 수행에 실제로 유용한 정보와 조언을 주는 지도자 교육을 수시로 주관한다.

지도자들은 예를 들면 청소년업무 종사자들, 교사들, 청소년 부모님들, 그리고 여러 다른 취미 활동의 숙련자들 등을 뽑을 수 있다. 지도자의 보조자로 ‘취미 지도자들’ 이 활동할 수 있는데, 이들은 청소년이 선택한 취미의 개인 지도자들로 관련 취미 숙련자들이다. 취미 지도자들은 여러 협회와 기구들의 활발한 임원들로 취미 활동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전달에 흥미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다.

한편Avartti-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모든 청소년/청년들, 그리고 만 30세 미만 청소년지도자들에게 유럽 청소년카드를 무료로 제공한다. 카드는 날인된 날부터 1년 간 유효하며, 유럽 41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유럽에서 카드 소지자들은 5백만에 이르고 이들에게 혜택, 서비스, 할인들이 10만 넘는 장소에서 제공된다. 핀란드에서는 청소년카드로 600곳 넘는 장소에서 혜택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혜택들은 문화, 운동, 여행, 서비스, 상점, 레스토랑 등에서 받을 수 있다.

Avartti의 모두에게 공통인 모험 활동, 기술, 체육, 서비스 취미 활동과 더불어 금 등급에서 흥미롭고 유용한 프로젝트 활동을 한다. 프로젝트에서 Avartti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게 된다. 프로젝트는 국제적일 수 있다. Avartti는 세 개의 등급으로 활동이 나뉘어진다:

- 동, 만 14세

- 은, 만 15세
- 금, 만 16세

참가자는 프로그램의 동 등급에서 시작하며 은 등급을 거쳐 금 등급으로 진전한다. 프로그램은 계단식으로 진행되는데, 즉 은 등급의 요구들은 동 등급의 요구들보다 크고, 금 등급의 요구들은 가장 어렵다. 주목할 점은 Avartti-프로그램이 참가자들의 성취 내용들을 서로 비교하지 않고 참가자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는 방향으로 구성된 점이다. 이런 이유로 각 참가자의 Avartti는 개인적일 수 있고, 등급과 관계 없이 다른 참가자들 활동과 비교할 때 매우 다를 수 있다.

금, 은, 동의 명예 기장들은 예를 들어 중요한 성격을 띠는 행사 형태를 통해 수여할 수 있다. 행사에 기장 수여 대상자들, 자원봉사 지도자들, 그리고 프로그램을 보호하고 재정 지원하는 담당자를 초대한다. 행사는 시 차원, 지역 차원 또는 국가 차원에서 주관될 수 있다. 행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은 청소년들의 성취를 축하하며 청소년들이 이에 대한 긍정적 추억을 얻도록 돕는 것이다. 기장 수여 행사에서 또한 영향력 있는 공적 인물도 함께 할 수 있다.

Avartti에서 청소년교육 직업인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다른 사람이 활용하도록 공유하면서, 이를 또한 국내와 국제 청소년업무 네트워크에서 활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화 교육 증진 프로그램들을 실현시킬 수 있으며, Avartti는 또한 청소년•교육업무를 하는 기구, 시, 교구, 학교들에서 업무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 Avartti 지도자들의 역할은 청소년 취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지원자로 기능하는 것이다.

Avartti사무소는 자료 전달, 감독과 자문 제공, 국제적 기회들 공지를 통해 현지 지도자들과 교육주관자들을 지원한다. 지도자들은 Avartti의 국내, 국제 교육들을 통해 자신의 직업 기술을 개발, 향상시킬 수 있다.

각 취미 활동의 취지와 학생들의 경험담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서비스 - 서비스 임무를 수행하면서 경험을 통해 배우고 개별 인물이나 공동체를 돕는데 참여한다.

“우리 그룹은 디스코, 어린이 놀이날, 국제방문객 위한 프로그램 같은 여러 다른 행사를 주관하는데 참여했다.” Aiju, Helsinki

“서비스는 이웃의 말을 돌보면서, 그리고 도움 임무들에서 말의 경주 여행들에서 실현되었다. 내 친구는 젊은 대학생들이 이용하도록 썬 예산의 음식조리법을 모았다.” Minna, Helsinki  
기술 - 기술에서는 새로운 수예/기술을 배우고 이들을 실제로 활용하는 법 배운다.

“기술에서 요리하는 법 배웠다. 나한테 매우 유용했다. 지금 레스토랑 요리사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Nuppe, Jyväskylä

“일주일에 한 번 오후에 Monari의 청소년 시설에서 기술 배웠다. 3명은 당구 기술, 1명은 사진, 1명은 기타 연주, 그리고 또 한 명은 수예 기술 배웠다” Lappeenranta 청소년들

운동 - 운동에서 이미 익숙한 운동 종류들을 취미로 할 수 있고 또는 새로운 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취미는 개인, 짝, 또는 그룹 운동일 수 있다.

“운동으로 가라데를 배웠다. 목표는 무술 기술 향상시키고 전체 몸 상태와 유연성을 좋게 하는 것이다” Eki, Jyväskylä

“은 등급 운동으로 춤을 선택했는데 이전부터 내 취미였다. 목표는 무용 기술 향상, 전체 몸 상태와 유연성 향상, 그리고 공연 경험 얻는 것이다” Mari, Lipen

모험 - 모험은 체험 소풍/여행/하이킹이며 시골, 바다, 그리고 공중에서도 할 수 있다. 모험은 자발성, 그룹 활동에 대한 책임감, 생존 기술들을 요구한다.

“모든 모험들이 멋진 경험들이었다. 모험 활동으로 주말 내내 산악자전거로 여행했다.” Atso, Helsinki

“그날 저녁 은 등급 모험의 끝에 다다랐고, 이슬비를 맞으며 노곤한 몸이지만 기분 좋게 Tydali에 도착했다. 이미 우리를 위한 텐트가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 때 몸을 간단히 씻은 후 다른 청소년들의 모험 얘기 들었다... 무엇보다 Avartti는 역시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Lappeenranta 청소년들, 독일에서

학교와 좀 더 긴밀히 연결되는 체험활동으로는 탐페레시의 타이데까리를 (Taidekaari - Art Arc) 예로 들 수 있다. 타이데까리는 탐페레시의 독자적이고 새로운 문화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여러 예술 분야를 접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타이데까리의 활동은 탐페레시의 초중등교육부, 박물관/미술관 서비스의 TAITE-unit<sup>27)</sup>과 문화서비스가 함께 기획 준비, 조직한다. 이 중 문화교육을 담당하고 탐페레시의 박물관/미술관 서비스의 한 부분인 TAITE-unit 이 문화교육프로그램 타이데까리 실현의 핵심 주체이며 박물관 페다고지의 교육과정을 계획, 입안한다.

타이데까리는 콘서트, 연극, 박물관/미술관 체험은 물론 이 외의 많은 활동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예술가들과 예술 교육자들이 지도하는 작업장 활동에 참여하여 직접 만들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더불어 학교 교사들은 타이데까리가 수업 지원을 위해 직접 고안한 보충 자료들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어린이들의 작품들은 박물관/미술관, 어린이 문화센터 Rulla, 그리고

---

27) 이 명칭은 핀란드어로 예술가 'taiteilija' 에서 인용된 듯 하다. 정확한 의미는 홈페이지에 따로 소개되어 있지 않다.

다양한 공공 장소와 도시 주변에 설치, 전시한다.

파이데까리는 사회적 평등 원칙에 기초하여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비롯한 누구나가 파이데까리의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쓴다. 가능한 한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예술과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오는 학생 그룹들에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

현재 파이데까리의 목표는 2014년까지 취학 전 교육부터 시작해서 전체 종합교육을 포함하는 완전한 파이데까리가 되는 것이다. 2011-2012년 기간 동안 이미 취학 전 교육 학급들, 특수교육 받는 학생들, 이민자/난민 자녀들의 준비학급이 파이데까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초중등교육에서 5, 8, 9학년이 전반적 참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나 이미 5학년은 테마로 콘서트 관람과 음악작업장이 준비되고 있으며 8학년은 영화와 연극 테마로 탐페레 몇몇 학교에서 시험 중이다. 9학년도 테마로 지역에 건설된 문화환경 익히기로 몇몇 파일럿 학교들과 협력하여 시험 중이다. 5학년 테마는 음악 학습 목표와 연계되며, 8학년의 영화, 연극 구체적 주제는 ‘사랑에 빠지기와 꿈꾸기’ 로 국어-문화 과목 학습 목표와 연계된다. 9학년 테마는 청소년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 건설된 문화환경을 조사하고 더 나아가 지역 문화 풍경 구상, 조성에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9학년 테마는 지리 과목 학습 목표와 연계될 수 있다.

파이데까리는 렘팔라시의 (Lempäälä) Pii Poo<sup>28)</sup> 프로그램과 함께 교육문화부의 2009-2013전국 적 Magic Lamp - 아동문화 네트워크에 뽑힌다. 현재 Pirkanmaa의 (땀빼레시와 주변의 작은 도시들 합한 명칭) Magic Lamp는 특수 지원이 필요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문화서비스, 다예술적 예술문화교육과 사회 서비스의 활동모델들을 개발하고 있다.

#### 4. 청소년정책의 전달체계

청소년업무의 실현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시가 책임진다. 국가 단위의 책임은 교육문화부의 (Opetus- ja kulttuuriministeriö) 문화체육부가 맡으며, 구체적으로는 문화체육부의 청소년부서( Nuorisoyksikkö) 청소년업무 관련 사안들을 준비하고 무엇보다 정부의 청소년업무 국가개발계획과

---

28) 핀란드어로 소리를 흉내낸 명칭이며 렘팔라시의 4-13세 대상 문화교육프로그램이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여러 예술 형태들과 운동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여러 작업장/실습장 활동을 제공한다. 애니메이션, 연극, 밴드, 연주, 서커스, 인형극, 가면극 등 작업장 활동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작품도 직접 제작, 공연할 수 있다. 대부분 활동들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으며, 무료가 아닌 서비스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다. 출처 [www.lastenpiipoo.fi](http://www.lastenpiipoo.fi)

청소년정책 조율을 책임진다.<sup>29)</sup>

교육문화부는 매년 지정되는 국가지원금으로 각 시의 청소년업무를 지원하고 지역 청소년업무도 수행결과 감독하며 지원한다. 또한 교육문화부는 국가보조금으로 국가청소년기구들 (valtakunnallinen nuorisojärjestöt - national youth work organisations), 이들의 산하기구/조직들 (piirijärjestöt) 청소년업무서비스기구들 (nuorisotyöpalvelujärjestöt - youth work service organisations), 청소년 업무기구들<sup>30)</sup> (nuorisotyötä tekevät järjestöt - youth work organisations), 국가청소년센터들 (valtakunnalliset nuorisokeskukset - national youth centres), 청소년들의 작업장 활동, 국제청소년협력업무, 찾아가는 청소년업무<sup>31)</sup>, 그리고 청소년들의 새로운 활동형태 개발업무를 지원한다. 약 100개의 청소년업무 기구가 국가지원금을 거의 꾸준히 받을 수 있다. 기구들의 선별 국가보조금은 별도의 상황/수행결과 평가에 기초하여 승인여부가 결정된다.<sup>32)</sup>



<그림 2> 국가청소년센터 분포도 [www.snk.fi/fi/etusivu](http://www.snk.fi/fi/etusivu)

29) 핀란드의 교육문화부는 (Opetus- ja kulttuuriministeriö) 교육부와 문화체육부로 나뉘며 교육부 장관과 문화체육부 장관이 재직하는 두 장관 체계로 되어 있다.

30) 이 기구들의 일부 임무만이 청소년업무 수행이다. 즉 다른 여러 임무를 수행하면서 청소년업무도 수행하는 기구들이다.

31) 핀란드어로 'etsivä nuorisotyö' 이며 특히 학교를 중퇴한 청소년들을 찾아가 다시 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는 일을 한다.

32) 선별 국가보조금 지급여부 상황 평가 기준들은 청소년활동들의 질, 범위, 비용절감성, 그리고 활동들의 사회적 연관성과 기구의 재정 지원 필요 정도이다.

한편 교육문화부의 전문가단위로 청소년사안자문위원회와 (Nuorisosiain neuvottelukunta - The Advisory Council for Youth Affairs) 청소년기구 평가지원위원회가 (Nuorisjärjestöjen arviointi- ja avustustoimikunta) 활동한다. 청소년기구평가지원위원회는 국가청소년기구들과 청소년업무서비스기구들의 국가보조금에 대한 제의를 입안한다.

지역의 청소년활동<sup>33)</sup>은 경제개발·교통·환경센터, 즉 ELY-센터가 맡는다. 청소년활동 임무들은 6개의 ELY-센터들에 집중된다. 이들은 라플란드 (Lappi), 북포흐얀마(Pohjois-Pohjanmaa), 포흐얀마(Pohjanmaa), 북사보(Pohjois-Savo), 남서핀란드 (Varsinais-Suomi) 그리고 수도권 (Uudenmaa) ELY-센터들이다. 교육문화부가 또한 이들 ELY-센터들의 청소년업무 수행결과를 감독하고 재정을 지원한다. ELY-센터들은 청소년활동들 중 청소년들의 작업장 활동, 아동·청소년정책 개발프로그램 업무, 아동·청소년들의 취미 활동 지원 등 관련 국가보조금 지급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ELY-센터들은 아동·청소년정책의 (LANUKE<sup>34)</sup>)지역적 조율을 책임진다.

현지 청소년업무는 앞에 언급했듯이 각 시가 담당하는데, 교육문화부가 시의 청소년 인구, 청소년업무 수행결과 등을 계산·통계를 내 국가지원금 규모를 결정하여 시의 청소년업무를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시는 청소년업무에 사용될 자원 규모를 직접 결정한다. 시는 또한 청소년 현지 협회들과 활동그룹 보조, 청소년 공간/시설 유지와 관리 그리고 특수청소년업무<sup>35)</sup>도 책임진다. 시는 청소년협회들과 기타 청소년활동을 하는 공동체들과 협력하여 청소년업무 실현을 책임진다. 시에서 청소년업무 사안들은 독립적 청소년위원회 (nuorisolautakunta), 또는 연합위원회에서 (yhdistelmälautakunta) 다룬다. 청소년의회<sup>36)</sup>들과 (nuorisovaltuusto) 기타 청소년 영향그룹들은 (vaikuttajaryhmä) 약 180개의 시에 있다.<sup>37)</sup>

---

33) 핀란드어로 'nuorisotoimi' 를 뜻하는데 청소년활동으로 번역한다. 여기서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업무와 (nuorisotyö) 유사한 개념이다.

34) 'Lapsi- ja nuorosopoliitikan kehittämisselma' 의 축약이다. LANUKE에 대해서는 5장에서 좀 더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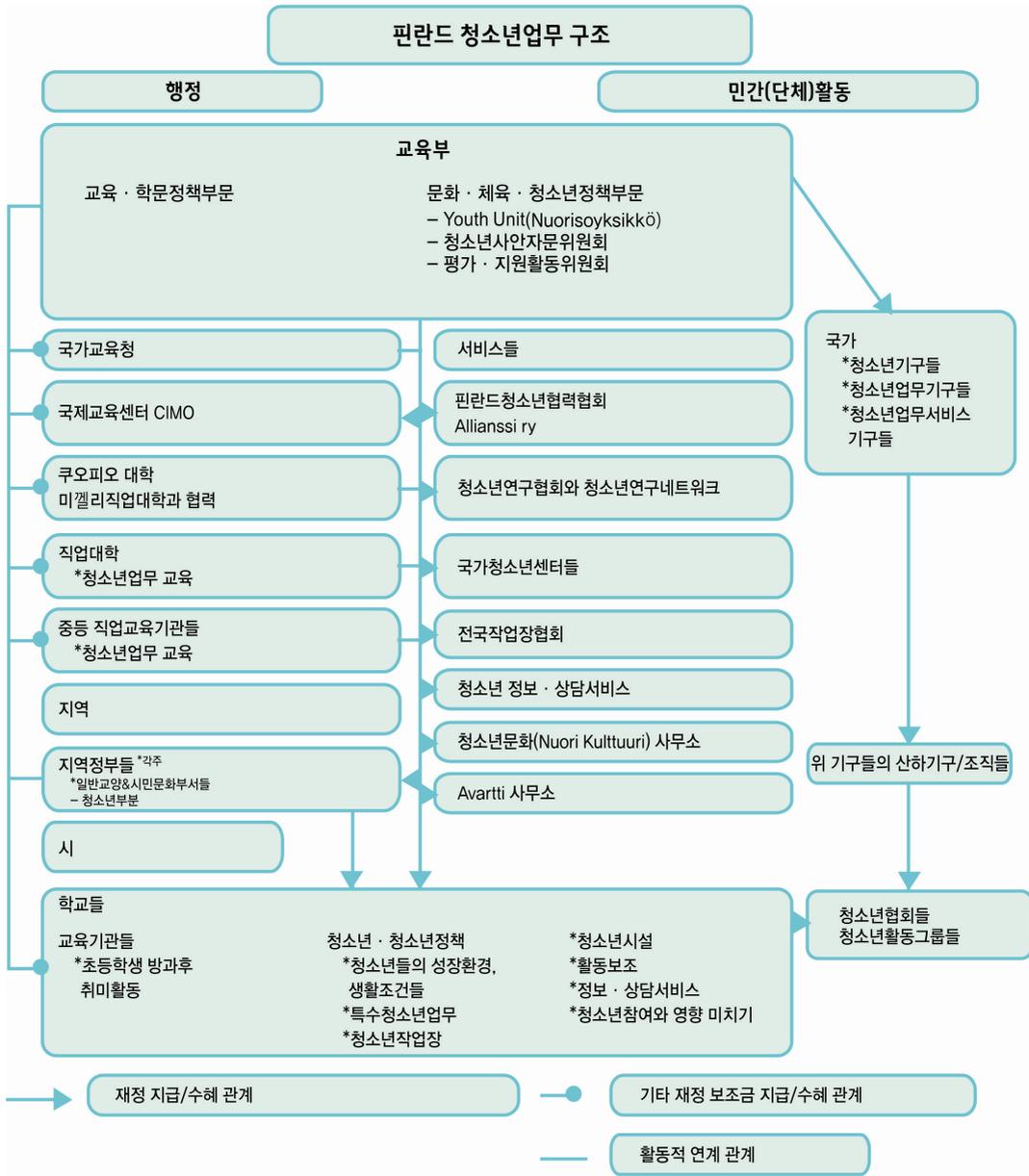
35) 핀란드어로 'erityisnuorisotyö' 이며 특수청소년업무의 예로는 만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이들 가족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핀란드 적십자의 청소년은신처들과 (Nuorten turvatalot - Youth shelter) 젊은 여성들 성장과 정체성을 지원하는 여성의 집 (Tyttöjen talo - Girls' House/Shelter) 활동이다. 현지 거주협회와 시가 함께 이 시설들을 유지, 관리한다.

36) 청소년의회는 실제 결정권은 없으며 시의회와 사안들, 청소년 사안들의 동향 주시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7) 출처 - [www.minedu.fi/OPM/Nuoriso/nuorisopolitiikka/hallinto\\_ja\\_toimijat/?lang=fi](http://www.minedu.fi/OPM/Nuoriso/nuorisopolitiikka/hallinto_ja_toimijat/?lang=fi),

[www.minedu.fi/OPM/Nuoriso/nuorisotyoen\\_kohteet\\_ja\\_rahoytus/?lang=fi](http://www.minedu.fi/OPM/Nuoriso/nuorisotyoen_kohteet_ja_rahoytus/?lang=f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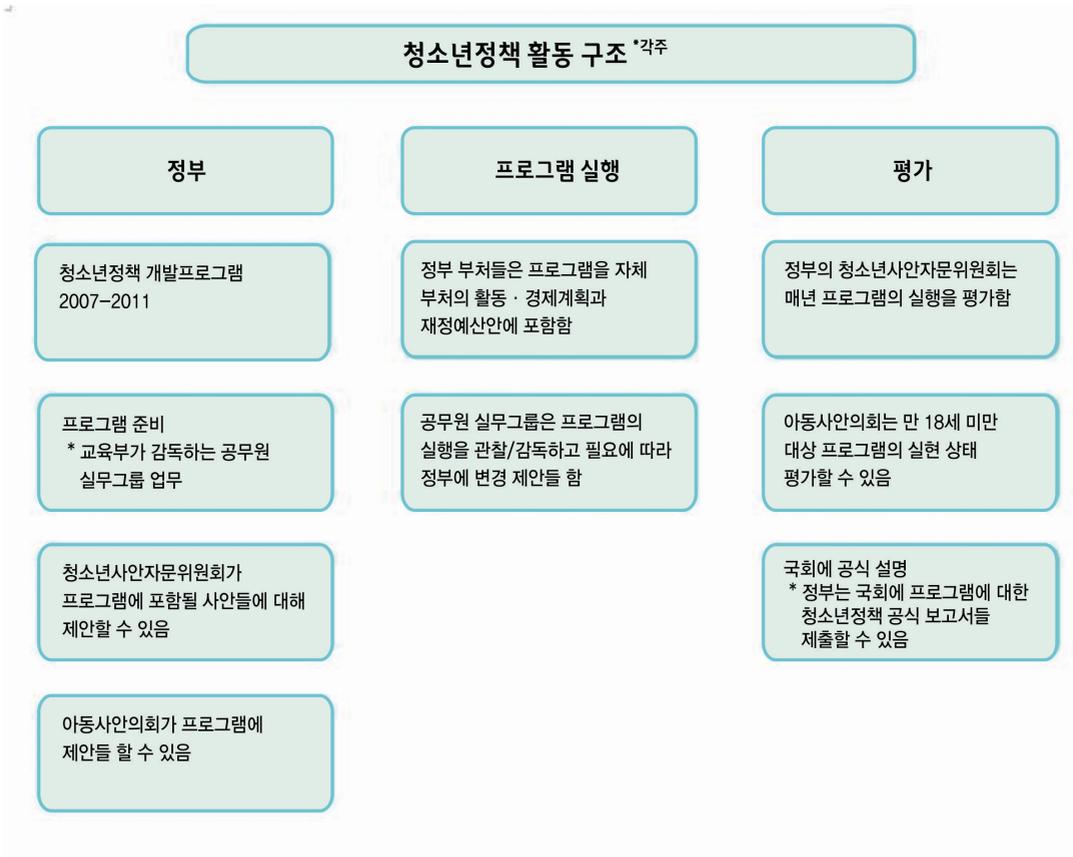
[www.minedu.fi/OPM/Nuoriso/nuorisosiain\\_neuvottelukunta/?lang=fi](http://www.minedu.fi/OPM/Nuoriso/nuorisosiain_neuvottelukunta/?lang=fi)



\*각주: 청소년업무 구조도의 최신 버전이 없는 이유로 조금 기한이 지난 구조도를 이용한다. 구조도에 큰 변화는 없으며, 다만 지역정부 부분이 ELY-센터로 대체되고 지역 정부의 주요 청소년업무가 새 ELY-센터로 옮겨졌다.

<그림 3> 핀란드 청소년업무 구조

([www.minedu.fi/export/sites/default/OPM/Nuoriso/Liitteet/NUORISOTYx\\_JA\\_-POLITIIKKA.pdf](http://www.minedu.fi/export/sites/default/OPM/Nuoriso/Liitteet/NUORISOTYx_JA_-POLITIIKKA.pdf))



\*각주: 이 부분 도표도 최신 버전이 아직 제시되지 않아 기한이 지난 도표를 이용한다. 실제 역할과 책임은 거의 동일하다.

<그림 4> 청소년정책 활동구조

([www.minedu.fi/export/sites/default/OPM/Nuoriso/Liitteet/NUORISOTYx\\_JA\\_-POLITIIKKA.pdf](http://www.minedu.fi/export/sites/default/OPM/Nuoriso/Liitteet/NUORISOTYx_JA_-POLITIIKKA.pdf))

### 청소년정책 활동 구조<sup>38)</sup>

전국적으로 점검할 때 시, 교구, 현지 청소년업무 관련 기구가 (등록된 협회) 시의 청소년업무 실현의 기본 단위이다. 또한 청소년업무의 기본구조는 이들 주 활동자들의 병렬성과 협력으로 기술될 수 있다. 청소년업무의 총체성은 유사한 활동부문들과 유사한 직업부문들, 그리고 여러 다른 부문과 연계하는 개발 활동을 통해 형성된다. 이런 관계에서 활동은 자주 병렬적이고 협력에 기초한다.

청소년업무는 또한 더 광범위한, 많은 여러 다른 부문과 활동기구/활동자들이 관계되는 아동·청소년

38) 이 부분 도표도 최신 버전이 아직 제시되지 않아 기한이 지난 도표를 이용한다. 실제 역할과 책임은 거의 동일하다.

정책 목표들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는다. 정책 목표들은 청소년관련 인력 자원 강화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목표들은 여러 다른 부문들과 청소년활동자들 간 협력 업무와 업무 분담 규정과 조율을 요구한다. 청소년업무 범주에서, 그리고 이 경계 표면에서 협력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졌고 지난 몇 년 동안 강화되었지만 각 시마다 차이는 아직도 큰 편이다.

현지 시들, 교구들과 기구들의 청소년업무 담당자들은 실제 업무와 개발·계획·지도/감독 임무를 책임진다. 매우 작은 시에서 한 담당자가 여러 임무를 담당할 수 있다. 핀란드의 많은 시들이 작은 규모인데 보통 청소년업무는 연합된 활동부문 행정의 한 부분으로 주로, 체육, 또는 학교 부문, 때때로 문화 부문의 행정 부분이다. 작은 시에서 별도의 청소년의회는 드문 편이다. 큰 도시들과 큰 청소년업무기구들에서 임무의 전체 구조는 청소년업무 부분 영역들, 이외 지도감독을 여러 다른 등급 간 구별화할 수 있다.

시에서 가장 일반적인 임무 명칭들로는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비서, 교구에서는 종종 청소년업무지도자와 책임청소년업무지도자가 쓰인다. 시에서 직원의 전통적 직함은 청소년비서이며 작은 도시들에서는 종종 연합 임무 성격을 띠는 여가 비서라는 (체육과 청소년업무) 명칭이 있다. 때때로 청소년업무 직원이 세 활동 부문을 담당하기도 한다. 작은 교구들에서 (핀란드의 대부분 교구들이 소규모임) 청소년업무는 종종 온전한 교육업무에, 어린이에서 젊은 성년으로 성장에 초점이 맞춰진다. 큰 도시들은 대개 청소년활동지도자 공직이 있고, 큰 도시들의 교구들이나 교구 연합에서도 예를 들면 청소년업무지도자 공직이 있다. 기구들의 청소년업무 직함에 대한 포괄적 자료는 없다. 그러나 같은 종류의 논리와 같은 전통을 준수한다. 민간단체에서는 대표자 업무와 함께 특히 자발적 활동 부분에서는 지원과 조율을 하는 연락인물의 (yhteyshenkilö-contact person) 의미가 강조된다.<sup>39)</sup>

지역 정부 개편과 함께 이전의 지방정부가 없어지고 이 지방정부의 활동이 경제개발·교통·환경센터인 ELY-센터로 옮겨지면서 또 다른 새 기구로 6개의 지역정부처가 (Aluehallintovirasto - Regional State Administrative Agencies) 생겼는데, 동시에 지방정부들과 함께 활동한 지역 청소년협의회가 없어졌다. 지역 행정 구조에 이러한 변화가 있었으나 지역정부 청소년활동에서 주목할만한 변경 사항들은 없었다. ELY-센터들은 시, 기구/단체들의 청소년업무에 이익이 되도록 지역의 재정 지원을 점점, 평가, 공지, 승인하며 개발업무를 지원한다. ELY-센터에서 가장 일반적인 관련 직함은 문화/교양/시민 활동 감사자와 (sivistystoimen tarkastaja) 청소년활동계획자 (suunnittelija)이다.

청소년업무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제정법에 따른 청소년업무서비스기구들 그룹과 청소년업무의

39) 출처 - [nam.humak.fi/artikkelit/nuorisotyön-rakenne-suomessa](http://nam.humak.fi/artikkelit/nuorisotyön-rakenne-suomessa)

여러 다른 부문과 활동들을 대표하는 활동기구들이 초점화된 활동부문 재정 지원 대상이 되었다. 2010년 가을 교육문화부가 청소년업무의 국가서비스 구조에 대해 원칙 결정을 내렸고 13개 활동지들이 청소년업무의 국가서비스개발센터들로 임명되었다. 또한 큰 도시들의 청소년업무 협력 개발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정착되기 시작했다.

핀란드에서 청소년관련 기구/단체들의 그룹은 다양하다. 많은 큰 기구들은 현지 협회들, 산하기구/조직들과 국가센터기구/조직을 포함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개 각 등급의 기구/조직은 독립적인 등록된 협회들이다. 보통 현지 협회는 한 마을, 시, 또는 도시의 한 구역에서 기능한다. 산하기구/조직들의 활동영역은 좀 차이가 있다. 도시, 이웃 시들, 소도시연합구역, 광역시 또는 더 넓은 지역을 포함하기도 한다. 많은 기구/조직들의 구조가 균일하지 않으며 기구/조직들이 현지, 지역 또는 전국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sup>40)</sup>

## 5. 청소년정책의 주요 이슈

청소년정책의 실현은 수십년 동안 여러 난관에 부딪쳤는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실현 의무의 강제성 부족과 정책 대상 초점화 부족, 그리고 청소년정책의 다른 프로그램들, 계획 부문들과 중복이었다. 여러 문제점들 관점에서 볼 때 2007년부터 실현된 청소년정책은 (2007-2011) 여러모로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정확한 명칭으로 아동&청소년정책개발프로그램은 청소년법이 (청소년법 72/2006)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의 개발프로그램으로 확립되었으며 정부 임기가 바뀌는 4년 간격으로 입안된다. 정부는 지역 정부와 시 청소년정책 업무를 고려하여 국가 청소년정책 목표들과 방향들을 결정해야 한다. 개발프로그램은 교육문화부가 이 외 정부 부처들과 협력하여 준비한다. 부처 간 협력은 사회보장부, 노동부, 환경부, 그리고 필요하면 청소년부문에서 중심 활동을 하는 부서들과 함께 이루어진다. 또한 준비 과정에서 청소년업무와 청소년정책의 중심 관련기구/관련자들의 진술을 수집, 수렴해야 한다. 교육문화부가 국가 차원에서 여러 다른 부처, 부서, 관련기구들과 함께 청소년정책을 하나로 조정/조율하는 책임진다.

아동&청소년정책 2012-2015 개발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우선 프로그램 준비에 정부프로그램의 전략적 실행계획과 선두 프로젝트들이 영향을 미쳤다. 정책 기반 결정에 또한 유럽연합, 교육문화부,

---

40) 출처 - [nam.humak.fi/artikkelit/nuorisotyon-rakenne-suomessa#Hallintorakenne](http://nam.humak.fi/artikkelit/nuorisotyon-rakenne-suomessa#Hallintorakenne)

기타 부서들의 아동·청소년 관련 개발프로그램과 전략들이 영향을 미쳤다. 아동·청소년정책 2012-2015 개발프로그램에 따르면 현 시점 사회적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정책의 관심은 이들 삶의 세 부분, 참여, 동등함 실현, 일상 관리/통제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서 동등함은 법 앞의 형식적 평등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동등함 증진을 위한 하나의 부분 대책으로 아동·청소년이 겪게 되는 소외/고립 상태에 관여를 들 수 있다. 프로그램에서 일상 관리/통제는 각 개인은 - 어린이 또는 청소년의 성장 단계를 고려하면서 - 자신의 삶, 경제, 정신적 복지에 대해 책임질 수 있음을 뜻한다.

개발프로그램의 전략적 목표들과 전체적 활동대책들은 다음과 같다:

- 참여 증진 전략 목표

1. 아동과 청소년들이 적극적이고 공동의 책임을 질 줄 아는 시민으로 성장한다.
2. 아동과 청소년들은 동등하게 문화, 체육, 여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3. 청년 고용률이 향상된다.

- 동등함 증진 위한 전략 목표

1. 동등함이 실현된다 (인종주의, 성별 간 격리 타파, 지역적 동등 비교 가능)
2.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와 기회들 주어진다.

- 일상 설계 관찰, 감독 관련 전략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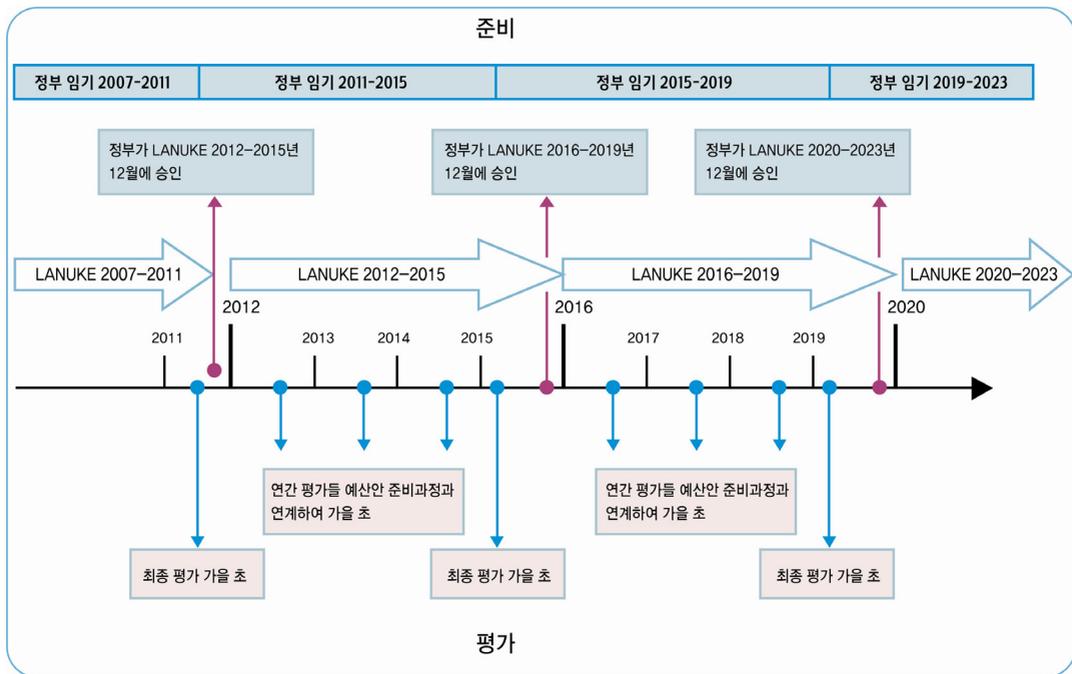
1. 청소년들이 독립적으로 거주, 생활할 기회가 있다.
2. 모든 아동과 청소년들은 배경과 상관 없이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다.
3. 사전예방 활동으로 아동과 청소년 복지와 건강 관리를 한다.<sup>41)</sup>

- 공무원들 간 협력 강화 전략 목표

1. 아동, 청소년, 가족 사안을 효과적으로, 바람직한 협력을 통해 다룬다.

---

41) 출처 - [www.minedu.fi/OPM/Julkaisut/2012/Lapsi-ja\\_nuorisopolitiikan\\_kehittamisohjelma\\_2012\\_2015](http://www.minedu.fi/OPM/Julkaisut/2012/Lapsi-ja_nuorisopolitiikan_kehittamisohjelma_2012_2015)



(Valmistelu-준비, Vaalikausi 선거 시즌 / 정부 임기, 위 파란 네모 칸 - 정부가 Lanuke (연도) 12월에 승인  
 아래 분홍 네모 칸 - 최종 평가 가을 초, 연간 평가들 예산안 준비과정과 연계하여 가을 초, Arviointi-평가, 최종평가 1월)  
 <그림 5> 아동&청소년정책 개발프로그램 Lanuke 입안 계획  
 (www.minedu.fi/OPM/Julkaisut/2012/liitteet/OKM06.pdf)

핀란드의 교육과 청소년정책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문제의 ‘사전예방’이다. 핀란드에서 학교 간 격차가 커지고 있고, 부모님의 학력이나 재력이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에 점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핀란드 정부와 교육부는 이러한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협하는 현 상황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교육 분야 정부프로그램에서 부모님 재력이나 학력 여부, 거주 장소에 상관없이 품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어려운 여건에 처한 학교들의 구체적 지원 정책들을 입안했다. 공식 명칭으로는 교육적 평등 증진을 위한 정부프로그램이다. 또한 교육&연구 개발계획에서 2020년까지 어린이와 청소년, 어른들의 여러 다른 배경으로 인한 교육 참여와 교육 이수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정부 프로그램은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제안들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관계자 진술 수렴과 함께 실무그룹은 유아교육부터 성인교육 까지 모든 교육 등급에서 교육적 기회 균등 증진을 위한 35개 방안들을 제안했고 이번 정부 임기 동안 여러 재정 지원이 이루어진다.<sup>42)</sup>

금년에 국가 청소년정책 일환으로 공식적으로 도입된 청소년/청년보장 프로그램 Nuorisotakuu도 (Youth guarantee) 핀란드 정부의 문제의 사전예방 원칙에 기초한 프로그램이며 이를 통해 문제 청소년/청년들 증가 방지로 미래의 사회적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한다. Nuorisotakuu는 소외/고립된 만 30세 미만 청소년/청년 대상이며 이들에게 직장, 실습 장소, 학교, 작업장, 또는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 장소를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만 18세 이상 실업자로 등록된 청년들에게 실업 기간 3개월이 지나면 신속히 제공되어야 한다. Nuorisotakuu에 교육 보장, 청년 대상 능력 프로그램, 청소년/청년들의 작업장 활동, 방황하는 청소년/청년들을 직접 찾고 지원하는 찾아가는 청소년/청년 업무가 포함된다.<sup>43)</sup>

핀란드 교육정책의 최우선 원칙인 기회균등은 핀란드 청소년정책에서도 청소년들 간 동등함 실현 목표와도 연관된다. 핀란드 청소년정책과 교육정책의 중요한 이슈들은 항상 이 정책들의 목표 달성 여부와 관계된다. 부모님의 재력 여부, 어느 지역 거주 여부, 성별과 상관없이 청소년들이 최소한 하나의 취미 활동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시가 여러모로 지원 노력을 하고 있으며 목표들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으면 이슈가 되며, 이 목표들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여러 방안도 이슈가 된다. 인구가 매우 적고 자원이 부족한 핀란드는 단 한 명의 어린이도, 청소년도 잃을 여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미 학교의 확립된 직원인 특수교사, 심리사, 사회복지사 등의 인력을 더 확충하려 하고 있다. 특수교사는 단지 학습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청소년들의 공부를 직접적으로 돕고 또한 대화를 통해 건강한 성장도 간접적으로 돕는다. 핀란드 정부는 세속적 성공을 우선시하기보다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해 '좋은 삶' 을 누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

42) 또한 핀란드 학교는 중학교 졸업이 어려워진 학생들,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 점수로도 입학 가능한 직업고 교육부문에 합격이 힘든 학생들을 위한 10학년 학급 제도가 있으며, 학교 수업 방식에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JOPO 학급제도 (Joustava perusopetus - 융통적 종합교육) 있다. 이 JOPO학급에 청소년지도자/상담자가 담당 교사와 함께 협력하여 소그룹 학습 활동, 체험 학습 활동 등을 계획 주관하여 학생들의 중학교 졸업과 고등학교 진학을 돕는다. 이 두 학급이 모든 학교에 항상 있는 것은 아니고 학교의 필요에 따라 학급을 만들 수 있다. 이 외에도 핀란드 학교가 기본적으로 특수교사 (초중고), 학업/진로지도교사 (중고등학교), 심리상담사 (중고), 사회복지사를(중고) 두고 있어 핀란드 청소년들의 공부 뿐만 아니라 건강한 정서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출처 - [www.minedu.fi/OPM/Tiedotteet/2012/12/tasaarvo.html?lang=fi](http://www.minedu.fi/OPM/Tiedotteet/2012/12/tasaarvo.html?lang=fi)

43) 출처 - [www.minedu.fi/OPM/Verkkouutiset/2012/08/nuorisotakuu.html](http://www.minedu.fi/OPM/Verkkouutiset/2012/08/nuorisotakuu.html)

## 6. 청소년정책의 시사점

핀란드의 교육정책은 지난 30년 동안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같은 방향을 걸어왔고 정부와 교육문화부는 앞으로도 이의 실현을 위해 매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청소년정책도 1960-70년대의 기본 철학, 기본 원칙에 큰 변화가 없으며 이의 실현을 위해 지금도 노력 중이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 정책 개발 등이 있겠지만 기본 목표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참여 증진, 건강한 개인으로 그리고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 지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한 나라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어떻게 대하는냐는 그 나라의 중요한 단면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법제화하여 이들을 독립적인 작은 시민으로 존중하는 것은 한국 정부에 시사점이 크다. 한국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은 작은 시민으로 존중되기보다는 통제와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는 것 같다. 이들의 의견과 제안은 주기적으로 수렴되지 않으며 가끔 설문조사를 해도 이 결과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거나 정책 입안에 참고하는 경우가 드물다. 청소년들이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이 가장 말할 권리가 있는 교육과 청소년정책에 대한 의견들을 무시하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에 ‘청소년인권운동가’가 존재하는 사실, 이들이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은 한국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과 별다르지 않다. 이들의 표현 자유 보장, 집회 자유 보장, 신체적, 정신적 침해로부터 보호 등이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

## 출 처

교육문화부 청소년부문 [www.minedu.fi](http://www.minedu.fi)

[www.minedu.fi/OPM/Nuoriso/nuorisopolitiikka/hallinto\\_ja\\_toimijat/?lang=fi](http://www.minedu.fi/OPM/Nuoriso/nuorisopolitiikka/hallinto_ja_toimijat/?lang=fi)

[www.minedu.fi/OPM/Nuoriso/nuorisopolitiikka/Kehittamisohjelma\\_2012-2015/?lang=fi](http://www.minedu.fi/OPM/Nuoriso/nuorisopolitiikka/Kehittamisohjelma_2012-2015/?lang=fi)

[www.minedu.fi/OPM/Nuoriso/nuorisotyoen\\_kohteet\\_ja\\_rahoytus/?lang=fi](http://www.minedu.fi/OPM/Nuoriso/nuorisotyoen_kohteet_ja_rahoytus/?lang=fi)

[www.minedu.fi/OPM/Nuoriso/nuorisoasiain\\_neuvottelukunta/?lang=fi](http://www.minedu.fi/OPM/Nuoriso/nuorisoasiain_neuvottelukunta/?lang=fi)

[www.minedu.fi/export/sites/default/OPM/Nuoriso/Liitteet/NUORISOTYx\\_JA\\_-POLITIikka.pdf](http://www.minedu.fi/export/sites/default/OPM/Nuoriso/Liitteet/NUORISOTYx_JA_-POLITIikka.pdf)

[www.minedu.fi/OPM/Julkaisut/2012/Lapsi- ja\\_nuorisopolitiikan\\_kehittamisohjelma\\_2012\\_2015](http://www.minedu.fi/OPM/Julkaisut/2012/Lapsi- ja_nuorisopolitiikan_kehittamisohjelma_2012_2015)

[www.minedu.fi/OPM/Nuoriso/nuorisopolitiikka/Kehittamisohjelma\\_2012-2015](http://www.minedu.fi/OPM/Nuoriso/nuorisopolitiikka/Kehittamisohjelma_2012-2015)

[www.minedu.fi/OPM/Julkaisut/2012/liitteet/OKM06.pdf](http://www.minedu.fi/OPM/Julkaisut/2012/liitteet/OKM06.pdf)

[www.minedu.fi/OPM/Tiedotteet/2012/12/tasaarvo.html?lang=fi](http://www.minedu.fi/OPM/Tiedotteet/2012/12/tasaarvo.html?lang=fi)

[www.minedu.fi/OPM/Verkkouutiset/2012/08/nuorisotakuu.html](http://www.minedu.fi/OPM/Verkkouutiset/2012/08/nuorisotakuu.html)

[www.minedu.fi/OPM/Tiedotteet/2013/05/nuorisotakuu\\_arhinmaki.html?lang=fi](http://www.minedu.fi/OPM/Tiedotteet/2013/05/nuorisotakuu_arhinmaki.html?lang=fi)

인문직업대학 HUMAK–Humanistisen ammattikorkeakoulu, [nam.humak.fi](http://nam.humak.fi)

[nam.humak.fi/artikkelit/nuorisotyön-rakenne-suomessa](http://nam.humak.fi/artikkelit/nuorisotyön-rakenne-suomessa)

[nam.humak.fi/artikkelit/nuorisotyön-rakenne-suomessa-virallinen-asema-0](http://nam.humak.fi/artikkelit/nuorisotyön-rakenne-suomessa-virallinen-asema-0)

[nam.humak.fi/artikkelit/nuorisotyön-rakenne-suomessa#Hallintorakenne](http://nam.humak.fi/artikkelit/nuorisotyön-rakenne-suomessa#Hallintorakenne)

[nam.humak.fi/artikkelit/lapsi-ja-nuorisopolitiikka-0](http://nam.humak.fi/artikkelit/lapsi-ja-nuorisopolitiikka-0)

국가 청소년센터 [www.snk.fi/fi/keskukset](http://www.snk.fi/fi/keskukset)

국가교육청 [www.oph.fi](http://www.oph.fi)

[www.oph.fi/koulutus\\_ja\\_tutkinnot](http://www.oph.fi/koulutus_ja_tutkinnot)

시연맹 홈페이지 [Kunnat.net](http://Kunnat.net)

[www.kunnat.net/fi/asiantuntijapalvelut/opeku/kulti/nuoriso/nuorisolaki/Sivut/default.aspx](http://www.kunnat.net/fi/asiantuntijapalvelut/opeku/kulti/nuoriso/nuorisolaki/Sivut/default.aspx)

[www.kunnat.net/fi/asiantuntijapalvelut/opeku/kulti/Sivut/default.aspx](http://www.kunnat.net/fi/asiantuntijapalvelut/opeku/kulti/Sivut/default.aspx)

청소년법 (2006) [www.finlex.fi/fi/laki/ajantasa/2006/20060072](http://www.finlex.fi/fi/laki/ajantasa/2006/20060072)

아동보호법 (2007) [www.finlex.fi/fi/laki/ajantasa/2007/20070417](http://www.finlex.fi/fi/laki/ajantasa/2007/20070417)

시제정법 (1995) [www.finlex.fi/fi/laki/ajantasa/1995/19950365](http://www.finlex.fi/fi/laki/ajantasa/1995/19950365)

ELY-센터 관련법 (2009) [www.finlex.fi/fi/laki/ajantasa/2009/20090897](http://www.finlex.fi/fi/laki/ajantasa/2009/20090897)

따뻬레시 홈페이지 [www.tampere.fi](http://www.tampere.fi)

[www.nuortentampere.fi/nuoret/nuorisotila/](http://www.nuortentampere.fi/nuoret/nuorisotila/)

하멘린나시 홈페이지 [www.hameenlinna.fi](http://www.hameenlinna.fi)

[www.hameenlinna.fi/Nuoret/Nuorten-Hameenlinna](http://www.hameenlinna.fi/Nuoret/Nuorten-Hameenlinna)

발게아코스끼시 홈페이지 [www.valkeakoski.fi](http://www.valkeakoski.fi)

[www.valkeakoski.fi/portal/suomi/kulttuuri\\_ja\\_vapaa-aika/nuoret/nuorisotilat](http://www.valkeakoski.fi/portal/suomi/kulttuuri_ja_vapaa-aika/nuoret/nuorisotilat)

Avartti 홈페이지 [www.avartti.fi](http://www.avartti.fi)

[www.avartti.fi/tietoa-avartista/](http://www.avartti.fi/tietoa-avartista/)

[www.avartti.fi/toiminta/](http://www.avartti.fi/toiminta/)

Taidekaari 홈페이지 [www.tampere.fi/taidekaari](http://www.tampere.fi/taidekaari)

[www.tampere.fi/taidekaari/esittely.html](http://www.tampere.fi/taidekaari/esittely.html)

Pii Poo 홈페이지 [www.lastenpiipoo.fi](http://www.lastenpiipoo.fi)

# 3

## 스웨덴의 청소년활동정책

최연혁

남스톡홀름대학교 교수



# 스웨덴의 청소년활동정책

최연혁(남스톡홀름대학교 교수)

## 1. 청소년정책의 역사사회적 배경

스웨덴의 청소년정책은 1954년 청소년관련 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을 시작하면서부터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2차대전 이후 청소년들의 교육과 진로에 대한 큰 틀에서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특정 연령대 청소년들의 다양한 이슈들, 즉 청소년 범죄, 취업, 질병, 정서발달, 친구-이성관계 및 가족관계, 문화 및 체육활동, 여가 및 취미 등이 협소한 교육정책 하에서 다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1956년 부터는 교육부 활동에 청소년부분을 추가해 예산집행사항으로 포함시켰다. 20년이 지난 1986년 들어 처음으로 청소년 정책분야를 총괄하는 책임장관이 임명되기 시작하면서 청소년 정책이 정부의 정책분야로 편입되기 시작했다 (Skr. 2009/10:53, 5쪽). 이 때부터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부서가 만들어졌고, 청소년 정책입안, 예산집행, 감독 등 정부 내에서 이 부분의 정책영역을 조정하고 취합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최초 청소년정책 입법안인 Proposition 1993/94:135가 1994년 의회에 제출되었고, 이 법안에 따라 청소년 정책위원회 (Ungdomsstyrelsen, Swedish National Board for Youth Affairs)가 설립되었다.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관련법 (SFS 2007:1140)에 기록되어 있다. 청소년 정책위원회는 교육부 산하에 소속되어 청소년정책의 입안, 연구, 및 청소년 단체의 기금배분 등 종합조정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초까지만 해도 청소년정책은 주로 문화, 체육, 여가, 취미 등의 정책분야에 국한되고 있었고, 1990년대 말부터는 참여 및 민주주의, 사회적 공평성, 그리고 취업 문제로 확대 발전되었으며 1998년 두번째로 입안된 청소년 정책법안 (Proposition 1998/99:115)을 통해 보다 구체화 되었다. 2000년대 초에는 세 번째 정책지침서로 채택된 ” 청소년의 선택권” 이라는 제목의 입법안 (Proposition 2004/05:2, Betänkande 2004/05:KrU2, Regeringens skrivelse 2004/05:94)은 사민당 정권 하에서 입안되어 2006년까지 청소년 정책의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었다.

2006년 9월 선거 이후 4개 우익정당 등이 참가한 연립정권이 출범하면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평등성과 복지에 초점을 둔 청소년 정책이었다면, 2006년 이후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들의 선택의 권리 및 자유, 그리고 책임성을 강조하는 정책기조로 바뀌었다. 청소년정책의 새로운 전략의 기초는 2008년 정책법안 (Proposition 2007/08:1, Betänkande 2007/08:KrU1, Regeringens skrivelse 2007/08:58)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입법안은 청소년의 정책 영역을 고등학교 및 대학교육, 사회복지, 민주주의 참여 및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경제적 자립과 책임성 등으로 확대해 실질적으로 경제적 주체로서 의무교육 이후 독립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는 능력, 투표참여 등 민주적 시민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2008년의 입법안은 청소년정책의 세부 실천사항도 담고 있어 우익정부의 중요한 정책골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2009년 채택된 정책백서인 Regeringens skrivelse 2009/10:53는 청소년 정책의 미래전략을 담고 있다. 이 미래 전략에는 청소년의 건강, 실업문제, 정치참여, 문화 및 체육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현재 13세부터 25세 청소년 들이 처해 있는 현실적 문제와 이에 대한 미래의 예측과 정책 방향 등이 잘 기록되어 있다. 이 미래예측보고서는 정치 및 사회분야의 다양한 유관기관이 참가해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제안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고 하겠다.

## 2. 청소년업무의 개념

1990년대까지 스웨덴에서 사용되고 있는 청소년의 개념은 16세에서 24세까지의 고등학생 및 청년층을 포함한다 (Proposition 1993/94:135). 하지만 2004년 청소년 정책법안은 범위를 넓혀 초등학교 7학년 (중학교 1학년)인 13세에서 25세까지를 포함하는 연령층으로 확대규정하고 있다 (Proposition 2004/05:2). 하지만 현재 스웨덴의 청소년 정책은 중학생부터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층을 주 정책대상으로 대학 졸업 후 30대 이전까지의 직업을 선택하는 기간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엄밀한 정의차원에서 청소년이란 13세에서 25세까지를 포함하지만, 광의의 개념으로는 청년실업, 임금정책, 청년주택난 해소 등의 경제, 노동, 주택정책, 그리고 정치참여, 투표 등 민주주의 문제, 청년출산 및 육아 등과 연관된 복지문제 등을 포함하는 29세까지의 연령대까지를 포함하여 구분하기도 한다.

### 3. 청소년정책 현황

#### 3.1 법제 현황

스웨덴 학교법은 1985년 개혁사항이 반영된 최근의 학교법 Skollagen 2010:800이 발효되어 있다. 학교법은 제 4장에서 학교교육의 목적을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학교교육은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지식과 가치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 학교교육이 모든 학생들의 아동 및 학생들의 지적발전과 일생을 통해 배우는 자세를 갖추도록 한다. 인권에 대한 존중과 스웨덴 전체 사회가 기초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에 대한 교육을 가르치도록 한다.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들의 개별적 필요성에 부응하도록 지원한다. 학생들이 재능과 능력이 발전하는 한계영역까지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극을 주도록 한다. 학교교육에서 추구하는 하는 중요한 점은 학생들이 각기 다른 조건과 환경, 능력 및 재능이 있다는 점을 상기하는 일이다.

학교 교육의 또 다른 목적은 학생의 가정과 협조하에 적극적이고, 창조적이면 능력과 책임이 함께 숨쉬는 개인 그리고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전인적 발전을 추구하는데 있다” .

따라서 스웨덴의 학교교육은 개인의 가치 뿐 아니라, 그리고 인권, 자유, 평등이라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치교육까지 담당하고, 개인의 재능과 관심 그리고 역량을 개발하는 전인교육임을 명시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학교현장에서 실천될 정부지침으로 중앙교육청의 학업지침서 (Läroplan, 이하 지침서)를 들 수 있다. 지침서는 탁아소에서 고등학교까지 5개로 구분되어 나누어져 있다.

- Lgr11 초중등학교, 6세 과정(0학년) 및 방과후 학교교육지침서
- Lgrsäl1 특수학교 교육지침서
- Lspec11 특별학교 교육지침서
- Lsam11 소수민족 사미족 교육지침서

유치원 교육지침서 (Lpfö 98)는 유치원 학업지침서에 관한 규정 (Förordning (SKOLFS 1998:16) om läroplan för förskolan)에 따른 것으로 1998년 제정된 것을 다시 2010년에 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전체 16페이지로 구성된 유치원 교육지침서는 유치원의 임무와 기본가치에 대한 1장과 규범과 가치, 성장과 학습, 어린이의 참여와 영향력, 유치원과 가정, 유치원-학교-방과후과정의 협조, 점검-평가-발전, 유치원장의 책임 등을 담은 2장으로 총 16쪽에 달한다. 이 교육지침은 유치원 교육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교육청에서 특별한 감독과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초중등학교 교육지침서 (Lgr11)는 초등학교, 6세교육 및 방과후 학교에 관한 규정 (Förordning (SKOLFS 2010:37) om läroplan för grundskolan, förskoleklassen och fritidshemmet)과 초등학교 필수과정의 지식적 요구사항에 관한 교육청규약 (Skolverkets föreskrifter (SKOLFS 2011:19) om kunskapskrav för grundskolans ämnen)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초중등학교 및 여가, 문화 활동을 담은 방과후 학교 규정까지 담고 있다. 이 지침서는 학교의 기본적 가치와 임무, 학교교육의 목적과 방향성, 그리고 각 과목마다 회화, 영어, 가정 및 소비자지식과정, 체육과 건강, 산수, 현대언어, 음악, 모국어, 생물, 물리, 화학, 인문지리, 역사, 종교, 사회, 공작제작, 스웨덴어, 제2외국어로서의 스웨덴어, 수화, 기술 등의 개별 과목에 대한 학문적 기술, 과목의 목적, 각 학년별 이수내용, 성적등급 및 기준 등을 상세히 담고 있다.

특수학교 교육지침서 (Lgrsä11)는 특수학교 지침서 규정 (Förordning (SKOLFS 2010:255) om läroplan för grundsärskolan)에 입각한 것으로 1장 특수학교의 기본적 가치와 임무, 2장 특수학교교육의 목적과 방향성, 3장 과목 서술, 즉 회화, 영어, 가정 및 소비자지식과정, 체육과 건강, 산수, 모국어, 음악, 자연계과목 (생물, 물리, 화학), 사회계열과목 (인문지리, 역사, 종교, 사회), 공작제작, 스웨덴어, 제2외국어로서의 스웨덴어, 기술, 미학, 소통, 인체기능학, 일과활동, 현상인식 등의 개별과목에 대한 학문적 기술, 과목의 목적, 각 학년별 이수내용, 성적등급 및 기준 등을 담고 있다. 특별히 신체의 일부 기능장애를 가진 지체부자유 학생들을 위한 학교이기 때문에 교수과목도 일반과목과 함께 특수 목적의 과목을 신설해 수업하고 있다. 이 지침서는 양적으로 166쪽에 이른다.

특별학교 교육지침서 (Lspec11)는 다음의 규정에 근거를 둔다.

- Förordning (SKOLFS 2010:250) om läroplan för specialskolan samt för förskoleklassen och fritidshemmet i vissa fall, 특수학교 및 6세교육 및 방과후 학교교육지침서 규정
- Förordning (SKOLFS 2010:37) om läroplan för grundskolan, förskoleklassen och fritidshemmet (Del 3 kursplaner), 초중등학교, 6세 과정(0학년) 및 방과후 학교교육지침서 규정
- Skolverkets föreskrifter (SKOLFS 2011:56) om kursplaner för vissa ämnen i

specialskolan, 특수학교의 학교교육지침서에 관한 중앙교육청 규약

- Skolverkets föreskrifter (SKOLFS 2011:66) om kursplaner för vissa ämnen i specialskolan för döva eller hörselskadade elever med utvecklingsstörning. 언어능력장애인, 지적발달장애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를 위한 이수과목을 위한 교육지침서에 관한 중앙교육청 규약
- Skolverkets föreskrifter (SKOLFS 2011:19) om kunskapskrav för grundskolans ämnen. 초등학교 과정 이수과목에 대한 지식충족 요건에 관한 중앙교육청 규약
- Skolverkets föreskrifter (SKOLFS 2011:57) om kunskapskrav för vissa ämnen i specialskolan. 특수 과목의 지식충족 요건에 관한 중앙교육청 규약
- Skolverkets föreskrifter (SKOLFS 2011:67) om kunskapskrav för vissa ämnen i specialskolan för döva eller hörselskadade elever med utvecklingsstörning. 언어능력장애인, 지적발달장애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를 위한 지식충족에 관한 중앙교육청 규약

406쪽에 이르는 이 지침서는 1장 특별학교의 기본적 가치와 임무, 2장 특별학교교육의 목적과 방향성, 3장 과목 서술 마다 회화, 영어, 가정 및 소비자지식과정, 체육과 건강, 산수, 현대언어, 모국어, 음악, 생물, 물리, 화학, 인문지리, 역사, 종교, 사회, 공작제작, 수화, 기술, 청각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영어, 청각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대언어, 몸의 기능과 드라마, 청각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웨덴어, 지적발달장애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어, 장애인의 소통 등의 개별 과목에 대한 학문적 기술, 과목의 목적, 각 학년별 이수내용, 성적등급 및 기준 등을 담고 있다. 특별히 신체의 일부 기능장애를 가진 지체부자유 학생들을 위한 학교이기 때문에 교수과목도 일반과목과 함께 특수 목적의 과목을 신설해 수업하고 있다.

Lsam11 소수민족 사미족 교육지침서는 사미학교, 6세 과정(0학년) 및 방과후 학교교육지침서에 관한 규정 (Förordning (SKOLFS 2010:251) om läroplan för sameskolan, förskoleklassen och fritidshemmet i vissa fall) 에 근거한다. 310쪽에 달하는 문서로 다른 교육지침서와 다른 점은 특별히 없으며 소수민족의 권리사항으로 모국어 교육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동시에 스웨덴 교육의 특징인 민주적 시민과 책임 및 의무가 동등하게 중시되는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고등학교 지침서 (Läroplan för gymnasieskolan)는 고등학교 학업지침서에 대한 규정 (Förordning (SKOLFS 2011:144) om läroplan för gymnasieskolan), 고등학교 국가 프로그램의 평가목적에 관한 규정 (Förordning (SKOLFS 2010:14) om examensmål för gymnasieskolans

nationella program), 그리고 고등학교 공통필수 이수과목의 수업과정에 관한 규정 (Förordning (SKOLFS 2010:261) om ämnesplaner för de gymnasiegemensamma ämnena) 에 근거하여 중앙교육청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2011년 채택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1장 학교의 기본가치와 임무, 2장 포괄적 목표와 방향, 3장 국가프로그램의 평가목적, 4장 고등학교 공통필수 이수과목을 담은 182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및 직업고등학교 선택계열은 다음으로 나누어진다.

- BARN- OCH FRITIDSPROGRAMMET 아동 및 여가전공 계열
- BYGG- OCH ANLÄGGNINGSPROGRAMMET 건축 및 시설전공 계열
- EL- OCH ENERGIPROGRAMMET 전기 및 에너지전공계열
- FORDONS- OCH TRANSPORTPROGRAMMET 운송 및 교통전공계열
- HANDELS- OCH ADMINISTRATIONSPROGRAMMET 상업 및 행정전공계열
- HANTVERKSPROGRAMMET 목공전공계열
- HOTELL- OCH TURISMPROGRAMMET 호텔관광 전공계열
- INDUSTRITEKNISKA PROGRAMMET 산업기술 전공계열
- NATURBRUKSPROGRAMMET 농산림어업 전공계열
- RESTAURANG- OCH LIVSMEDELSPROGRAMMET 요식업 및 생필품 전공계열
- VVS- OCH FASTIGHETSPROGRAMMET 배관 및 주택관리 전공계열
- VTPD- OCH OMSORGSPROGRAMMET 보건 및 건강 전공계열
- EKONOMIPROGRAMMET 경제 전공계열
- ESTETISKA PROGRAMMET 미학 전공계열
- HUMANISTISKA PROGRAMMET 인문 전공계열
- NATURVETENSKAPSPROGRAMMET 자연 전공계열
- SAMHÄLLSVETENSKAPSPROGRAMMET 사회 전공계열
- TEKNIKPROGRAMMET 기술 전공계열

모든 전공계열 공동 필수이수 과정으로 영어, 역사, 체육 및 건강, 자연, 종교, 사회, 스웨덴어, 제2외국어로서의 스웨덴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과목내용 소개 및 성적산출 근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초중등학교 노동현장 체험학습 (PRAO)과 고등학교 현에 관한 규정으로 노동환경청

(Arbetsmiljöverket) 에서 제정한 학생체험학습 규정집 (Arbetsmiljöverkets författningssamling)은 노동환경법 (Arbetsmiljölagen 1977:1160)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고용주는 작업환경이 안전사고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생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실습생을 고용하는 기업은 어린학생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노동강도를 요구할 수 없고, 신체적 조건에 맞는 작업환경에 배치할 의무를 가진다. 노동법의 규정에 따라 주당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고, 근무 시간은 야간근무를 제외한 06.00시부터 20.00까지 자유롭게 하루 8시간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사고에 대비해 모든 체험실습학생들을 위해 해당 학교가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 3.2 청소년 관련 시설 및 인구 현황

방과후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여가활용과 맞벌이 부모의 퇴근시간까지 돌보아주는 역할을 한다. 방과 후 프로그램은 주로 문화, 체육, 자연활동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 문화 및 체육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협의회 (Sveriges Kommun och Landsting, SKL)의 2006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여가 및 체육, 문화시설의 30퍼센트가 지역의 문화 및 체육협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Regerings Skrivelse 2009/10:53, 31쪽). 2006년 기준으로 1500여개의 청소년 시설 (체육, 미술실, 음악연습장, 자연학습 체험장)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이 체육관련 시설로 350여개가 확충되어 있다. 스웨덴의 세계적인 테니스선수, 골프 및 승마선수, 아이스하키 선수 등은 이런 시설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진행되는 집중적 교육프로그램의 성과라는 점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이 얼마나 중요한 교육자원인지 짐작할 수 있다.

청소년 정책위원회는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문화 및 체육단체 등 사회단체들의 경제적 지원을 총괄하고 있다. 청소년 정책위원회에 배정되는 예산의 2/3가 청소년 관련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급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청소년의 여가 및 문화 활동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견지하고 있는지 짐작하게 한다.

역사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은 1930년대와 1940대 기간동안 저소득층 맞벌이 자녀들의 방과 후시간부터 부모퇴근시간까지 숙제도움, 놀이 등 간단한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는 시설로 시작되었으나, 1960년대 들어 맞벌이부부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보편적 아동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정착되면서 전체 아동으로 확대되었다. 1964년부터는 방과후 프로그램 특수교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기 시작했고, 70년대 이후 방과 후 아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 교육의 기회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로 이전보다 다양한 교육내용이

추가되기 시작했고, 연극, 합창, 축구 등의 단체활동 뿐 아니라, 개인의 재능과 관심영역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표 1> 방과후 과정 참가비율

	6-9세 아동	10-12세 아동
1975	5 (7-9세아동)	1
2006	78,3	11,3
2012	82,8	18,0

출처: 스웨덴 교육청 포털 <http://www.skolverket.se/statistik-och-analys/statistik/2.4329/2.4330/elever-och-grupper-i-fritidshem-15-oktober-2012-1>. 193456.2013-06-11자료.

방과후 과정의 참가비율은 1970년대까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다가 2000년대 들어 인다. 표 1에서 보여지듯이 7-9세 아동의 5퍼센트만이 방과후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10-12세 그룹은 1퍼센트의 아동만이 참가할 뿐이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여성의 사회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고 여성이 주로 시간제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가 하교하는 시간에 맞춰 퇴근하든가, 아니면 자녀 스스로가 집에서 소일하든가 친구들과 노는 등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같은 양상이 완전히 바뀌어 2006년에는 학교아동의 상당수가 방과후 과정에 참가하고 있다. 6-9세의 아동중 78,3퍼센트가 참가했고 10-12세 아동의 경우 11,3퍼센트 만이 참가하고 있다. 2012년에는 비중이 더욱 상승해 82,8퍼센트의 6-9세 아동이, 그리고 18퍼센트의 10-12세 아동이 참가하고 있다.

방과 후 과정에 참가하는 아동비율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크기에 따라 구분해 보면 대도시와 대도시근교 지역의 아동들이 농촌의 아이들보다 방과후 과정에 참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농촌지역의 여성이 농업이나 가사 등으로 집에 머무르는 비율이 높고 자율적으로 아이를 보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대로 대도시 및 출퇴근거리에 있는 대도시 근교의 경우 여성의 사회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맞벌이인 경우가 많아 학과후 과정까지 자녀를 맡기는 경향이 강하다.

<표 2> 방과 후 과정의 연령대별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참가학생비율 (2012)

기초지방자치단체 구분	학생비율									
	6 세	7 세	8 세	9 세	10 세	11 세	12 세	6-9 세	10-12 세	6-12 세
전체	84.0	86.4	84.5	76.0	33.8	14.2	5.4	82.8	18.0	56.2
중소도시	81.4	87.6	87.7	83.2	21.7	8.7	5.4	84.9	12.1	56.3
대도시 근교지역	89.7	92.3	91.4	86.8	41.4	19.3	6.1	90.1	22.8	63.1
3대 도시지역 (스톡홀름, 예테보리, 말뫼)	84.4	86.7	84.7	76.0	33.6	14.6	6.0	83.0	18.2	56.5
농어촌지역	77.3	76.2	68.7	51.3	24.4	10.5	4.3	68.1	13.2	44.0

출처: 스웨덴 교육청 포탈 <http://www.skolverket.se/statistik-och-analys/statistik/2.4329/2.4330/elever-och-grupper-i-fritidshem>  
-15-oktober-2012-1.193456,2013-06-11자료.

### 3.3 지도인력 양성 현황

방과후 프로그램은 6-12세까지의 초등학교 6학년생까지 제공된다. 1974년부터 방과후 프로그램 지도자를 정식 2년제 교육과정으로 개발해 양성하고 있다. 성인교육과정학교인 폴크훅스콜라(Folkhögskola)에서 전문 여가지도자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한 학기에 20학점씩 4학기 즉 2년교육과정으로 80학점을 이수하면 학위수여증이 발행된다. 1983년부터는 중앙교육청에서 학업지침서를 만들어 교육교과과정의 틀 속에서 지도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시작했다.

여가지도자의 교육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제공된다.

첫째, 학생들의 지식함양, 완성도, 가치기준 설정 등에 도움이 되게 하고 적극적 사고방식, 지도적 역할 및 분석과 과정의 분석을 용이하게 한다

둘째, 학교공부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발하게 하고 연구영역에도 관심이 생기게 한다. 교과과정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인간의 성장과 삶의 조건: 최소 10주과정
- 사회, 여가의 구조 및 여가노동: 최소 10주
- 지도자과정: 최소 10주
- 여가교육 방법론: 최소 10주
- 연구대상으로서의 여가: 최소 10주
- 직업으로서의 여가교사: 최소 20주

- 실습을 통한 학습: 최소 15주

재미있게 노는 학생들이 성취도가 높다는 인식으로 점차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과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시설이 각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로 확대되어 여가지도자 과정을 이수한 전문교사를 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국의 폴크훅스콜라에서 매년 350명 정도의 여가지도자가 졸업하며, 81퍼센트가 초중등학교의 방과후 과정의 담당교사로 채용된다. 그중 45퍼센트가 정규직 교사로 채용되고 나머지 36퍼센트는 비정규직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Folkhögskolor i samverkan, 2013: 2쪽).

### 3.4 대표적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 사례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서 몸으로 느끼면서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학습 과정을 학기 중에, 혹은 방학기간 동안 제공한다. 우선 학생들에게 노동의 가치와 경제적 자립심을 고취하기 위한 노동현장 체험학습 (PRAO), 그리고 학기중 부모를 떠나 직접 외부 캠프시설에서 자연을 체험하는 수업 등이 저렴하게 제공되어 자녀의 체험학습을 돕는다.

#### 3.4.1. 프라오 (PRAO)

##### 취지 및 목적

프라오는 노동시장체험 교육 (Praktisk arbetslivsorientering)의 약자로 이전 스웨덴 교육제도의 직업체험교육이었던 프뤼오 (Praktisk Yrkeslivsorientering, PRYO)를 대체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5학년부터 9학년까지 각급 학교장의 책임 하에 진행되며 학생이 직접 체험교육장의 섭외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기간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하루체험부터 최고 3-4주까지 체험학습을 허락한다.

학생들의 주거환경내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동네에 있는 우체국, 동사무소, 구청 등의 공공기관은 물론 크고 작은 마트, 혹은 시장, 다양한 상점에서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이 체험교육장을 찾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학부모들이 체험실습장을 섭외하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국내 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체험실습을 할 수 있어 해외에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부모, 혹은 외국이민자 가정 자녀 들은 외국에 나가 체험하는 경우도 많다.

## 아동의 안전

이렇게 다양한 체험장소를 대상으로 섭외하면서 어린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노동환경청 (Arbetsmiljöverket)에서는 프라오 체험학습에 관한 미성년자 노동환경규정 (AFS 2012:03)을 제정해 학교장에게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프라오 프로그램의 전체적 책임은 학교장과 책임교사인 학습 및 직업상담교사 (Studie- och yrkesvägledare, SYV)에 두고, 미성년 학생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노동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sup>44)</sup> 따라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확인은 하지 못하더라도 학부모를 통해 실습현장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등 사전에 노동강도, 노동시간, 노동환경 등의 다양한 정보에 대한 상호교환을 통해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등을 점검하게 한다.

그리고 철저히 노동법에 준한 노동준칙을 지키도록 체험학습을 제공하는 담당교사가 사용자측에 협조전을 띄우도록 하고 있다. 노동의 양과 질은 학생의 신체적 조건에 맞게 할당하도록 하고, 야간근무는 금지되어있다.

## 노동시장의 반응

노동시장의 양대산맥인 스웨덴 노총 (LO, Landsorganisationen)과 경영자 총연맹 (SN, Svenskt Näringsliv, 이전의 SAF, Svenska Arbetsgivarförningen)은 프라오가 학생들에게 중요한 노동현장을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학생자신에게는 장차 직업에 대한 막연한 꿈을 꾸는 것보다 어린나이부터 직접 현장에서 체험하게 함으로써 노동의 중요성 뿐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sup>45)</sup> 경영자 총연맹의 경우 프라오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21세 청년그룹 1000명에 대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해 얼마나 프로그램 참가가 직업결정에 도움이 되었는지, 일에대한 중요성을 인식했는지 평가하도록 할 결과, 조사 학생들의 94퍼센트가 프라오 프로그램에 참가했으며, 그중 81퍼센트가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었고, 77퍼센트의 참가자들이 시장경제 이해와 기업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sup>46)</sup>

44) 스웨덴 학교의 특징으로 각 학교마다 SVV 담당교사를 두게 하고 있는데, SV라는 직업은 대학4년의 학위증이 있는 교사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다. 학업 및 직업상담교육 과정 (Studie- och yrkesvägledarexamen)이 교육대학에서 제공되고 있다.

요즘은 코칭 (Coaching)이라는 직업영역으로 학생들의 직업선택 등을 도와주는 개인회사들이 많이 설립되고 있기도 하다.  
45) 특히 스웨덴 경영자 총연맹은 더욱 긍정적 평가를 내 놓고 있다. 시장경제의 중요한 노동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게 하고 새로운 직업의 창출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http://www.svensknaringsliv.se/skola/prao-viktigare-an-nagonsin\\_49677.html](http://www.svensknaringsliv.se/skola/prao-viktigare-an-nagonsin_49677.html).

46) 프라오 효용성에 대한 평가연구에 대해서는 [http://www.svensknaringsliv.se/skola/grundskolan/unga-ger-prao-och-praktik-mvg\\_13775.html](http://www.svensknaringsliv.se/skola/grundskolan/unga-ger-prao-och-praktik-mvg_13775.html)를 참조.

### 3.4.2. 초중등학교 자연체험학습 프로그램:

초중등 학급 학교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자연체험 캠프학교(Lägerskola)를 운영할 수 있다. 부모를 떠나 1-2일 통나무집 단체시설에서 야영을 하면서 자연을 체험하게 하는 수업방식이다. 자연체험 학교캠프 프로그램은 학기초 수업시간표를 학부모에게 배포할 때 사전정보를 제공해 학기중 진행될 다양한 프로그램을 미리 공지하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시간을 갖는다. 오랫동안 이동하는 학교캠프는 배제하고, 근교 1-2시간이내에 위치해 있는 야영시설을 갖춘 캠핑장을 선택해 사용한다. 사전에 학교캠프 장소를 미리 학부모에게 공개해 알려주기 때문에 학부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기도 한다. 학부모의 불만을 줄이기 위한 최대한의 배려라 할 수 있다. 학교캠프는 특별한 개인 및 가족사유가 없는 한 학급학생이 전원참가하도록 한다.

스톡홀름 근교의 쉘페토르프 스쿨란 (<http://kampetorpsskolan.stockholm.se/>) 초등학교 2학년 과정의 학교캠프 프로그램을 보자.

#### 학교캠프 프로그램

학생들의 자연체험을 통해 교과서에서 배운 것을 직접 눈으로 체험하고, 손을 만져보며, 관찰하게 한다. 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자연에 대한 중요성과 체험을 통해 직접 오감으로 확인하게 한다. 자연을 통해 어린이의 정서적 균형감각을 회복시켜 주고 다른 학생들과 야영을 하면서 단체의식도 싹트게 한다. 부모로부터 떨어져 하루를 지내게 함으로서 가정의 중요성, 부모님의 보살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게한다. 캠프장소는 학교에서 자동차로 30분 떨어져 있는 튀레세 (Tyresö)지역으로 한다.

#### 일정

##### 1일

- 9시 도착 방배정 및 시설안내
- 10시 인근 숲에서 식물관찰
- 11시 30분 점심 (집에서 준비해온 재료로 맛있게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자)
- 13시-16시 선생님과 함께 야외 자연학습.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직접 눈으로 확인!
- 17시: 저녁식사 (직접 불을 피워 소세지를 구워먹어보자. 각자 분담해서 준비한 식사를 나누어 먹는다)
- 19시: 친구들과 야외자유시간. 축구 등 다양한 게임을 교사감독하에 실시

- 20시 30분: 세면
- 21시: 취침

2일

- 7시 기상
- 8시 아침식사 (집에서 준비해온 재료로 샌드위치를 만들어보자)
- 9시 30분 아침야외 산책
- 11시 집결-해산 다시 집으로

#### 학부모 주의사항

- 지참물. 베게피, 이불피, 치약, 치솔, 수건, 잠옷, 양말, 휴지, 점심식사용 샌드위치 재료, 파파리카, 오이, 빵 등. 학부모끼리 상의해 분담한다 (참조: 한 학급이 12명이기 때문에 학부모끼리 연락해 각각 분담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참가비용 학생당 200크로네 (1박 시설사용비용)
- 참물은 학생개인이 준비하도록 한다. 지참물을 챙길 때 학생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캠프를 마치고 돌아부모는 전혀 학교캠프기간동안 전혀 통화를 할 수 없다. 이 기간동안에는 학생들이 전화를 소지할 수 있으나, 전원을 모두 끄게 할 예정.
- 학생들의 지병이나 담임선생님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담임선생님과 상담.
- 언제든지 궁금할 점은 담임선생님 전화로 문의가능.

이 같은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뿐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랑하는 자식들과 떨어져 있는 연습, 그리고 학교선생님을 믿고 맞기는 신뢰의 관계가 생기고, 학교에서는 학교장 및 교사들이 사전 학부모회의를 통해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시간을 통해 철저하게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프로그램 내용을 사전준비할 때 학생들의 희망사항 (방문하고 싶은 곳, 꼭 체험하고 싶은 것, 힘든 것) 등을 충분히 들어 반영하고자 한다. 즉 학교-학부모-학생의 3자의 참여에 따른 프로그램을 준비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프라오 프로그램처럼 철저하게 학생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만전을 기하기 위해 방문지의 사전답사, 시설점검, 그리고 주위환경 점검 등 철저한 준비기간을 갖는다.

스웨덴의 한국과 색다른 점은 200크로네라는 비용으로 행사를 진행한다는 데 있다. 이 금액은 실질적으로 시설이용료만 부담하게 하고 나머지는 학부모끼리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교통편으로 버스를 빌릴 경우 버스대여비용이 학부모에게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학부모가 상의해 4명씩을 캠프장소까지 데려다 주도록 하고 있다는데 있다. 캠프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데려 올 때도 마찬가지로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절대 택시는 타지 못하도록 해 부모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 같이 비용을 절감해 비용이 너무 커 참가하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철저히 배려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점은 학생들이 몸소 체험하는 것이 캠프학교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불피와 베게피 끼우기, 샌드위치 만들기, 소세지 구워먹기, 간식먹기 등 모두 부모가 재료만 준비해 주고 본인이 현장에서 직접 각자가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교사는 하는 방법만 시범을 보여주고 절대 학생들을 도와주지 않는다. 학생들의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한 철저한 배려라 할 수 있다.<sup>47)</sup>

#### 4. 청소년정책의 전달체계

청소년 정책은 2010년 이후 채택된 법안 (prop. 2007/08:1, bet. 2007/08:KrU1, rskr. 2007/08:58)에 따라 교육부 내 소관 부처인 통합평등부에 귀속되며 담당 통합평등부 장관이 청소년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통합평등부 산하에 있는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정부의 정책지침서 (Direktiv; Governmental Directions)에 따라 정책을 집행한다.

이 정책지침서는 청소년 정책위원회 (Ungdomsstyrelsen)가 수행할 정책의 상세한 내용 뿐 아니라, 집행, 감독 등의 수행지침까지 포함하고 있는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 부분은 매년 의회에 제출되는 정부의 예산안 29개 항목 중 17번의 정책분야에 속하며 예산세목은 청소년 기관 및 청소년 관련단체의 지원예산까지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정책위원회는 다양한 청소년 정책의 종합적 집행 및 평가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면서 감독까지 담당한다. 또한 연구과제도 자체적으로 수행하면서 청소년 관련 정책의 비전과 목표수정, 그리고 국제적 비교 및 청소년 들의 국제활동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sup>48)</sup> 청소년 정책위원회는 청소년 문화 및 체육지원단체 등 사회기관 들의 활동을 돕기위해 경제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47) 셸페토르프 스쿨란 부모와의 인터뷰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48) 청소년 위원회의 임무, 역할 및 책임 부분은 <http://www.ungdomsstyrelsen.se/uppdrag-och-kunskap>을 참조.

청소년 정책위원회에 배정되는 예산의 2/3가 청소년 관련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배정되어 있다.

청소년 정책의 종합적 감독은 청소년 위원회가 담당하지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는 재정감사원 (ESV; Ekonomi Styrningsverket, The Swedish 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Authority)의 평가를 받고, 행정수행에 대한 평가는 행정감사원 (Statskontoret, The Swedish Agency for Public Management)이 담당한다. 양 기관의 평가 즉, 재정감사와 행정감사는 예산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감사, 그리고 정책목표 수행에 대한 결과 감사 등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재정적으로 재정감사원이, 행정감사는 행정감사원이 각각 책임을 갖고 청소년 위원회와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들을 감사한다.

2006년부터 청소년 정책을 보다 현실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정부산하 유관기관에 청소년 관련 통계 및 지표산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정부가 청소년 정책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 어떤 자료를 중심으로 각 기관들의 활동을 계도하고 감독하며, 보다 질적인 청소년 정책의 개발을 위해 2006년 이후 17개의 기관이 정부에 청소년의 삶의 질, 복지,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13세부터 25세까지의 청소년 관련 통계 및 각종 지표 (Statistics and indicators)를 만들어 주무 정책부서인 사회통합부, 그리고 집행기관인 청소년위원회에 자료만들어 제공한다. 자료의 내용과 제공처는 다음과 같다.

1. 국영직업소개소 (Arbetsförmedlingen, Swedish Public Employment Service): 청소년의 직업훈련 관련자료, 취업자료, 청소년 창업율, 청소년 창업지원 관련 자료 (<http://www.arbetsformedlingen.se/>)
2. 범죄예방위원회 (Brottsförebygganderådet, Swedish National Council for Crime Prevention): 청소년 범죄에 관한 통계, 비행청소년에 대한 자료 (연령별, 가정환경, 교육연계자료), 교화현황, 청소년의 집 운영실태, 재범방지에 투입된 예산 및 평가자료 (<http://www.bra.se/#&panel1-1>)
3. 중앙주택국 (Boverket, Swedish National Board of Housing, Building and Planning): 청소년 주택관련 자료, 청소년 주택보조금 관련통계, 부모와의 독립여부, 지역별, 성별 거주통계 (<http://www.boverket.se/>)
4. 중앙 학비지원국 (Centrala studiestödsnåden, Central Bureau for Study Aid): 청소년 학비지원관련 자료, 학생들의 여름 및 학업기간중 아르바이트 현황자료, 유학자금 지원현

- 황, 청소년 총 학비장기유자 현황 (<http://www.csn.se/>)
5. 국가보험국 (Försäkringskassan, National Insurance Board): 청소년의 실업과 보조금 수령현황, 최저생계비 경험에 대한 통계, 질병에 관한 통계 (<http://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
  6. 대학교육청 (Högskoleverket, Swedish National Agency for Higher Education): 청소년 대학진학현황, 청소년 대학졸업 통계 (<http://www.hsv.se/>)
  7. 중앙 발전정책분석국 (Myndigheten för tillväxtpolitiska utvärderingar och analyser, Swedish Agency for Growth Policy Analysis):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현황, 경제적 현황 (<http://www.tillvaxtanalys.se/>)
  8. 개인채무집행국 (Kronofogdemyndigheten, Enforcement Authority): 청소년의 채무현황, 채무구제현황 (<http://www.kronofogden.se/>)
  9. 국세청 (Skatteverket, National Tax Board): 청소년의 세금납부 현황, 청소년의 평균수입현황, 청소년의 결혼, 자녀 및 가족현황 (<http://www.skatteverket.se/>)
  10. 건강보험청 (Socialstyrelsen, The Soci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청소년 건강정책, 청소년 성병감염 실태, 보건소 운영실태, 정신적 질환 현황 (<http://www.socialstyrelsen.se/>)
  11. 중앙 건강청 (Statens folkhälsoinstitutet, National Health Institute): 청소년 알코올, 약물복용, 마약실태, 그리고 흡연, 건강상태 등, 질병, 암 발병 현황, 예방접종 현황, 청소년 전화 운영실태, 낙태경험 (<http://www.fhi.se/>)
  12. 중앙 문화국 (Statens kulturråd, National Cultural Board): 청소년의 문화체육 활동 통계, 청소년의 박물관 방문통계, 신문방송 소비성향, 도서관 방문, 도서임대, 독서량 (<http://www.kulturradet.se/>)
  13. 중앙 교육청 (Statens skolverket, National School Board): 청소년의 중등 및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학급학교 진학률, 왕따 경험, 학교폭력 경험 (<http://www.skolverket.se/>)
  14. 경제성장국 (Tillväxtverket, Bureau for Economic Growth): 청소년의 경제수입 상황 (<http://www.tillvaxtverket.se/>)
  15. 청소년 정책위원회 (Ungdomsstyrelsen, Swedish National Board for Youth Affairs): 청소년 단체의 재정보조, 국제활동 통계, 자원봉사 활동 통계 (<http://www.ungdomsstyrelsen.se/>)

16. 선거관리위원회 (Valmyndigheften, Election Authority): 청소년들의 투표율 (연령대별, 성별, 지역별, 인구사회별 등), 청소년 정치참여 현황, 정당가입, 지방자치 단체 등 진입율, 각 정당소속 청소년단체 활동 등 (<http://www.val.se/>)

## 5. 청소년정책의 주요 이슈

정부의 청소년 정책은 교육부의 독립부처인 통합평등부가 총괄하고 있다. 통합평등부는 청소년 정책의 목표로 첫째, 청소년들이 실질적 사회복지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실질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9년 청소년정책 기획안 (Regeringens Skrivelse 2009/10:53)은 위 두가지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4가지 정책영역을 지적하고 있다.

- 교육 및 학습
- 노동 및 경제적 자립권
- 건강 및 사회적 위험
- 민주적 영향력과 대의성
- 문화 및 여가

### 5.1 교육 및 학습정책영역

교육분야는 청소년 들이 중등 및 고등학교 교육을 통해 민주시민의 역량과 소양을 갖추는데 초점을 둔다. 민주적 가치인 자유, 평등, 책임성, 그리고 타인의 배려와 연대성에 대한 민주적 가치를 교육현장에서 체험하고 실천적 지식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수업내용의 틀을 짜고 있다. 모든 학생들이 낙오되지 않고 학교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부모, 교사, 학생의 대화통로가 항상 열려있어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3자간 회의를 진행한다.

스웨덴 중앙교육청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중학교 졸업생의 90퍼센트가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고, 10퍼센트는 탈락해 부분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 중에서 부모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학생들의 경우 95퍼센트가 입학자격이 있는 반면, 부모가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학생의 경우 67퍼센트만이 입학자격을 취득함으로써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결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특히 이민자 가족 청소년들이 학교 교육에서 낙오되지 않고 학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특별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Regeringens Skrivelse 2009/10:53, 17쪽). 이를 위해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위해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범죄나 비행 등으로 정상적 학교 생활이 힘든 학생들을 위해 특별학교를 만들어 특수지도법을 적용시켜 끝까지 학교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일반 학교에서도 청소년들의 폭력과 집단따돌림 방지책을 강구하게 하고 소외 학생 특히 외국인 부모를 둔 학생들의 경우 언어가 짧은 경우 특별언어과정을 개설해 적응하도록 하는 프로그램까지 포함하고 있다 (Regeringens Skrivelse 2009/10:53, 16-20쪽).

## 5.2. 노동정책과 경제적 자립권

노동 및 경제적 자립권과 연관된 정책영역의 경우 청소년들이 의무교육을 마치고 16세부터 사회를 진출하고자 원하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취직알선과 직업교육을 담당한다. 초등학교 5학년에서 9학년 (중학교 3학년) 기간동안에는 최소 하루에서 몇 주까지 직접 노동현장을 체험하도록 하는 프라오 교육 (Praktisk arbetslivsorientering, PRAO)을 통해 노동의 중요함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노동을 통해 받은 임금이 경제적 자립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교육이다.

노동환경청 (Arbetsmiljöverket) 에서 제정한 학생체험학습 규정집 AFS 2012:3 (Arbetsmiljöverkets författningssamling)은 노동환경법 (Arbetsmiljölagen 1977:1160)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고용주는 작업환경이 안전사고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생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 이 노동현장 체험학습은 복지 서비스를 체험하게 하거나, 상점의 점원, 작업장에서 노동 등을 통해 어떻게 인간과 인간간의 상호 협조를 통해 서비스와 상품이 직접 만들어지는지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어린 나이에 노동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노동현장의 체험을 통해 좀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장차 꿈과 비전을 키울 수 있게 하고 경제적으로 자립을 통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교육수단이다.

직업고등학교에서 졸업전 15주간 작업현장체험교육 (ArbetsPlatsbelagd Utbildning, APU)을 통해 작업환경, 기술, 팀웍 등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졸업 후 바로 산업현장에서 투입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교육에서 배운 기초이론으로는 충분하지 못한 현장적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목적으로 시행된다. 15주 동안 직접 현장실습을 통해 응용기술 능력을 체득하게 하는 교육효과도 있지만, 고용주가 실습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학생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헤드헌팅 기회도 되기 때문에 학생이나 고용주 입장에서는 중요한 노동시장의 통로로도 활용되고 있다.

학교교육에서 중요한 또 다른 부분은 학생들이 졸업하면서 창업할 수 있도록 기업가 정신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9년 발행된 청소년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 후 18-30세에 이르는 청년창업주 비율이 2008년에 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2007년 새로 창업된 업종의 10퍼센트가 16-25세의 젊은 청소년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 중 61퍼센트가 남성창업주였다. 지역경제 성장청 (Tillväxtverket)에 발행된 보고서에 따르면 18-30세의 젊은 층 중에서 74퍼센트가 장차 회사를 창업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하는 예를 통해서 보듯 스웨덴 젊은 층의 창업붐은 높은 실업율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뿐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기업가 정신과 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Regerings Skrivelse 2009/10:53, 22쪽).

### 5.3 건강 및 위험관리

건강과 위험노출 등에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자살, 알코올 소비, 마약, 약물 및 흡연 (ANDT, Alcohol, Narcotics, Drug and Tobacco) 등에 희생되지 않도록 계도하는 정책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정부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과 2005년 사이 스웨덴 9학년 여학생들이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많다고 지적한 학생의 비율이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높아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1988년 조사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6세에서 24세까지 청소년 여성의 9퍼센트, 그리고 남성의 4퍼센트가 걱정, 정서불안, 의욕저하 등을 경험했으나 2007년에는 여성의 33퍼센트, 남성의 12퍼센트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다 (Regerings Skrivelse 2009/10:53, 24쪽). 청소년의 정신건강 약화는 곧 바로 자살, 질병, 학업중단 그리고 학교폭력과 중요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별히 정신건강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정신적 건강과 함께 대두되는 육체적 건강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스웨덴 15-19세 청소년 여성 중 15퍼센트가, 그리고 남학생의 경우 13퍼센트가 성병에 노출되고 있다는 보고서 질병보호국 (Smittskyddsinstitutet, SMI)의 보고서에 나타나 있다. 이같은 양상은 청소년의 인터넷 상 음란물에 대한 노출에서도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청소년 위원회가 발행한 2009년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 청소년여성의 49퍼센트가 성적으로 수치심이 가는 사진을 보낼 것을 권유하는 메일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인터넷 상에서의 성희롱, 성매매 유혹 등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의 인터넷 상담과 학교에서 특별교육 등을 통해 여학생 인권과 성교육 등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Regerings Skrivelse 2009/10:53, 25쪽).

#### 5.4 민주적 영향력과 대의성

2002년과 2006년 기간동안 18세에서 22세까지의 투표율은 여성이 73퍼센트에서 78퍼센트로 상승했고, 남성의 경우 68퍼센트에서 74퍼센트로 오르는 등 젊은층의 정치적 관심과 투표참여율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는 학교에서 일관성있게 민주적 영향력 및 청소년 층의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과목의 강화에 기인하고 있다고 본다. 이와 함께 각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차원에서의 민주시민 교육과 참여교육이 2002년과 2006년 사이 대대적으로 이루어 짐으로써 얻은 효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스웨덴 전체 유권자의 투표율 85퍼센트에 비하면 10퍼센트 정도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학교교육을 통해 계도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정당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스웨덴 청소년 비율도 늘고 있다. 16-24세 사이의 청년 그룹이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비율이 3.5퍼센트에 이르러 다른 성인그룹 (35-74세)의 5.8퍼센트에 2.3퍼센트의 차이만 보이고 있을 뿐이다. 16-29세의 젊은 층 여론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정당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비율이 44퍼센트에 이르는 등 정치참여에도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Ungdomsstyrelsen Rapport 2009:6). 이는 스웨덴 학생들에게 정치적 선택의 자유, 정당참여의 자유를 부여함으로써 일찍부터 정치에 눈을 뜨게 하는 교육정책에 기인하고 있다 (Regeringens Skrivelse 2009/10:53, 29-30쪽).

#### 5.5 문화 및 여가활동

문화 및 여가는 청소년의 심신건강과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한 시설제공 및 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Proposition 2011/12:1 Utgiftområde 17, 163쪽). 구체적으로 7세에서 13세까지 학교가 제공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 및 체육 등 여가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에 사정에 따라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인근 지역에 있는 학교와 공동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기초지방자치 정부가 계도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탁아소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교교육 부문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중앙교육청의 감독을 받고 있다. 따라서 방과 후 과목 등의 제공 등은 각급 학교장에 중요한 업무이지만,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방과 후 학생들이 다양한 놀거리, 운동, 문화교육 등을 담당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피아노, 바이올린 등 악기연습, 축가, 하키, 승마, 테니스, 골프 등 체육활동, 작곡, 연주활동, 합창 등을 위한 음악연습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해 장소를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스웨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 뿐 아니라 맞벌이 부부가 대다수인 스웨덴 가정의 가족형태에 학교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중요한 학생복지를 제공하는 셈이다.

## 6. 청소년정책의 시사점

스웨덴의 청소년 정책은 13세부터 29세까지의 연령대에 있는 청(소)년들에 해당되는 모든 정책분야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정책분야가 아니다. 위에서도 소개했듯 교육, 노동, 경제, 건강, 민주주의, 문화, 여가, 그리고 주택 등 모든 정책분야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같은 청소년 정책을 입안, 집행, 감독, 예산배정 등을 담당하는 청소년위원회는 연구기능, 국제활동까지 가지고 있는 종합기관으로 상위기관인 사회통합부의 감독을 받으며 모든 정책분야를 아우르는 기능을 가진다. 한국의 경우 양성평등과 같은 사안도 여성가족부에서 모두 실현할 수 없듯이 청소년관련 정책도 교육부에 담당하지만 모든 분야를 담당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스웨덴과 같이 청소년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청소년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통해 각 행정부처에서 조금씩 가지고 있는 청소년업무를 주도할 기관이 필요하리라 본다.

스웨덴의 청소년 정책 중 교육연관 분야는 중앙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학교교육이 중심이다. 중앙교육청이 중앙에 하나 밖에 존재하지 않고 정부임명직인 교육청장이 정권의 교육정책을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진보-보수교육에 대한 논란이 처음부터 배제된다. 이와함께 전국적으로 중앙의 감독을 받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각급 학교가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편차가 있지 않고 오로지 국가교육 목표가 정해지면 전국적으로 같은 내용의 교육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셈이다. 교사간의 갈등, 학교와 부모와의 갈등 등이 원칙적으로 봉쇄되게 하는 중요한 구조인 셈이다.

학교교육은 학생의 민주주의 가치의 위에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시민교육이라는 큰 틀에서 창의교육, 적성교육, 책임교육을 강조하고 있어 학생들이 독립적 경제인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교육에 맞추어져 있다.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등도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독립적 개인,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배려와 이해 등을 강조하는 교육을 통해 민주적 시민을 배출한다. 최근 PISA 성적의 영향으로 경쟁이 조금씩 도입되기는 하지만, 스웨덴의 교육은 아직까지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식과 가치 중심의 균형잡힌 교육으로 접근하고 있는 양상이다. 스웨덴 학교교육 콘텐츠, 체험실습위주의 감성교육, 독립적 경제주체 교육, 민주주의적 배려와 용인 (Tolerance) 등의 방향이 한국의 청소년정책에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하겠다.

## 참조문헌

- Arbetsmiljölagen (1977:1160) 노동환경법
- Betänkande 2004/05:KrU2 정책기획안
- Betänkande 2007/08:KrU1 정책기획안
- Brottsförebyggande rådet, Rapport 2006:7 범죄예방위원회 보고서.
- Fritidsledarskolorna, Folkhögskolor i samverkan, 2010.
- Fritidsledarskolorna, Folkhögskolor i samverkan, 2013.
- Proposition 1993/94:135 정부입법안
- Proposition 1998/99:115 정부입법안
- Proposition 2004/05:2 정부입법안
- Proposition 2007/08:1 정부입법안
- Proposition 2011/12:1 Utgiftområde 17. 2012년 예산안. 지출항목 17.
- Regeringens skrivelse 2004/05:94 정부정책서
- Regeringens skrivelse 2007/08:58 정부정책서
- Regeringens skrivelse 2009/10:53 정부정책서
- SFS 2007:1140 스웨덴 법규집
- Ungdomsstyrelsens skrifter 2009:6, Ungdag2009오늘의 청년 2009.
- Ungdomsstyrelsens skrifter 2009:9, Semig-Ungaomsexochinternet 저를 보세요. 청소년들의 성과 인터넷.

## 인터넷 자료

프라오에 대한 경영자 총연맹의 평가. 2013-06-12 방문.

[http://www.svensktnaringsliv.se/skola/prao-viktigare-an-nagonsin\\_49677.html](http://www.svensktnaringsliv.se/skola/prao-viktigare-an-nagonsin_49677.html).

프라오에 대한 경영자 총연맹의 설문조사. 2013-06-12 방문.

<http://www.svensktnaringsliv.se/skola/grundskolan/unga-ger-prao-och-prak>

tik-mvg\_13775.html

국영직업소개소 (Arbetsförmedlingen, Swedish Public Employment Service  
<http://www.arbetsformedlingen.se/>)

범죄예방위원회 (Brottsförebygganderådet, Swedish National Council for Crime  
Prevention)  
<http://www.bra.se/#&panel1-1>

중앙주택국 (Boverket, Swedish National Board of Housing, Building and Planning)  
<http://www.boverket.se/>

중앙 학비지원국 (Centrala studiestödsnåden, Central Bureau for Study Aid)  
<http://www.csn.se/>

국가보험국 (Försäkringskassan, National Insurance Board)  
<http://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

대학교육청 (Högskoleverket, Swedish National Agency for Higher Education)  
<http://www.hsv.se/>

중앙 발전정책분석국 (Myndigheten för tillväxtpolitiska utvärderingar och analyser,  
Swedish Agency for Growth Policy Analysis)  
<http://www.tillvaxtanalys.se/>

개인채무집행국 (Kronofogdemyndigheten, Enforcement Authority)  
<http://www.kronofogden.se/>

국세청 (Skatteverket, National Tax Board) <http://www.skatteverket.se/>

건강보험청 (Socialstyrelsen, The Soci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  
<http://www.socialstyrelsen.se/>

중앙 건강청 (Statens folkhälsoinstitutet, National Health Institute)  
<http://www.fhi.se/>

중앙 문화국 (Statens kulturråd, National Cultural Board)  
<http://www.kulturradet.se/>

중앙 교육청 (Statens skolverket, National School Board)  
<http://www.skolverket.se/>

경제성장국 (Tillväxtverket, Bureau for Economic Growth) <http://www.tillvaxtverket.se/>

청소년 정책위원회 (Ungdomsstyrelsen, Swedish National Board for Youth Affairs)

<http://www.ungdomsstyrelsen.se/>

선거관리위원회 (Valmyndigheten, Election Authority) <http://www.val.se/>

4

일본의 청소년활동정책

최 현 주

히토츠바시대학교



# 일본의 청소년활동정책

최현주(히토즈바시대학교)

## 1. 청소년 체험활동정책의 역사적사회적 배경

도시화, 저출산 현상, 지역사회 내 인간관계의 희박화 등이 뚜렷해 지는 가운데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성장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사람-사회-자연 등을 직접 접하는 다양한 체험의 기회가 적어지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정보화사회가 발달됨에 따라 자신이 앉아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전세계의 뉴스를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간접체험’ 은 크게 확산되고 있다. 컴퓨터를 사용한 시뮬레이션 등을 비롯한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모의체험’ 또한 고도로 발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직접체험의 감소와 체험 내용의 불균형 등이 청소년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며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의식이 각 선진국에서 지적되기 시작했다.

<표 1> 일본의 청소년육성과 지역사회의 변화<sup>49)</sup>

	청소년활동 및 육성 움직임	지역과 사회의 변화
70년대	놀이 장소의 감소 함께 노는 또래의 소수화 청년사업의 정체	도시화와 뉴타운화 지연사회의 쇠퇴 지역교육의 유지 노력
80년대	등교거부 문제가 뚜렷화 프리 스페이스(자유공간) 운동 청소년단체 회원 수가 절정	정보/소비주의사회화 세대간, 개인간의 분리분단 지역교육 담당/책임자들의 노령화
90년대	쉼터형 청소년활동시설의 등장 개별지원부터 재출발	글로벌 사회화 자기책임주의의 침투 지역교육을 짊어질 인재 육성
00년대	청소년 쉼터+청년의 사회적자립 거점으로서의 시설	지역교육력 만들기 위한 모색 개개인과 지역을 잇는 중간조직의 구축

49) 田中治彦·萩原健次郎編著(2012) p19

일본에서는 현재와 미래 사회에서 발생하게 될 에너지 문제, 환경문제, 식량, 인권 등과 같은 커다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국가의 역할을 내세웠고, 이를 위해서는 급변하는 세계와 지역사회의 문제에 능동적으로 변혁해 갈 수 있는 ‘차립된 인간’ 이 앞으로의 시대에 필요한 인간상이라고 지적했다.<sup>50)</sup> 이러한 사회적, 국제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아동·청소년 시절부터 스스로 과제를 발견하고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길러야 하며, 그러한 능력을 뒷받침해주는 정의감과 윤리관 등의 인간성을 가지고, 문화를 소중히 하는 마음, 건강과 체력 등을 갖춘 ‘살아가는 힘’ (生きる力)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996년에 제출된 일본 문부과학성 중앙교육심의회 제1차 답신<sup>51)</sup>은 앞으로의 교육목표에 대해 ‘살아가는 힘’ 을 익힐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역설했으며, ‘살아가는 힘’ 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스스로 과제를 발견하고 스스로 배우며 스스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행동. 보다 발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스스로를 관리하면서 다른 사람과 협조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과 감동하는 마음 등 풍부한 인간성과 건강하게 살기 위한 건강과 체력”

또한 답신은 ‘살아가는 힘’ 을 기르기 위한 구체적 방법 중 하나로 “자연체험과 봉사활동 등과 같은 체험활동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언급했다. 그러한 직접체험의 중심 거점으로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며 다양한 생활체험, 사회체험, 자연체험을 풍부하게 경험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각각의 주체의 역할을 재인식하게 된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신교육과정에서는 ‘종합적인 학습의 시간’ 을 내세웠고, 종합적인 학습의 시간은 체험활동을 강조하며, 지역과 학교의 특색에 따라 각 학교의 창의와 연구가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해 청소년 체험활동을 ‘학교교육’ 과 ‘사회교육’ , 두 가지 관점으로 촉진, 지원하고 있다.<sup>52)</sup> 따라서 일본의 학교교육법과 사회교육법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체험활동 시책의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1년 7월 11일에 개정된 각각의 법안이 공포됐으며, 체험활동에 관한 규정에 관해서도 같은

50) 문부과학성 생애학습심의회(1999) p11

51) ‘21세기를 전망한 우리나라(일본)의 교육에 대해’ 〈중앙교육심의회 제1차 답신〉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uuou/toushin/960701x.htm](http://www.mext.go.jp/b_menu/shingi/chuuou/toushin/960701x.htm)

52) [http://www.mext.go.jp/a\\_menu/shougai/houshi/jirei/03071401/003.pdf#search=%E4%BD%93%E9%A8%93%E6%B4%BB%E5%8B%95+%E7%B5%8C%E7%B7%AF](http://www.mext.go.jp/a_menu/shougai/houshi/jirei/03071401/003.pdf#search=%E4%BD%93%E9%A8%93%E6%B4%BB%E5%8B%95+%E7%B5%8C%E7%B7%AF) 3p

날부터 시행됐다. 먼저 학교기본법과 관련된 경위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체험활동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98년과 1999년에 개정된 현행 학습지도요령이다. 학습지도요령은 청소년들의 ‘살아가는 힘’을 육성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자연체험, 자원봉사체험의 적극적인 도입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교과횡단적, 탐구적 학습을 통해 과제발견 능력과 해결력을 기르는 ‘종합적 학습의 시간’을 신설함과 동시에 학교수업 주5일제의 완전한 도입(2002년 이후)에 따라 토요일에 실시되는 체험활동의 활성화를 지향하고 있다. 그 후 2001년에 문부성(현 문부과학성)이 책정한 ‘21세기교육신 생활판’은 체험활동진흥을 위한 법 정비 및 모델사업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고, 같은해 학교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교는 체험활동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사회교육관계단체 등과의 연계까지도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2007년 학교교육법 개정에서는 “학교 안팎에서의 자연체험활동을 촉진하고 생명 및 자연을 존중하는 정신과 더불어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른다”(제21조 제2호)는 등의 내용을 담으며 의무교육의 목표로 규정됨에 이른게 된다. 이 같은 경위를 거쳐, 2008년 1월 문부과학성 중앙교육심의회는 답신을 통해 ‘살아가는 힘’을 기르기 위해 언어활동과 더불어 충실한 체험활동을 강조했다.

2007년 문부과학성 중앙교육심의회는 “다음 세대를 짊어질 자립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한”이라는 답신을 통해, 청소년의 “기초적인 체력 저하와 부족, 의욕을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에서의 실수” 등을 지적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체험활동을 모든 청소년의 생활에 자리잡게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같은 해에 열린 교육재생회의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아동의 사회성, 감성을 배양하고 시야를 넓힌다”고 설명하며 이를 위해 “학교는 아동의 성장단계와 지역 실정을 고려해 모든 학교단계에 있어 체험봉사활동을 실시한다. 초등학교에서 1주일간의 집단숙박체험과 자연체험, 농림어업체험활동을 실시”라며 구체적인 제언을 내놓았다.

사회교육과 관련해 청소년 체험활동이 등장한 것은 1970년대 이후 자원봉사활동이 가지는 의의가 거듭 강조되며 이에 따라 문부성이 각종 시책을 전개하게 되면서 이다<sup>53)</sup>. 2001년에는 학교교육법과 동시에 사회교육법까지 개정되면서 교육위원회(교육청에 해당)의 사무로써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의 실시를 장려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체험활동, 독서활동 등의 사업을 주관하는 민간단체를 조성하려는 차원에서 ‘고도모 유메(子どもゆめ) 기금’이 같은해에 창설됐다.

개정교육기본법은 사회교육(제12조), 학교, 가정 및 지역주민 등의 연계사업(제13조)에 관한 내용을 통해 사회교육에 관한 규정까지 확충했다<sup>54)</sup>. 이에 따라 2008년 사회교육법 개정에서는 학교가

53) 西願博之(2009)「体験活動をめぐる経緯と課題」『青少年をめぐる諸問題』p149-165 国立国会図書館調査及び立法考査局

사회교육관계단체, 지역주민 등의 협력을 얻어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학교측의 요구에 응해 사회교육주사(主士)가 필요한 조언을 행할 것이 명기됐으며, 체험활동의 추진 등 사회교육행정의 적극적 관여가 도모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위를 거쳐 가장 최근인 2013년 1월 문부과학성 중앙교육심의회<sup>55)</sup>의 답신은 ‘향후 청소년 체험활동의 추진에 대해서’를 통해 청소년 체험활동의 필요성과 그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 ① 편리·쾌적·안전한 현대사회에 있어서, 청소년은 전력을 다해볼 수 있는 기회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소년들의 ‘살아가는 힘’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체험활동 등에 도전하는 기회를 창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리스크를 두려워한 나머지 청소년들 주변의 어른들이 과보호를 일삼고, 청소년기에 필요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빼앗아 버린 측면도 있다.
- ② 도시화, 저출산화, 전자 미디어의 보급, 지역사회 내 인간관계의 희박화 등과 같은 사회의 변화로 인해, 이전까지는 일상생활권에서 쉽게 접하고 경험하던 놀이와 체험의 장소를 비롯해 실체를 체험하는 기회가 적어졌으며 그 노하우 또한 계승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교육시설의 감소, 사회교육주사의 감소 등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 ③ 보호자의 경제력과 학교의 판단 등에 따라 청소년 체험활동의 기회에 ‘체험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 ④ 체험활동은 인간을 육성하는 ‘원점’이라는 인식 아래에 미래 사회를 짊어질 모든 청소년들에게 인간적인 성장에 불가결한 체험을 경험시키기 위해서는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체험활동의 기회를 의도적·계획적으로 창출해야 한다.

문부과학성은 2013년 1월, ‘향후 청소년 체험활동 추진에 대해’<sup>55)</sup>라는 제목의 답신을 발표한다. 이 답신은 2008년 4월 문부과학대사, 중앙교육심의회에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청소년교육에 대해’라는 내용으로 고문을 의뢰하는데서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배경에는 청소년의 ‘살아가는 힘’을 함양하는데 있어, 자연체험을 비롯한 문화예술, 과학 등을 직접 체험하는 학습활동의 중요성이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이에 적절한 지도자,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등의 교육자원은 충분하지

54) 西願(2009)

55) 문부과학성 2013년 1월 21일 중앙교육심의회

([http://www.mext.go.jp/component/b\\_menu/shingi/toushin/\\_icsFiles/afieldfile/2013/04/03/1330231\\_01.pdf](http://www.mext.go.jp/component/b_menu/shingi/toushin/_icsFiles/afieldfile/2013/04/03/1330231_01.pdf))

않다는 점이 작용했다. 또한 앞으로의 새 시대와 걸맞는 청소년교육시설에 대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설치와 관리운영의 실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배경에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5월 중앙교육심의회 스포츠·청소년분과회 산하의 청소년교육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를 진행. 2011년 5월에 청소년 체험활동 추진에 관한 부회를 설치하고 13번에 걸쳐 심의, 시찰을 시행했다.

일본에서는 이전부터 학교교육법, 사회교육법, 교육진흥기본계획 등으로 체험활동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었다. 또한 독립행정법인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의 조사연구 등에 따르면 체험활동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다양한 교육적 효과 등이 검증됐기에, 이러한 결과를 반영해 앞으로의 체험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해 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경위로 작성된 이번 2013년 답신은 청소년 체험활동의 의의와 효과를 정리함과 함께 현재의 과제와 앞으로의 추진방책에 대한 제언을 담고 있다.

답신은 청소년 체험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첫째로 ‘체험활동의 기회 창출’ 을 들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자연체험, 사회체험 부족으로 인해 일본의 아동복지 이념인 건전육성이 심각한 사태에 직면했으며, 편리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추구함에 따라 청소년들이 과보호에 빠져 발달시기에 필요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빼앗기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호자의 경제력과 학교 판단 등으로 인해 청소년 체험활동 기회에도 ‘격차’ 가 발생하고 있다는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체험활동의 기회 창출이 사회적 과제로 부상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둘째로는 ‘사회를 살아나가는 힘’ 을 위해 청소년의 체험활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도시화·과소화, 핵가족화 사회에서 아동학생들의 인간관계 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개인과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나오는 다른 사람들과의 협동 능력 등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화에 대응, 창조성, 도전정신, 리더십 등을 갖춘 인재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의 체험활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답신에서는 청소년 체험활동을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 (1) 생활문화체험활동(방과후 놀이, 바깥 놀이, 스포츠, 부활동, 지역 및 학교의 연중 행사 등)
- (2) 자연체험활동(등산, 캠프, 하이킹과 같은 야외활동, 동식물관찰 등 자연·환경 관련 학습활동)
- (3) 사회체험활동(자원봉사활동, 직장체험활동, 인턴십 등)

이러한 청소년 체험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바람직한 체제를 위해서는 첫째, 학교 교육상의 체험활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학교교육·사회교육의 연계강화와 코디네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 체험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연계강화에 따른

체험활동의 도모가 불가피하며, 서로가 목표를 공유하고 발달단계를 고려한 실천 프로그램 정비·보급 계발 외에도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이어주는 역할의 코디네이터를 교육위원회 등에 배치하는 등의 체제정비가 필요하다고 명기한 점을 찾을 수 있다.

두번째로는 교사의 체험활동 관련 지도력을 향상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현재 교원양성 과정에 있는 인재들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 등에 대한 대책을 명기하고 있다. 학교 내에 있는 교사들뿐 아니라 청소년 체험활동을 위해서는 학교 밖에있는 지역 내 지도자의 양성을 통해 학교와 지역 연계의 체험활동 추진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지역과 학교의 연계에 따른 체험활동의 추진에 있어서는 학교지원지역본부, 방과후 아동교실 등 다양한 시설과 코디네이터와 자원봉사자, 학교 활동에 관여하는 보호자 및 지역 인재 등 다양한 주체가 학교와 지역의 니즈를 반영한 지도자양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연체험활동의 경우,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에게는 안전관리 능력이 가장 뒷받침되어야 한다. 단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임기응변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체험활동이 목적 중 하나이므로, 과도하게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설정하는 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안전확보를 위해 활동범위를 축소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 답신의 특징은, 청소년 체험활동을 사회 전체의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이념을 강조했다라는 점이다. 즉, 학교-가정-지역간의 연계에 따른 체험활동의 추진을 중요시하고 있다. 특히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체험활동이 충실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역과 가정의 역할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체험활동 평가제도의 창설을 명기하면서 영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들고 있다. 청소년 체험활동 평가제도의 개발로 인해, 체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다양한 능력을 갖춘 청소년들이 사회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실정에 맞는 평가제도를 개발·창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이러한 평가기준이 사회로 확산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2013년 답신을 통해서도 현재 청소년 체험활동에 관한 현재 일본사회의 이슈도 알아볼 수 있었다. 첫째로 청소년교육시설에 관한 사회적 논의이다. 수년 전부터 도입된 지정관리제도로 인해 민간의 능력을 활용한 창의적/효율적 운영이 이뤄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우수한 인재의 지속적인 확보를 비롯한 안정적 운영의 면과 안전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정관리제도는 청소년교육시설뿐 아니라 아동후생시설 등 기존에 정부가 관리하던 시설에 도입되면서 사회적으로 폭넓게 논의되고 있는 제도 중 하나다. 두번째로 현재 활발히 논의 중인 청소년체험활동 관련 이슈는

동일본대지진과 관련한 체험활동이다. 2011년 311 대지진과 같은 비상사태를 염두에 두고 청소년들의 대피/대처 능력을 기르기 위한 자연체험, 자원봉사, 방재교육 활동 등을 중시되기 시작하고 있다. 세번째 이슈는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청소년체험활동이다. 언어활동을 비롯한 일본문화의 발전, 글로벌화에 대처하는 국제교류의 추진 등을 청소년체험활동과 관련한 새로운 과제로 다루고 있다.

## 2. 청소년활동의 개념

### 2.1 체험활동의 정의

체험활동은 의도적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 직접적으로 자연이나 사람·사회 등과 관계를 가지는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오감을 통해 무엇인가를 느끼고 배우는 행동을 넓게 포함하고 있다. 2002년 문부과학성이 간행한 ‘체험활동 사례집’에서는 체험활동을 “문자 그대로 자신의 신체를 통해 실제로 경험한 활동”이라고 정의내렸다. 인간은 다양한 감각기관을 통해 외부의 사물, 사건과 접하고 배워가며 이렇게 신체 전체를 활용해 외부 대상과 관계를 맺어하는 활동을 ‘체험활동’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체험활동에는 대상이 되는 사물, 사건과 직접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직접체험’과 사진이나 텔레비전 등의 매개를 사용해 감각적으로 익히는 ‘간접체험’, 또한 모형이나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배우는 ‘모의체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7년 문부과학성 중앙교육심의회 답신(차세대를 짊어질 자립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해, 2007년 1월 30일)에 따르면 체험활동에 대해 “체험을 통해 어떠한 학습이 이뤄지는 것을 목적으로, 체험을 하는 사람에게 의도적·계획적으로 제공되는 체험”이라고도 명기돼 있다. 특히 사회교육이나 학교교육의 장에서 제공될 경우에는 교육적 목적·효과를 고려해 체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정의의 체험활동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정책을 제언하고 있다. 또한 체험활동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할 경우와 체험활동을 수단으로 삼아 무언가를 학습할 경우를 구별하면서 논의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 2.2 체험활동의 분류

‘체험활동’은 그 내용에 따라 크게 3개의 체험으로 분류된다. 첫번째는 생활문화체험활동이다. 예를 들면 방과후 놀이나 스포츠, 부활동(클럽활동), 지역이나 학교의 연중행사 등이 있다. 두번째는

자연체험활동이다. 예를 들면 등산, 캠프, 하이킹 등과 같은 야외활동, 별자리 관찰, 동식물 관찰과 같은 자연환경과 관련된 학습활동이다. 세번째는 사회체험활동이며 자원봉사활동이나 직업체험활동, 인턴십 등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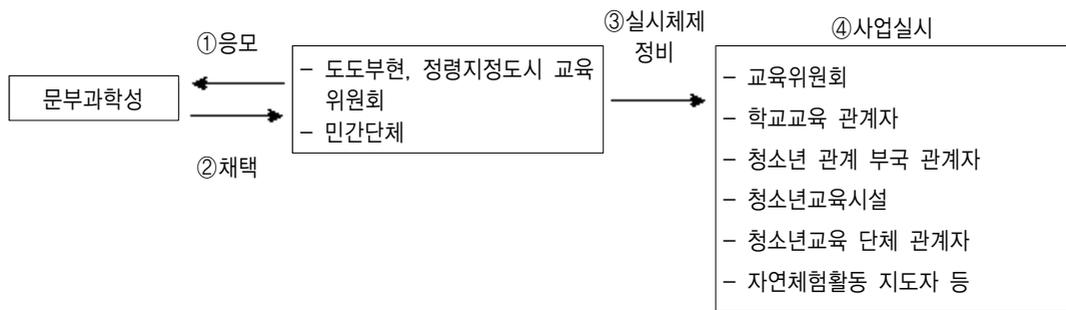
문부과학성이 체험활동 사례집(2003)을 엮어냄에 있어 체험활동을 총 7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 ①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봉사와 관련된 체험활동
  - 노인요양원 등과 같은 복지시설을 방문, 개호(介護) 체험활동
  - 쓰레기재활용 활동 등
- ② 자연과 관련된 체험활동
  - 자연 속에서 장기숙박 및 체험활동
  - 가까운 지역과 공원 등의 자연 환경을 활용한 탐구활동 등
- ③ 근로생산과 관련된 체험활동
  - 벼농사, 채소 재배 등
  - 동물 등의 사육
- ④ 직장 및 취업과 관련된 체험활동
  - 지역 상점이나 사업소 등에서 실시되는 체험활동
  - 장래의 진로를 탐색하는 인턴십 등
- ⑤ 문화, 예술과 관련된 체험활동
  -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문화나 예능, 전통공예 등의 전승활동
- ⑥ 교류와 관련된 체험활동
  - 지역 주민, 고령자, 영유아, 장애인, 외국인 등과의 교류
  - 농촌, 어촌과 도시부 등 서로 다른 지역간의 교류
- ⑦ 그 외의 체험활동
  - 공민관(公民館) 등에서의 합숙통학
  - 기타 체험활동

이 밖에도 가장 최근의 분류로는 2007년 문부과학성 '청소년 체험활동 종합플랜'(확충)<sup>56)</sup>의 7가지 분류가 있다.

- (1) 자립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의 체험활동(은둔형 외톨이, 니트, 등교거부 등)
- (2) 자율성·사회성을 함양하는 교류체험(서로 다른 세대와의 교류, 이문화 교류 등)
- (3) 청소년 발달단계에 따른 체험활동(유소년기 자연체험, 심머캠프, 청년 리더체험 등)
- (4) 환경교육의 추진에 도움이 되는 청소년 체험활동
- (5)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청소년 체험활동(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폐교를 활용한 생활체험 등)
- (6) 관계 성청(省庁)의 연계에 따른 지역네트워크형 체험활동
- (7) 향후 필요시되는 지도자의 이상향에 관한 조사연구 등

2007년 문부과학성의 종합플랜이 제시한 위와 같은 청소년 체험활동은, 일본의 각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와 민간단체 등의 응모를 통해 실시된다. 사업 실시의 주체는 각 교육위원회, 학교교육 관계자, 청소년 관계 부국 관계자 등 관민(官民) 일체의 사업추진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 3. 청소년활동정책의 현황

#### 3.1 법제 현황

일본의 청소년활동 관련 정책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크게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학교교육법과 관련된 관점에서 검토하면,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에서의 체험활동 촉진에 대해<sup>57)</sup>’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교육지도를 행하는데 있어, 아동의 체험적 학습활동, 특히

56) [http://www.mext.go.jp/a\\_menu/hyouka/kekka/08100105/031.htm](http://www.mext.go.jp/a_menu/hyouka/kekka/08100105/031.htm) 참고

57) 문부과학성 초등중등교육국장·평생학습정책국장 통지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봉사체험활동, 자연체험활동 그 외에 체험활동을 충실히 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사회교육관계단체 그 외에 관계 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중학교,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 특별지원학교에도 준거하여 적용)고 명기돼 있다<sup>58)</sup>. 또한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집단숙박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 자연체험활동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아동의 내면에 자리잡은 도덕성의 육성을 도모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고 규정돼 있어 각 학교 현장에서 발달 단계를 고려해 교육과정에 계획적·효과적인 체험활동을 도입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2008년 7월에 각의결정된 교육진흥기본계획 시책의 기본적인 방향에서는 첫째로 사회 전체가 교육 향상을 대응하기 위해 학교-가정-지역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 전체의 교육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방과후와 주말에 아동·청소년들의 체험과 교류활동의 장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개성을 존중하면서 능력을 키우고 한 개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규범의식을 기르고, 풍부한 감성과 건강한 신체를 만들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 활동의 예로 체험활동과 독서활동 등의 추진을 꼽았다. 세번째 기본적 방향은 교양과 전문성을 갖춘 지성적인 인간을 양성하고 사회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인간으로 양성하는 것이며 네번째 기본적 방향은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안심을 확보함과 함께 질 높은 교육환경을 정비하도록 했다.

사회교육법도 마찬가지로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교육위원회(교육청에 해당)의 사무로써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활동 등 사회봉사체험활동, 자연체험활동 그 외의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의 실시 및 그 장려에 관한 것을 규정했다(사회교육법 제5조 제12호). 또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체험활동 임무를 행함에 있어 학교교육과의 연계 확보를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사회교육법 제3조 제2항)했다.

### 일본의 학제

일본의 학교제도는 우리나라의 학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6-3-3-4)라는 단선형 학제를 갖추고 있다. 일본에서는 그 해의 4월 1일 시점에서 만 6세가 되는 아동이 초등학교(小学校)에 입학하며, 한 학년은 4월에 시작돼 그 다음해 3월에 끝난다. 일본국민에게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9년간이 의무교육기간에 해당하며,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개인의 희망에 따라 고등학교나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으며 고등교육을 받지 않고도 취직을 할 수도 있다.

---

58) 학교교육법 제31조

### 3.2 청소년관련 시설 및 인구 현황

일본에서 아동·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은 청소년교육시설<sup>59)</sup>로 대표되고 있다. 청소년교육시설이란 ‘청년의집’, ‘소년자연의집’ 등 자연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 각종 체험활동의 거점을 의미하며 청소년활동, 청소년교육, 청소년건강육성과 관련된 활동을 담당하는 시설의 총칭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 문부과학성 사회교육조사에 따른 ‘청소년교육시설’의 종류를 살펴보면 <표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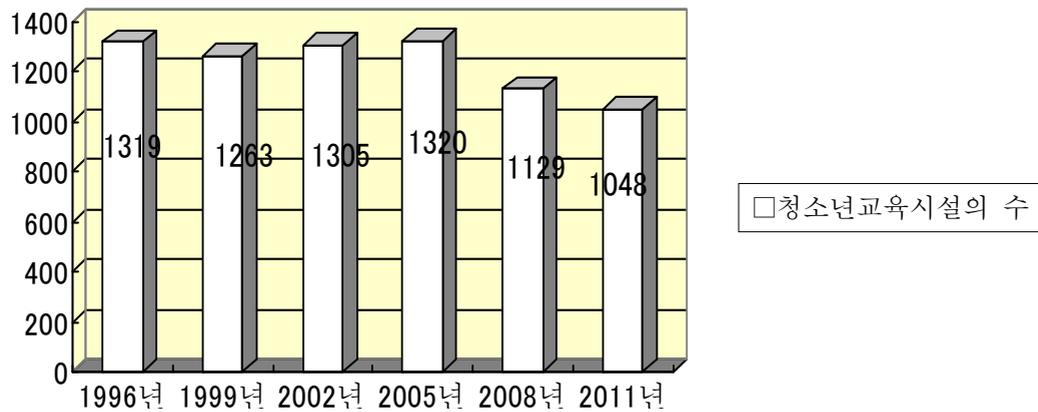
<표 2> 청소년교육시설 유형

(문부과학성 ‘2005년도 사회교육조사보고서’ 422쪽을 참고로 재구성)

명칭	대상	기능
소년자연의집	소년	단체숙박훈련을 실시. 야외활동, 자연탐구 등을 통해 소년의 건전육성을 도모
청년의집 (숙박형)	청년	단체숙박훈련을 실시
청년의집 (비숙박형)	청년	일상생활에서의 교류의 장을 제공. 청년의 연수, 단체활동 조장을 도모
아동문화센터	소년	과학지식의 보급, 실험실습의 장을 제공, 생활지도 등을 실시. 건전한 자발적 활동의 촉진을 도모
기타		위의 어떠한 사항에도 해당되지 않는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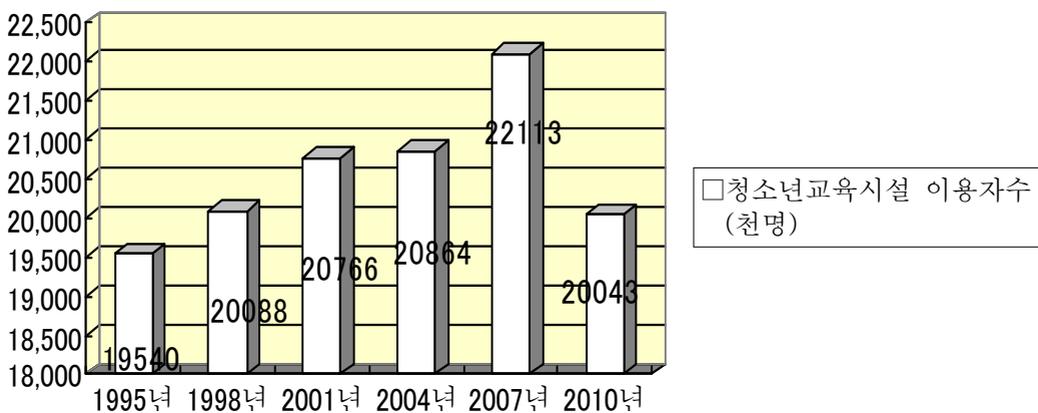
현재 국립청소년교육시설 28곳, 공립 청소년교육시설 516곳이 설치돼 있으며, 이는 2005년의 691곳보다 175곳이 감소한 수치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중 국립청소년교육시설은 크게 올림픽기념청소년종합센터(1곳), 청소년 자연의 집(14곳), 청소년 교류의 집(13곳)으로 분류되며 독립행정법인 국가청소년교육진흥기구에 의해 운영·관리되고 있다.

59)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수사업과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제공을 실시하고, 청소년단체 등의 이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설치된 사회교육시설.(2013년 문부과학성 중앙교육심의회)



<그림 1> 청소년교육시설의 수

(2011년 문부과학성 사회교육조사<sup>60</sup>)에서 발췌, 필자가 재구성



<그림 2> 청소년교육시설 이용자수

(2011년 문부과학성 사회교육조사에서 발췌)

국립청소년교육시설은 전국의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공립시설을 합쳐 전체 이용자수의 약 30%가 이용하고 있다(연간 약 490만명, 시설 1곳당 공립시설의 약 6.6배의 이용자를 수용). 하지만 공립시설의 급속한 감소 및 지정관리자제<sup>61</sup>)를 도입하는 시설의 증가등으로 인해 공립민간시설 모두 자금면과 인재면 등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립청소년교육시설은 저렴한 이용요금 등의 특징으로부터 일본의 청소년체험활동을 추진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해 왔지만

60) [http://www.mext.go.jp/b\\_menu/toukei/chousa02/shakai/kekka/k\\_detail/1334547.htm](http://www.mext.go.jp/b_menu/toukei/chousa02/shakai/kekka/k_detail/1334547.htm)

61) 지정관리자제도란 지방자치법 제244조 2제3항에 근거해 지자체가 시설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국립시설의 역할로 기대가 큰 지도자양성과 조사연구 등의 역할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받고 있다. 또한 청소년교육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는 모든 청소년이 다양하고 풍부한 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국립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배치와 인원배치 등에 있어서 더욱 효율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sup>62)</sup>

일본의 독립행정법인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는 국립청소년교육시설(전국 28곳, 공립시설은 443 곳)을 통해 종합적·체계적인 체험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약 500만명이 시설을 이용했다. 청소년교육시설이란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아동과 청년이 실시하는 자주 활동의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청소년교육 진흥의 도모를 주요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뜻한다. 이 밖에도 지도자 양성, 지도자 자질능력향상을 위한 연수, 유소년기부터 청소년기까지의 체계적인 체험활동에 대한 실증적 조사연구, 모델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학교/기업/민간단체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국공립, 민간 청소년교육시설/청소년교육단체 상호 네트워크 구축을 담당한다.

지역	분 류
홋카이도 2곳	청소년 교류의 집, 청소년 자연의 집
도호쿠 4곳	이와테 청소년 교류의 집, 미야기 청소년 자연의 집, 후쿠시마 청소년 자연의 집, 후쿠시마 청소년 교류의 집
간토 지역 4곳	도쿄올림픽기념청소년종합센터, 군마 청소년교류의 집, 나가노 청소년자연의 집, 니가타 청소년 자연의 집
도카이 지역 5곳	도야마 청소년 자연의집, 이시카와 청소년 교류의 집, 후쿠이 청소년 자연의집, 시즈오카 청소년 교류의 집, 기후 청소년 교류의 집
간키 지역 2곳	나라 청소년 자연의 집, 효고 청소년 자연의 집
주코쿠, 시코쿠 지역 6곳	오카야마 청소년 자연의 집, 시마네 청소년 교류의 집, 히로시마 청소년 교류의 집, 야마구치 청소년 자연의 집, 에히메 청소년 교류의 집, 고치 청소년 자연의 집
규슈 4곳	후쿠오카 청소년 자연의 집, 나가사키 청소년 자연의 집, 구마모토 청소년 교류의 집, 가고시마 청소년 자연의 집
오키나와 1곳	오키나와 청소년 교류의 집

62) 문부과학성 국립청소년교육시설의 실제에 관한 검토회(2011년 2월) ‘향후 국립청소년교육시설에 대해’ (개요판)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ousa/sports/010/attach/1302945.htm](http://www.mext.go.jp/b_menu/shingi/chousa/sports/010/attach/1302945.htm)

## 국립청소년교육시설 활동 사례

### 사례1) 오키나와 청소년 교류의 집<sup>63)</sup>

활동계획 예시 - 자연체험학습(대형 카누, 야외 취사, 수영, 텐트 생활 등), 수학여행, 스포츠  
합숙, 신입사원연수, 역사문화체험 등

### 사례2) 국립 히다카 청소년 자연의 집<sup>64)</sup>

야외활동(강놀이, 캠핑, 등산 하이킹, 자연관찰)  
레크레이션 활동(스포츠, 교류활동, 게임)  
스포츠 활동(실내/외 스포츠)  
예술문화활동(창작활동, 문화활동, 시설견학)  
노동체험활동(봉사활동, 생산활동)

### 사례3) 국립올림픽기념청소년종합센터<sup>65)</sup>

지도자양성프로그램  
국제교류프로그램  
자원봉사연수 프로그램  
문화·예술 프로그램  
스포츠 연수 프로그램

## 3.3 지도인력 양성 현황

청소년들이 풍부한 감성을 기르고, 살아가는 힘을 익히기 위한 체험활동이 중요시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각 초등학교가 1주일 정도의 집단숙박활동·자연숙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문부과학성 청소년과는 ‘청소년체험활동 종합플랜’을 통해 지도자 양성과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독립행정법인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 ‘자연체험활동 지도자’<sup>66)</sup>

(청소년체험활동종합플랜 자연체험활동 지도자 양성사업)

63) <http://okinawa.niye.go.jp/>

64) <http://hidaka.niye.go.jp/>

65) <http://nyc.niye.go.jp/>

66)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 홈페이지 [http://www.niye.go.jp/services/plan/natural\\_experience.html](http://www.niye.go.jp/services/plan/natural_experience.html)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는 산하 28개 시설을 비롯한 지도자 양성연수 실시기관 등에서는 문부과학성이 제정한 ‘지도자 양성 커리큘럼’에 근거해 양성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수료한 자를 초등학교 등에 소개하는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자연체험활동의 교육효과를 높이면서 청소년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체험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그 지도자를 양성해 청소년의 자연체험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성인원의 규모를 살펴보면, 2011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4,789명의 지도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 지도자의 양성을 위해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는 기구 산하의 전국 28개 시설에서 지도자 양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양성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를 간행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다.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가 양성하는 지도자 유형은 크게 전체지도자와 보조지도자로 나뉘며, 전체지도자는 초등학교가 실시하는 1주일간의 자연체험활동의 계획에 대한 조연을 실시하며 활동시에 전체지도를 담당, 활동 전체의 상황을 파악하고 활동 종료시에는 초등학교에서 실시되는 평가에 조연을 맡는다. 보조지도자는 전체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지도보조를 담당하고 활동시 안전확보 등의 보조활동을 펼친다.

<표 3> 지도자양성 커리큘럼<sup>67)</sup>

(전체:전체지도자 양성에 필요, 보조:보조지도자 양성에 필요)

	항목	목적	내용	시간
1	학교교육에 체험활동이 가지는 의의 (전체-보조)	오늘날 사회적 환경, 아동의 상황, 발달단계를 고려해 체험활동의 의의와 필요성, 교육적 효과를 이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과 청소년의 현 상황 등을 고려해 청소년의 현대적 과제와 청소년문제에 대해 이해 한다.</li> <li>• 체험활동의 교육적 의의와 학력과의 관계에 대해 이해한다.</li> <li>• 발달단계를 배려한 체험활동의 실제와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역할 및 자질을 이해한다.</li> </ul>	강의 2
2	교육과정과 체험활동의 관련성 (전체-보조)	교육과정에서 체험활동이 가지는 의의와 교육과정 편성에 체험활동을 도입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지도요령에서 차지하는 체험활동의 위치를 이해한다.</li> <li>• 장기집단숙박체험활동을 지도할때의 유의사항과 운영상의 문제를 이해한다.</li> <li>• 학교에서 실시하는 집단숙박체험활동의 실제(생활지도 포함)를 이해한다.</li> </ul>	강의 2
3	프로그램의 기획입안 (전체)	자연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기획입안부터 평가까지의 일련의 과정과 기획입안의 방법을 이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과 사람, 사회, 문화 사이의 관계 및 청소년교육시설과의 연계, 지역 인재의 활용 등 기획입안시에 유의해야 할 점을 이해한다.</li> <li>• 교육과정에 따른 체험활동사업 프로그램의 사례연구를 실시한다.</li> </ul>	강의 실습 5

67) <http://www.niye.go.jp/files/items/41/File/carriculum.pdf>

	항목	목적	내용	시간
4	자연체험활동의 기술 (전체)	자연체험활동의 기술을 습득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획입안부터 평가까지의 흐름과 각 단계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이해한다.</li> <li>자연 속에서 생활·활동함에 있어 필요시되는 기초적인 기술을 습득한다.</li> </ul>	실습 5
5	체험활동의 지도법 (전체)	체험활동의 기초적 지도방법을 이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간관계를 만드는 것과 환경보존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는 것 등, 목적에 따라 지도방법을 이해한다.</li> <li>체험활동 지도법의 실습을 실시한다.</li> </ul>	강의 연습 5
6	안전관리 (전체)	안전관리 시점과 안전계획 입안을 이해함과 동시에 구명구급법의 기본기술을 습득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체험활동과 관련한 안전관리의 기본적 인식을 이해한다.</li> <li>활동 전과 활동 중의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방법을 이해한다.</li> <li>구명구급법 실습을 실시한다.</li> </ul>	강의 2 실습(구명구급법) 3
총 시간				24

이 밖에도 국가가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활동 및 체험활동 관련 지도자는 <표4>와 같다.

<표 4> 주요 청소년 관계 지도자<sup>68)</sup>

명칭	직무내용	소속기관·단체 등
(1) 전문적 행정직원		
사회교육주사	사회교육을 실시하는 자에게 전문적, 기술적 조언과 지도를 제공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과 시정촌(자치단체)
사회복지주사	사찰지도원, 현업원 등	
(2) 청소년건강육성시설 등에 근무하는 전문직원		
독립행정법인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 기획지도전문직	해당 법인이 설치한 국립청소년교육시설(전국 28곳)을 이용하는 청소년 등의 연수 지도를 담당	(2011년 10월 기준) 127명 종사
공립청년의집 지도직원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청년의 연수계획에 대한 지도·조언과 더불어 연수생에 대한 생활지도와 연수지도를 담당	현립, 시정촌 청년의집
공립소년자연의집 지도직원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소년(의무교육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연수·연수계획에 대한 지도·조언 및 연수생에 대한 생활지도 및 연수지도를 담당	현립, 시정촌립 소년자연의집
공립아동문화센터 지도직원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보급 및 생활지도를 담당	현립, 시정촌립 아동문화센터. 2008년 10월 기준 213명 종사

68) 2012년 아동·청소년백서(내각부) <http://www8.cao.go.jp/youth/whitepaper/h24honpenpdf/pdf/ref10.pdf>

명칭	직무내용	소속기관·단체 등
아동의 놀이를 지도하는 자 (아동후생원)	놀이를 제공, 집단적 혹은 개인적으로 지도를 실시	아동관·아동유원 9,934명(2010년 10월 기준) 방과후 아동 클럽 5만 9,310명(2011년 5월 기준)
생활지도주사 (학교 교사)	학교에서 학생지도의 계획을 책정, 개별지도의 실시 등을 담당	각 중학교, 고등학교
진로지도주사 (학교 교사)	학생의 직업선택에 대해 지도, 그 외의 진로 지도를 담당	각 중학교, 고등학교
직업훈련지도원	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 및 인증직업훈련시설에서 보통직업훈련 등의 지도를 담당	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
(3) 행정기관 등에 소속된 지도원		
청소년지도원 청소년상담원 등	지역에서의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조인지도 등의 활동을 담당	도도부현, 시정촌

이밖에도 문부과학성<sup>69)</sup>은 자연체험활동 지도자 양성의 확충과 그 사회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소년단체 등의 민간단체가 연계해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자연체험활동추진협의회’ (CON E)<sup>70)</sup>를 설립하고, 관계단체에 공통의 자연체험활동 지도자 양성 커리큘럼을 제공함과 함께 각 단체의 소속된 지도자를 인증하고 등록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자연체험활동추진협의회(CONE)는 자연체험을 키워드로 전국 약 300단체가 연계해 풍부한 자연체험활동의 추진과 보급을 행하는 단체다. CONE에서는 자연체험활동지도자의 양성·소개와 안전한 활동의 보급·개발, 조사연구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00년부터 ‘CONE 리더’ 라는 이름의 지도자 등록을 개시, 현재 약 15,000명이 민간의 자연체험활동 지도자로 등록됐다. ‘리더’ 위로는 ‘인스트럭터’, ‘코디네이터’, ‘트레이너’ 등의 자격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사회적 인지도가 낮고 활용 빈도가 떨어진다는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청소년체험활동 지도인력에 관한 가장 최근의 시책으로는 올해 4월부터 시작된 전국체험활동지도자 인증제도에 따른 자연체험활동지도자의 육성이다. 전국체험활동지도자인증제도는 체험활동 지도인력을 양성하는데 앞장 서 온 독립행정법인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와 NPO법인 CONE가 연계협력해

69) 문부과학성 2006년판 문부과학백서 제2부 제8장 제7절 1. 청소년 체험활동 등의 추진

[http://www.mext.go.jp/b\\_menu/hakusho/html/hpab200601/002/008/024.htm](http://www.mext.go.jp/b_menu/hakusho/html/hpab200601/002/008/024.htm)

70) 자연체험활동현장의 정신에 기초해 자연을 무대로 한 모든 자연체험활동의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이념으로 만들어진 단체. 분야와 지역을 초월해 자연체험활동 지도자의 등록·활용 및 자연체험활동 실시 기관, 단체 사이의 교류·지원을 행하고 있으며 자연체험활동의 조사연구와 보급·개발 등을 통해 청소년을 비롯한 많은 사람의 자연체험활동을 추진하고, 다양한 민간기관, 단체와 기업, 정부, 지방공공단체와의 파트너십의 확립을 도모하고 있다.

[http://www.mext.go.jp/a\\_menu/ikusei/npo/npo-vol2/1316465.htm](http://www.mext.go.jp/a_menu/ikusei/npo/npo-vol2/1316465.htm)

자연체험활동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자격부여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공립 청소년교육시설과 교직원 등 지금까지 CONE지도자제도와 관련이 적었던 영역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해 지도자 수의 증가로 이어가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공립 청소년교육시설 사업에 대한 민간의 협력으로 지도자들의 활약을 조성하고 지도자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와 관계자들의 자격취득의욕을 높িয়ে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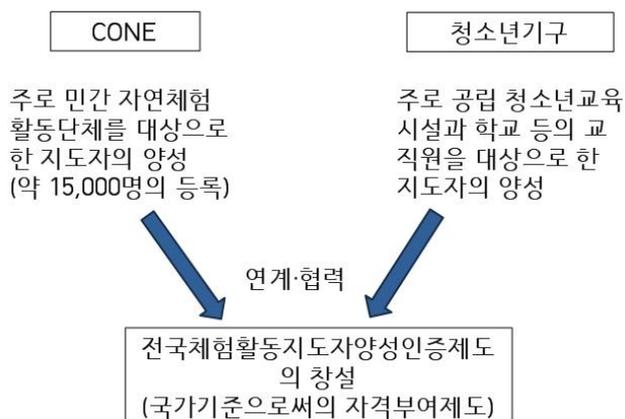


그림3. 전국체험활동지도자양성인증제도<sup>71)</sup>

### 청소년체험활동 관련 코디네이터

#### - 지역교육추진 네트워크 도쿄도 협의회 사례-

‘지역교육추진 네트워크 도쿄도 협의회’는 아동/청소년의 교육활동에 기업, 대학, NPO 등 전문적인 교육력을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네트워크 조성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조직이다. 아동청소년이 다양한 성인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체험을 해 가면서 사회성을 기르고 배움에 대한 적극적인 의욕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교육환경의 정비를 지향하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폭 넓은 분야의 기업, 대학, NPO, 지역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단체 등과 연계해 아동/청소년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다. 2006년 12월에 개정된 교육기본법에서는 제13조 ‘학교, 가정 및 지역주민 등의 상호협력’이라는 부분이 신설됐고 이를 반영해 2008년 6월에 사회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사회교육에는 학교·가정·지역을 ‘연결’ 하는 기능이 있다고 명시됐

71)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ukyo/chukyo5/008/gijiroku/\\_icsFiles/afieldfile/2013/01/07/1329349\\_03.pdf](http://www.mext.go.jp/b_menu/shingi/chukyo/chukyo5/008/gijiroku/_icsFiles/afieldfile/2013/01/07/1329349_03.pdf)

다. 이에 따라 2010년 7월, 제8기 도쿄도생애(평생)학습심의회가 발족됐으며 네트워크협회의 기존의 정책을 고려한 심의가 열리게 된다. 2012년 2월, ‘아동/청년의 사회적·직업적 자립’ 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지원의 종합적인 방책에 대해’ 라는 안건이 제기됐고 ‘커리어 교육’ 추진의 관점에서 네트워크협회를 향해, 기업·대학·NPO 등과의 연계 활동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그 후, 2013년 4월에 도쿄도 ‘교육진흥기본계획’ 에 해당하는 ‘도쿄도 교육비전(제3차)’ 이 책정됐다. 지역 등의 외부인재를 적극 활용하는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으로, 네트워크협회의 활동 등을 통해 ‘지역의 실정과 학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지역인재의 참획에 의한 교육지원활동을 전개’ 라고 명기했다.

‘교육지원 코디네이터’란 이 곳에 소속된 활동가를 뜻하는 말로, 학교를 지역, 기업, NPO 등과 연결시켜 외부 강사와 자원봉사자가 효과적으로 아동/청소년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코디네이터 활동을 실시하는 존재다. 즉, 학교 안과 밖의 교육활동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구체적인 역할로는, ①학교가 요구하는 외부강사, 게스트 티처 등의 인재를 개척하고 소개, ②커리어 교육, 직장체험의 협력자 개척 및 소개, ③수업 프로그램 작성의 협력·제안, 진행보조, ④학교 서포터, 수업 자원봉사자 등의 등록조정, 양성연수의 기획·실시, ⑤학생들의 체험활동을 코디네이트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지역에 따라 ‘학교지원 코디네이터’ ‘스쿨 코디네이터’, ‘지역 코디네이터’ 등 다양한 명칭으로도 불리고 있다. 또한 학교교육의 지원뿐 아니라 방과후아동교실을 비롯한 지역 내 아동 시설, 아동관 등과 연계한 사업의 코디네이터 등도 실시하는 지역도 있다.

코디네이터는 청소년 봉사활동·체험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중요한 존재로, 센터나 중개기관에 있어서는 활동참가를 희망하는 사람과 활동의 장 사이를 원활하게 연결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활동의 준비, 실시, 사후 관리 등 활동과 관련된 각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고 정보수집·제공, 활동의 장을 개척해야 하며 활동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관계기관 등과의 각종 연락 조율 등의 역할을 맡는다. 코디네이터는 자원봉사활동, 기획·홍보, 면접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춰야 한다. 또한 관계 기관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비롯해 훌륭한 인간성 등 폭 넓은 교양과 경험 등도 요구된다. 활동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보, 단체, 인물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 도도부현과 시정촌은 청소년 체험활동과 관계되는 행정부국과 단체 등의 협력을 얻어 공동으로 인재의 적극적인 발굴, 계획적인 양성을 실시해야 할 필요하다.

사례) 도쿄도 스기나미구 ‘학교교육 코디네이터 제도’

제도의 개요: 지역과의 연계에 의한, 열린 학교를 지향해 지역과 학교의 연결고리 역할을 감당하는 ‘학교교육 코디네이터’ 를 학교에 배치하는 제도로 2002년부터 시작됐다.

활동내용: 학교와 지역을 이어주는 코디네이트 활동을 통해, 지역을 바탕으로 학교교육활동을 지원해 간다. 코디네이터는 종합적 학습의 시간과 토요일학교의 수업내용에 대해 교사와 상담해, 기획제안 및 강사 찾기, 연락조율, 실시 서포트 등을 실시한다. 또한 기업이나 지역의 교육 자원봉사자에 관한 정보를 학교 측에 제공하거나 각종 강좌의 실시, 코디네이터 인재육성 등의 활동도 실시한다.

특징: 스기나미교육개혁 액션플랜(청소년 교육추진과 구민의 평생학습스포츠활동의 진흥 등을 목적으로, 스기나미구 교육위원회가 2002년에 책정한 교육개혁안)에 의해 채택됐으며, 현재 구내 4개 중학교 구역에 6명의 코디네이터가 배치돼 있다. NPO법인 ‘스쿨 어드바이스 네트워크’ 가 구로부터 위탁을 받아 코디네이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학교 내에 코디네이터 룸을 설치하고, 사무국으로 삼는다. 바쁜 업무에 시달리는 교사를 서포트함과 동시에 학교와 사회의 거점을 만든다는 시점에서 학교와 지역·기업과의 중개역할을 맡는다.

### 3.4 대표적인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 사례

- 국가 수준 또는 지역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관련 기관과 학교와 연계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집필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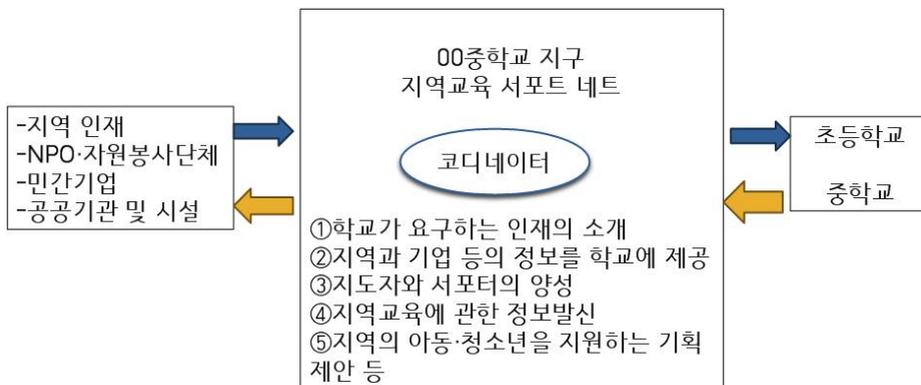
#### ‘종합적인 학습시간’ 과 관련된 사례

2002년도에 실시된 신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일본에서는 ‘종합적인 학습시간’<sup>72)</sup>이 학교교육에 도입되기 시작했다.(고등학교는 2003년도에 도입). ‘종합적인 학습시간’ 은 지식을 주입하는 수업이 아니라 ①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 ②배움의 방법과 조사방법을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업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종래의 교과학습 범위를 벗어나 자연체험과 자원봉사를 비롯한 사회체험 등의 학습을 통해 문제해결적 학습을 실시하도록 했다. 각 학교에 있어서는 지역과 학교, 학생들의 실태에 따라 특색있는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종합적인 학습시간’ 에서는 그룹학습과 이연령() 집단간의 학습, 지역 주민의

72) 초등학교학습지도요령(2008년 3월) 제5장

참가에 따른 학습, 지역의 자연과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학습 등 다양한 학습방법이 있다. 하지만 학습현장에서는 학교와 지역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원인으로는 학교와 지역의 니즈가 맞지 않는 ‘미스매치’가 있기 때문이다. 학교가 지역의 힘을 빌려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려 할때, 학교의 니즈에 대응한 지역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적을 바탕으로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지역교육 서포트 네트’라는 시책을 제안했다. 이것은 지역의 다양한 사회자원과 학교와의 코디네이트 활동을 지역주민들이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 ‘지역교육 서포트 네트’ 실시체계

지역교육 서포트 네트는 도쿄도 교육위원회 모델사업으로 도쿄도 내 5개 지구(스기나미구, 이타바시구, 아다치구, 다치카와시, 고다이라시)에서 2002년부터 실시됐으며 각각의 지구에서는 지역의 실정에 맞춰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 ‘모험놀이터’ 운영사례

최근 일본에서 지역 내 아동·청소년의 활동장소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모험놀이터(플레이파크)다. 모험놀이터는 세계 제2차대전 중 코펜하겐에 만들어진 ‘폐자재 놀이터’가 그 시초로 여겨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1970년대부터 도시화, 현대화로 인한 인간관계의 희박화, 놀이환경의 쇠퇴 등이 지적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활동(놀이) 부족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에 뜻을 모은 몇몇 사람들에 의해 관련 활동이 추진됐고 1979년에 최초의 상설 모험놀이터가

행정·시민 협동운영의 형태로 도쿄 세타가야(世田谷)에 만들어 졌다.

모험놀이터에서는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네, 시소, 미끄럼틀과 같은 상설 놀이기구를 쉽게 찾아 볼 수 없으며, 아동의 상상력과 창의력에 근거한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고 있다. 불놀이, 물놀이, 나무타기 등 자연체험이 허용되는 공간이기도 하며, 나무를 사용한 공작활동, 요리, 기지 만들기 등의 활동도 흔하게 볼 수 있다. 일본의 모험놀이터는 “자신의 책임으로 자유롭게 논다” 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 놀이란 누군가의 강요나, 짜여진 프로그램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활동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곳을 찾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활동을 전개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한 가장 큰 특징으로는 ‘플레이리더’ 의 존재다. 플레이리더는 이 곳을 찾는 아동의 놀이를 지도하고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라, 지원하고 지켜보는 존재로 정의된다. 불놀이나 나무타기 등과 같이 위험이 뒤따르는 놀이의 경우에도 플레이리더가 조력자로 도움을 주면서 아동의 안전을 지키면서 최대한 아동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원한다. 이 뿐 아니라 아동과 보호자의 상담에도 임하고 놀이터의 운영, 이벤트 등을 이용자와 함께 기획하는 역할도 맡는다. 현재 일본 전국에서 313개의 시설·단체들이 관련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 중 3분의 1인 144곳이 도쿄(59곳)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sup>73)</sup>

현재 모험놀이터는 놀이, 바깥 활동의 기능뿐 아니라 지역사회 보육기능, 커뮤니티 활성화 기능 등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주목한 각 지방자치단체 등은 시민들과 손을 잡고 지역의 사업으로 모험놀이터를 운영하는 등 대안시설로 주목을 받고 있다.

#### 4. 청소년활동정책의 전달체계

일본 국가레벨에서 청소년 행정을 다루는 부처는 내각부의 정책총괄관이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내각부에서는 청소년육성시책대강의 책정을 주요 업무로 다루며, 각 성(省)과의 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내각부가 관장하는 사무를 제외할 경우, 문부과학성의 스포츠·청소년국 내에 있는 청소년과가 소관하고 있다. (내각부의 경우, 7개의 정책총괄관 가운데 공생사회정책담당에 청소년 관련 업무가 해당. 그 가운데 청소년기획, 청소년지원, 청소년환경정비, 청소년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소관하고 있다.)

73) 홋카이도 7곳, 도호쿠 7곳, 간토 144곳(도쿄 59곳), 호쿠리쿠 11곳, 도카이 21곳, 간키 57곳, 주고쿠 14곳, 시코쿠 8곳, 규슈·오키나와 44곳(일본모험놀이터만들기 협회<http://www.ipa-japan.org/asobiba/>)

2010년 내각부 특명담당대사(청소년육성)와 전문가, 학생들로부터의 의견 모집을 거쳐 2008년에 청소년육성시책대강이 책정됐으며, 2010년에는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이 시행된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 내각부는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본부를 설치하고 내각총리대사를 본부장으로 삼고, 총무대사, 법무대사, 문부과학대사, 후생노동대사 등 일본의 모든 대사를 본부원으로 지정해 범국가적 차원으로 아동·청년육성사업을 추진해 간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청소년과 관련된 대부분의 행정사무는 교육위원회(교육청에 해당)가 담당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학교교육을 제외한 청소년행정의 담당부국이 교육위원회의 생애(평생)학습사회교육 부문에 속하는 경우도 있으며, 수장 부국의 지역진흥과 복지 관련 부문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다. (사토, 2010)

청소년의 체험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중앙정부 조직으로는 문부과학성을 꼽을 수 있다. 문부과학성 내에서도 생애학습정책국(봉사활동·체험활동 관련 사업, 방과후 아동 플랜), 초·중·고등학교(체험활동추진사업), 고등교육국(인턴십 추진, 체험학습의 추진), 스포츠·청소년국(청소년체험활동 종합 플랜, 고도모 유메 기금, 독립행정법인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의 관리 및 운영) 등이 체험활동과 관련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부과학성 외에도 후생노동성, 내각부 등이 건전육성과 커리어교육에 관한 체험활동 사업을 실시하기도 한다.

각 도도부현과 지정도시 교육위원회는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내각부 등이 실시하는 각종 사업에 관해 정보제공 및 정보교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장체험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의 장을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문부과학성이 실시하는 커리어 교육실천 프로젝트의 커리어·스타트·워크 지원회의(도도부현 차원에서 설치)는 직장체험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의 장으로써 설치되는 것이며, 도도부현, 지정도시교육위원회는 이 지원회의의 중심적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학교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관계 부성(部省)이 실시하는 커리어교육관련사업의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한다.

#### 관련 기구 ‘독립행정법인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

독립행정법인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는 문부과학성에 의해 관리운영되는 단체로 (독립행정법인) 국립청년의 집(전국 13곳), (독립행정법인)국립소년자년의 집(전국 14곳), (독립행정법인)국립올림픽기념청소년종합센터(각각 2001년 4월에 발족)가 2006년 4월에 통합해하며 독립행정법인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이하 진흥기구)로 발족하게 됐다.

#### 기구의 목적과 연혁, 시설 종류<sup>74)</sup>

진흥기구는 “청소년교육의 진흥 및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 을 도모하기 위한 일본 유일의 청소년 교육 국가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 청소년교육 지도자의 양성
- 선도적·모델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수활동의 장소를 제공
- 청소년 단체, 관계기관의 연계·협력의 촉진
- 기초적·전문적인 조사연구
- 청소년 단체를 대상으로 한 조성(助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더욱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아래에서 청소년 교육의 국가 수준의 센터에 걸맞는 사업에 중점화된 활동과 조사연구를 행함과 더불어 업무의 효율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에 따라 기구 본부에서는 기획입안업무를 집중적이고 통일적으로 실시하고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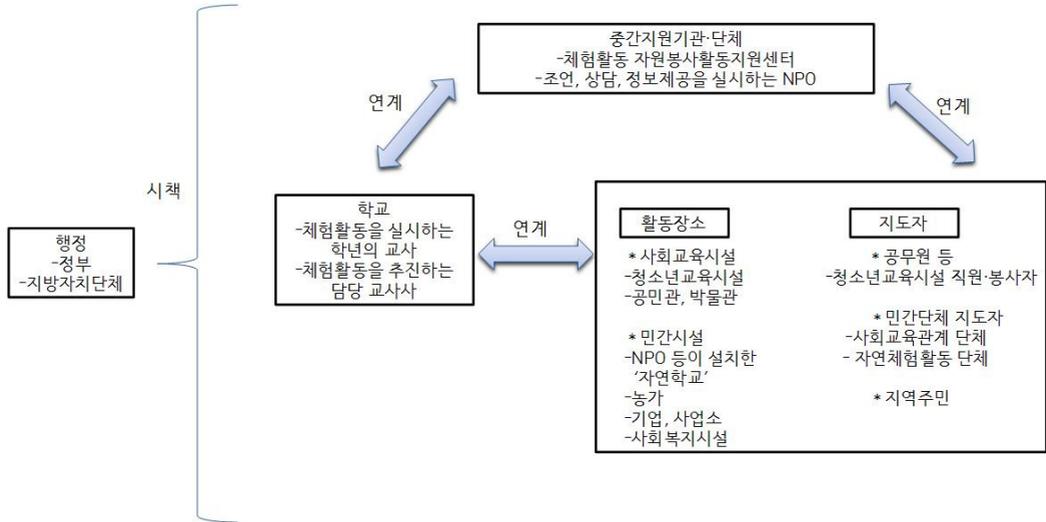
1. 각 시설의 기능과 입지조건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선도적·모델적인 교류체험, 자연체험 등의 체험활동과, 청소년교육관계자의 스킬업을 위한 연수, 국제교류사업 등을 기획·실시한다.
2. 또한 전국 28개 시설에서는 영유아기에서 청년기까지 전 연령기의 청소년을 수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와 청소년단체, 청소년교육 관계자 등이 행하는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폭 넓은 학습의 장과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제안과 교육적 지도·조언 등을 실시한다.
3. 우리나라(일본)의 청소년교육 전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 체험활동의 실태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 그 성과를 공립·민간 시설과 단체에 폭 넓게 제공한다.
4. ‘고도모 유메 기금’ 을 통해 청소년 교육 관련 민간단체가 실시하는 아동·청소년 체험활동과 독서활동 등을 대상으로 조성사업을 실시한다.<sup>75)</sup>

진흥기구와 관련된 이용상황을 살펴보면(2011년 기준), 청년의 집, 소년자연의 집, 올림픽기념청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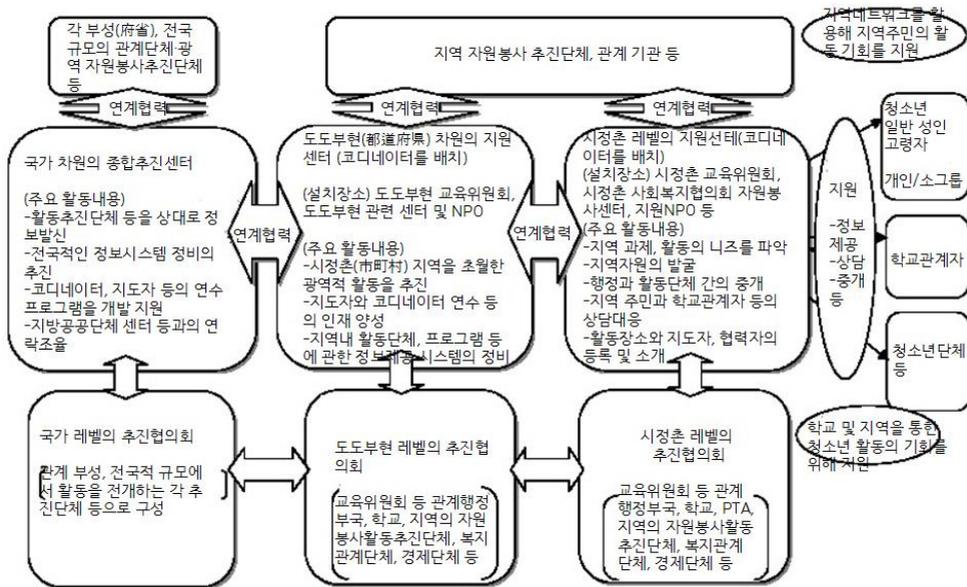
74) 진흥기구 홈페이지 <http://www.niye.go.jp/about/history.html>

75) 참고 <http://www.niye.go.jp/index.html>

년종합센터 등의 총 이용자수는 487만명이며 이 중 청소년과 청소년 교육 지도자와 같이 목적에 적합한 이용률은 83.2%에 이른다.



<그림 5> 청소년체험활동에 관한 연계체제  
(청소년봉사활동 연계체제를 일반적인 체험활동의 경우로 바꾸어 재구성)



<그림 6> 봉사활동·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체계(76)

## 5. 청소년활동정책의 주요 이슈

### 5.1 가을학기 입학제도에 관한 논의

현재 일본에서는 도쿄 대학 등 국립대학들 사이에서는 가을 입학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2년 3월에 도쿄대학이 작성한 보고서<sup>77)</sup>에 따르면 가을학기 입학이 도입될 경우, 기존의 공무원 시험 시기나 대기업 입사시험 시기에 맞춰 학생들이 졸업자격을 갖추지 못해 사회적으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봄 학기 입학은 유지하되, 가을 학기부터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는 시스템의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봄학기~가을학기 사이의 기간중 연구 현장을 미리 체험하는 체험활동,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활동, 인턴십 등 근로체험활동 등 다양한 체험을 실행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첫째, 대학에서의 배움에 대한 목적의식을 명확화하고 동기부여를 얻고, 두번째는 성적 위주의 가치관에서 탈피해 배움의 자세로 전환하며 세번째는 입학후의 해외유학 등에 도전하는 소지를 만드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도쿄대학의 이러한 움직임은 큰 반향을 일으키며, 다른 국립대학들도 가을학기 입학제에 대한 검토에 돌입하고 있다. 봄~가을 학기 사이에 실시될 프로그램으로 '체험활동'에 대한 중요성도 동시에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 5.2 동일본대지진

2011년에 발생한 3·11 동일본대지진은 일본의 청소년 체험활동과 관련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미 정해져 있는 답을 고르기만 하는 현재의 교육과정에서는 대지진과 같은 비상사태 시에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하다. 필요할 때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한 능력과 감성, 체력 등이 다음세대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덕목으로 떠올랐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기에 자연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한층 더 힘을 가지게 됐다.

일본 정부는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체험적 방재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학교 등을 피난소로 가정하고 생활체험 등의 방재교육프로그램을 지역주민과 보호자의 협력을 얻어 실시하는 '방재캠프추진사업' (2012년부터 실시)과 그 성과의 보급을 추진하게 됐다.<sup>78)</sup>

76)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ukyo/chukyo0/gijiroku/20702aca.pdf#search=%E4%BD%93%E9%A8%93%E6%B4%BB%E5%8B%95+%E4%BB%95%E7%B5%84%E3%81%BF](http://www.mext.go.jp/b_menu/shingi/chukyo/chukyo0/gijiroku/20702aca.pdf#search=%E4%BD%93%E9%A8%93%E6%B4%BB%E5%8B%95+%E4%BB%95%E7%B5%84%E3%81%BF)

77) 도쿄대학, 입학시기 체제에 관한 간담회 보고서(2012년 3월)

78) '학교안전 추진에 관한 계획' (2012년 4월 27일 각의결정)

대지진을 교훈으로 삼아 예방적인 차원에서 방재 체험활동이 실시되고 있다면, 지원의 성격으로도 청소년 체험활동이 실시되고 있다. 대지진의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현(福島県)의 청소년들은 대지진뿐 아니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인해 제한된 공간(가설주택, 피난소 등)에서 생활하게 됐고 그 영향으로 일상생활에서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이 됐다. 이러한 후쿠시마의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부과학성과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는 다양한 자연체험활동 등을 제공하는 ‘리프레쉬 캠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리프레쉬 캠프의 취지는 동일본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과 학생들의 심신을 건전육성하고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바깥놀이, 스포츠 및 자연체험활동 등이 가능한 기회를 국립청소년 교육진흥기구가 주최하고 청소년교육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다(1~3박 정도). 주요 실시 장소로는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등이며 문부과학성과 민간기업의 협력을 얻어 개최하고 있다. 2012년 까지의 실적을 살펴보면 총 94회가 실시됐으며 10,067명의 청소년이 참가했다.

### 5.3 청소년들의 방과후 생활-부활동

일본 청소년들의 부활동(클럽활동, 동아리 활동 등에 해당)은 학교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자리잡고 있다. 학생들의 자주성을 바탕으로 활동이 진행되며, 그 안에서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협동성과 우정을 키워가는 것 등을 부활동의 효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고문역할 교사의 지도 아래, 방과 후와 주말과 같은 여가 시간을 이용해 행해진다. 부활동은 크게 운동계열과 문화계열로 나뉜다. 운동계열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야구와 축구이며 그 밖에도 배구, 농구, 테니스, 탁구, 육상 등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다. 문화계열로는 브라스밴드, 오케스트라, 합창, 일본 전통악기, 미술, 컴퓨터, 연극, 만화, 댄스 등이 있다. 거기에 철도연구회, 프로레슬링 연구회처럼 독특한 주제를 다루는 활동도 존재한다. 하지만 부활동에서 경험한 예체능 활동이 대학 진학이나 사회에 진출할 때 그대로 자신의 전공 과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말 그대로 전공과는 별도로 생활 속에서 즐기는 활동인 셈이다.

일본의 한 교육 관련 기업이 실시한 조사(베네세(Benesse) 2008년 ‘방과 후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고교 입시를 앞둔 중 3 학생을 제외할 경우, 중학생들의 부활동 가입율은 90%를 넘었다. 우리와 비슷한 학력사회인 탓에 학년이 높아질 수록 가입율은 낮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1 학생은 75.6%, 고2 학생은 67.4%가 부활동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고등학생들이 부활동에 할애하는 하루 평균시간은 약 1시간 반 정도였다.

부활동과 관련해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교사들에 대한 지원의 문제이다. 도쿄도(東京都) 교육위원회(교육청에 해당)가 제시한 고문 교사의 역할<sup>79)</sup>을 살펴보면, 부활동 중의 사고방지 및 안전대책 수립, 예산관리 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부원들의 건강과 적성을 파악·관리하고, 부원들을 대상으로 한 카운셀링과 생활지도까지 담당한다. 이에 따른 과도한 업무와 시간 외 근무로 교사들의 과중이 더해지고 있는 현실이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교사는 전공 과목이 아니거나 경험이 전혀 없을 경우에도 학교 지시에 따라 부활동의 고문을 맡아야 한다. 그럴 경우 그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이 없기 때문에 결국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지도를 맡기는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학생들을 더욱 다양한 측면으로 파악하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교사도 일정 수준의 기술을 익힐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사들이 전문 기술과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밖에도 최근, 오사카 등에서 부활동시 교사의 체벌로 인한 학생의 자살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활동 사고방지, 체벌에 관해 국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 참고문헌

- 西願博之(2009) 「体験活動をめぐる経緯と課題」 『青少年をめぐる諸問題』 p149-165 国立国会図書館調査及び立法考査局
- 田中治彦・萩原健次郎編著(2012) 『若者の居場所と参加－ユースワークが築く新たな社会』 東洋館出版社
- 東京都教育庁生涯学習スポーツ部(2003) 『地域教育力を活用した「総合的な学習の時間」の展開』
- 文部科学省初等中等教育局(2003) 『体験活動事例集－豊かな体験活動の推進のために』 ぎょうせい
- 도쿄대학(2012) 입학시기 체제에 관한 간담회 보고서  
내각부 2012년 아동·청소년백서
- 문부과학성 국립청소년교육시설의 실제에 관한 검토회(2011년 2월) ‘향후 국립청소년교육시설에

79) [http://www.kyoiku.metro.tokyo.jp/buka/shidou/bukatsudo/pr070412h/pr070412\\_hb.pdf](http://www.kyoiku.metro.tokyo.jp/buka/shidou/bukatsudo/pr070412h/pr070412_hb.pdf)

대해' (개요판)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ousa/sports/010/attach/1302945.htm](http://www.mext.go.jp/b_menu/shingi/chousa/sports/010/attach/1302945.htm)

#### 관련 인터넷 사이트

문부과학성 [www.mext.go.jp](http://www.mext.go.jp)

도쿄도 청소년시책

[http://www.seisyounen-chian.metro.tokyo.jp/seisyounen/02\\_shokubataiken.html](http://www.seisyounen-chian.metro.tokyo.jp/seisyounen/02_shokubataiken.html)

독립행정법인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 [www.niye.go.jp](http://www.niye.go.jp)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자연체험활동추진협의회(CONE) <http://www.cone.jp>



**영국·핀란드·스웨덴·일본의 청소년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인 쇄 2013년 10월 11일

발 행 2013년 10월 1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아르빛 전화 02)503-3223 대표 유채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기획·대외협력팀)